

2018년도 농식품사업안내서

2018. 1.



이 안내서는 2018년도 농식품사업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책자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림사업정보 시스템(www.agrix.go.kr),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

차례

I. 농촌분야	1
가.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1. 6차산업 제품 브랜드 개발 및 실용화	3
2. 6차산업 제품 온라인 판로지원	4
3. 6차산업 판촉 및 마케팅 지원	5
4. 6차산업 홍보 및 온라인시스템관리	6
5.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	(사업시행지침 참조) 7
6. 귀농귀촌교육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8
7. 귀농귀촌실태조사	(사업시행지침 참조) 9
8.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10
9. 귀농인의 집 조성	11
10. 기후변화 실태조사	12
11. 농업농촌가치홍보	13
12.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	14
13. 농촌개발시험연구	15
14.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자치단체)	16
15.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17
16.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18
17.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사업시행지침 참조) 19
18. 관광농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0
19.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참조) 21
20. 농촌기반기술연구	22
21. 농촌다원적자원활용(민간경상보조)	23
22. 농촌다원적자원활용(지자체)	(사업시행지침 참조) 24
23. 세계중요농업유산보전관리(지자체)	(사업시행지침 참조) 25
24.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생활)	(사업시행지침 참조) 26
25.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세종)	(사업시행지침 참조) 27
26.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	(사업시행지침 참조) 28
27. 농촌재능나눔 활성화지원(민간)	(사업시행지침 참조) 29
28. 농촌지역 종합개발 지원	30
29.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민간)	31

I 차례

30.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시행지침 참조)	32
31. 도시민 농촌유지사업 평가		33
32. 도시민농촌유치지원		34
33. 주민주도마을만들기(민간)		35
34. 주민주도마을만들기(자치단체)		36
35.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	(사업시행지침 참조)	37
36.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38
37.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지자체)		39
38.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40
39. 활기찬 농촌 행정경비 지원		41
40.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경상)		42
41.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자본)		43
나. 농촌복지증진		
42.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44
43.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5
44.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6
45.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47
46.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방문콘서트)	(사업시행지침 참조)	48
47.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행복버스)		49
48.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50
49.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51
50.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52
51.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53
52.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사업시행지침 향후개정)	54
53.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준비사업		55
54.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56
55.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57
II. 농업분야		
가. 경쟁력제고		
56. A팜쇼		61

| 차례

57. 결혼이민여성농업인교육 지원	62
58. 경영실습임대농장	63
59. 곤충유통사업단 구성	64
60.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65
61. 교육훈련 내실화 지원	66
62.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67
63.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68
64. 농기자재수출빅데이터정보지원	69
65.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지원	70
66. 농식품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71
67.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72
68.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73
69. 농업경영컨설팅(사업평가운영)	74
70.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75
71. 농업계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 지원	76
72. 농업계학교 실습장	77
73.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78
74.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79
75. 농업법인 취업지원	80
76.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81
77. 농축산용미생물제품인증지원	82
78. 도시농업 교육인력양성 지원	83
79.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4
80. 도시농업박람회 및 도시농업 정책홍보 지원	85
81. 도시양봉지원	86
82. 생명산업대전	87
83. 생명자원통합DB구축	88
84. 수직형 농장 성과분석	89
85.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	90
86. 스마트 농정 통계체계 구축	91
87. 스마트팜 농가활용서비스개발	92
88. ICT융복합 모델개발	93

I 차례

89. 스마트팜 확산 교육 지원(현장실습형교육)	94
90. 스마트팜 확산 지원(권역별 현장지원센터)	95
9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96
92. 종자가치 홍보	97
93.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98
94. 미래농업선도고교 인프라비 지원	99
95. 첨단기술공동실습장	100
96.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사업시행지침 향후개정) 101
97.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102
98. 친환경 비료 교육홍보 지원	103
99.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사업 공모지원	104
100. 현장실습 및 전문기술 교육 지원	105
101. 후계농교육 지원	106
102.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지원	107
10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관리	108
104. 한-뉴 FTA 협력사업	109
나. 생산기반확충	
105. 곤충종자보급센터 조성	110
106.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111
107.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112
108. 국내채종 기반 구축사업	113
109.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운영	114
110.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115
111.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16
112. 농업기반정비	117
113. 농업기반정비(세종)	118
114. 농업기반정비(제주)	119
115.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120
116. 농업용수 수질개선 기본조사	121
117.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122
118. 농업용수 수질조사	123

Ⅰ 차례

119.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사업시행지침 참조)	124
120. 농업정보이용활성화 지원		125
121.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지원		126
122.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127
123. 농지은행 지원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128
124. 농지은행사업 관리비 지급		129
125.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130
126. 농지제도개선홍보 지원		131
127. 농지종합정보화		132
128. 농촌 지하수 자원관리		133
129. 농촌용수분야 국제협력 지원		134
130.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135
131. 다목적농촌용수개발		136
132. 대한민국우수품종상		137
133. 민간육종가 육성 지원		138
134. 배수개선(민간)		139
135. 배수개선(지자체)		140
136. 비료품질관리시스템		141
137. 수리시설개보수		142
138. 수질개선 사후 모니터링 지원		143
139. 시설농업단지 지하수함양		144
140.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 참조)	145
141.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146
142.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147
143. 유기농업자재 지원		148
144.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149
145.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150
146.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151
147.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 참조)	152
148.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지원		153
149.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154
150. 토양개량제(제주)	(사업시행지침 참조)	155

| 차례

151.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유지관리	156
152. 한발대비용수개발	157
다. 농가경영안정	
153. FTA분야 교육 홍보 사업	158
154. 경관보전직불(지자체)	159
155. 경영이양직불금	(사업시행지침 참조) 160
156.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농자)	161
157. 국제농기계박람회	162
158. 노후농기계대체	(사업시행지침 참조) 163
159.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시행지침 참조) 164
160. 농업인 부채상환인센티브	165
161. 농업재해대책비(지자체)	166
162.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167
163. 농업정책자금관리	168
164.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169
165. 농지연금(농자)	170
166. 맞춤형농지지원(농자)	171
167. 발농업직불금	(사업시행지침 참조) 172
168.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 참조) 173
169.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174
170. 쌀직불금 현장점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175
171.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176
172. 재해대책비(농자)	177
173. 조건불리직불금	(사업시행지침 참조) 178
174.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179
175.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시행지침 참조) 180
176.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 향후개정) 181
177. 피해보전직불	(사업시행지침 향후개정) 182
178.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불사업 운영비	183
라. 농산물안정	
179. 농경지 중금속 오염실태조사	184

I 차례

180.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원	185
181.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지원	186
182.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 지원	187
183. 지리적표시 활성화 지원	188
마. 국제협력협상	
184. FAO한국협회 지원사업	189
185. FTA해외정보조사사업	190
186. OECD 농촌 컨퍼런스 개최	191
187. 개도국 농업발전 기획협력사업	192
188. 개도국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93
189. 국제통상지원사업	194
190.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195
191.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응자)	(사업시행지침 참조) 196
192.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초청연수사업	197
바. 기술개발	
193.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사업시행지침 참조) 198
194. 신기술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 참조) 199
195. 농업현안해결 기술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00
196.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 참조) 201
III. 식량분야	203
가. 경쟁력제고	
197. RPC 경영평가	(사업시행지침 참조) 205
198. RPC 교육홍보컨설팅	206
199.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사업시행지침 참조) 207
200.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08
201.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09
202. 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 지원	210
203.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11

차례

나. 생산기반확충

204. 간척농지 실태조사 지원	212
205. 논타작물재배지원(생산조정제)	(사업시행지침 참조) 213
206.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	214
207.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15
208.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16
209. 조성토지관리처분비(민간)	217
210. 조성토지관리처분비(지자체)	218

다.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211. 라이스랩 설치 운영 지원	219
212. 쌀소비활성화 사업 지원	220
213. 양곡류 해외시장 동향(수급, 가격 등) 조사	221
214.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지자체)	222

IV. 축산분야 223

가. 생산기반확충

215.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25
216.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26
217.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27
218.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28
219. 가축분뇨처리지원(옹자)	(사업시행지침 참조) 229
220.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 참조) 230
221.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31
222.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32
223. 공동자원화 퇴액비 시설장비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33
224.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시행지침 참조) 234
225. 말산업육성지원(옹자)	235
226. 사료산업종합지원(옹자)	236
227. 사료품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37
228.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38
229.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39
230.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부담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40

| 차례

231.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41
232.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 교육·홍보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42
233. 약취측정ICT기계장비	(사업시행지침 참조)	243
234. 액비유통전문조직	(사업시행지침 참조)	244
235.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45
236. 유해가스측정기	(사업시행지침 참조)	246
237.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47
238.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48
239.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파종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49
240.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50
241.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51
242.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52
243.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53
244. 조사료생산기반확충(용자)	(사업시행지침 참조)	254
245.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55
246.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56
247.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57
248. 조사료생산용 초지조성(보완)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58
249. 축사시설현대화(용자)		259
250. 축사시설현대화(자치단체)		260
251.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61
252.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		262
253. 축산환경관리원 운영지원		263
254.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264
나. 경쟁력제고		
255. 가공원료유 지원		265
256. 가축개량지원(용자)		266
257.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분석기 지원		267
258. 가축분뇨 부숙도판정기 지원		268
259. 가축분뇨처리사업 교육·홍보 지원		269
260. 국제낙농연맹총회개최		270
261. 기타가축개량지원		271

| 차례

262. 기타가축개량지원(흑염소개량지원)	272
263. 낙농통계관리시스템운영	273
264. 돼지경제능력검정 경상지원(자치단체)	274
265. 돼지경제능력검정 지원(민간)	275
266. 말산업 인식 개선	276
267. 말산업 전담기관 기능 강화	277
268.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278
269.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자치단체경상)	279
270.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자치단체자본)	280
271. 말산업 특구지원	281
272. 말산업의 6차산업화(민간)	282
273. 미래한돈창조혁신센터	283
274. 밀집지역 개편	284
275. 번식용 승용마 도입	285
276.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286
277. 승마시설 등 설치	287
278.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사업시행지침 참조) 288
279. 우수말 생산육성조련 강화(민간)	289
280.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용자)	290
281. 원유소비활성화(용자)	291
282.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292
283. 조사료사업 교육홍보 지원	293
284. 조사료통계관측조사	294
285. 종축등록사업지원	295
286. 축사시설현대화(민간)	296
287. 축사시설현대화(사업관리)	297
288.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298
289.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민간)	299
290. 학생승마체험	300
291. 한우젓소개량 경상지원(자치단체)	301
292. 한우젓소개량 자본지원(자치단체)	302
293. 한우젓소개량지원(민간)	303

Ⅰ 차례

다. 축산물안전관리

294. CCTV 등 방역인프라	304
295. GMP 컨설팅 지원	305
2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장비 구입지원	306
29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307
29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308
299.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경상)	309
300. 개업수의사보수교육 등 지원(민간경상보조)	310
301. 공동방제단 운영	311
302. 광역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지원	312
303.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313
304. 도축검사원운영비 지원(민간)	314
305. 동물보호 교육 홍보	315
306.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재구축	316
307. 동물복지 실태조사	317
308.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318
309. 동물용의약품 수출시장개척지원	319
310.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자본)	320
311. 살처분보상금	321
312.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322
313. 일반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지원	323
314. 지역축협소독차량(민간자본보조)	324
315. 축산물HACCP 조사, 평가, 교육, 세미나, 홍보	325
316. 축산물HACCP 현장 기술지도	326
317. 축산물HACCP컨설팅	327
318.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	328
319.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329
320. 축산물위생관리인력 교육 지원	330
321. 축산물이력관리 장비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331
322. 축산물이력관리 지원(민간)	(사업시행지침 참조) 332
323.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자치단체)	(사업시행지침 참조) 333

I 차례

라.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324. 가금산물 가격조사	334
325.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웅자)	335
326. 말 경매 등 유통활성화	336
327. 방역본부 수입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교육 지원	337
328.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338
329. 육류유통수출입정보 및 소비실태조사	339
330.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340
331. 조사료공급활성화 유통비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341
332. 축산물 거래증명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342
333. 축산물 온라인가격비교 플랫폼 구축	343
334. 축산물가격조사	344
335. 축산물등급판정 운영	345
336. 축산물등급판정 장비지원	346
337.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운영	347
338.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사업시행지침 참조) 348
339. 축산물유통실태조사	349
340.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웅자)	(사업시행지침 향후개정) 350
341. 축산자조금 운영	(사업시행지침 향후개정) 351
342.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홍보 지원	352
343.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시행지침 향후개정) 353
344. 한국형메뜨거라이 경영컨설팅	(사업시행지침 참조) 354

마. 축산복지

345. 공공동물장묘시설지원	355
346.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356
347.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357

바. 축산농가경영안정

348.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358
349.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시행지침 참조) 359

V. 식품분야

가.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350. GAP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363
----------------------	-----

| 차례

351. GAP생산여건 조성	364
352.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365
353.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지원	366
354. GAP인증기관 운영비 지원	367
355.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368
356. 건전한 식생활 확산(민간보조)	369
357. 건전한 식생활 확산(지자체보조)	370
358. 국산 농축산물 구매 이행보증보험	371
359. 김치 자조금	372
360.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373
361. 농식품 소비정보교류	374
362. 농식품 스마트소비	375
363.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376
364. 농식품소비정보망 이용활성화	377
365.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378
366. 수출농산물 해외정보조사 지원	379
367. 수출업체 맞춤지원	380
368. 술 품질인증 신청비 지원	381
369.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382
370. 식품기능성원료 등록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383
371. 식품기능성평가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384
372.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자치단체)	(사업시행지침 참조) 385
373. 식품외식정보분석	386
374.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사업시행지침 참조) 387
375. 외식기업 수출지원	388
376. 외식산업 경영 안정화	389
377.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390
378.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사업시행지침 참조) 391
379. 주산지GAP안전성분석 지원	392
380. 판매조직 육성	393
381.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용자)	394
382.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395
383. 해외냉동냉장운송지원	396

Ⅰ 차례

나. 생산기반확충

384.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397
385.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경상)	398
386.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자본)	399
387. 기능성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400
388.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활성화	401
389. 농식품수출 생산기반 구축	402
390.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민간)	403
391.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지자체)	404
392. 소스산업화센터건립지원	405
393. 식품수출지원센터 지원	406
394. 전략품목육성(10개품목)	407
395. 전통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	408
396. 전통식품산업진흥	409
397. 전통주산업진흥	(사업시행지침 참조) 410
398. 중소식품기업 진단 맞춤지원	411
399.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제주)	(사업시행지침 참조) 412
400.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시행지침 참조) 413
401. 향토산업육성사업(생활)	(사업시행지침 참조) 414
402. 향토산업육성사업(제주)	(사업시행지침 참조) 415

다. 경쟁력제고

403. GAP전문가양성교육 등	416
404. 김치 교육훈련기관 교육지원	417
405. 김치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지원	418
406. 대한민국식품대전	419
407. 민관수출협의회운영	420
408. 수출농식품홍보 지원	421
409.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422
410. 식품명인 발굴 육성	423
411. 식품명인체험홍보관	424
412.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교육 운영	425
413. 우리술 교육훈련 교육지원	426

I 차례

414.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지원	427
415. 유기가공인증컨설팅 및 유통활성화 등 지원	428
VI. 유통원에분야	429
가. 생산기반확충	
416.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31
417. 도매시장출하촉진(응자) (사업시행지침 참조)	432
418. 공판장(청과) 출하촉진(응자) (사업시행지침 참조)	433
419. 화훼유통개선지원(응자) (사업시행지침 참조)	434
420. 농산물수매지원(응자) (사업시행지침 참조)	435
421. 공영도매시장현대화비용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36
422. 과수ICT분야 시설보조 (사업시행지침 참조)	437
42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38
424.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39
425. 과수생산유통지원(응자) (사업시행지침 참조)	440
426. 과수우량목육생산 기반조성 (사업시행지침 참조)	441
427.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42
428. 기존 APC 선별, 포장시설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43
429. 꽃가루생산단지조성 (사업시행지침 참조)	444
43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시설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45
431. 산지유통시설지원(APC)(자치단체) (사업시행지침 참조)	446
432.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시행지침 참조)	447
433.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48
434. 식물백신산업화촉진센터건립 (사업시행지침 참조)	449
435.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 참조)	450
436.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자치단체) (사업시행지침 참조)	451
437.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 (사업시행지침 참조)	452
438. 저온유통체계구축(채소류 출하조절시설)(자치단체) (사업시행지침 참조)	453
439.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 (사업시행지침 참조)	454
440.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민간경상) (사업시행지침 참조)	455
441.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자치단체자본) (사업시행지침 참조)	456
442. 특용작물(인삼)시설현대화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57

Ⅰ 차례

나.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443. 공동선별비(자치단체)	(사업시행지침 참조)	458
444. 농산물 신유통경로확산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59
445.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시행지침 참조)	460
446.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61
447. 농산물 직매장 운영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62
448.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지원		463
449. 농산물마케팅지원(산지조직평가)		464
450. 농산물마케팅지원(자치단체)	(사업시행지침 참조)	465
451. 농산물소비촉진(인삼)		466
452. 농산물소비촉진지원(과수)		467
453. 농산물소비촉진지원(차류)		468
454. 농산물소비촉진지원(화훼)		469
455. 농산물소비촉진지원(잡곡)		470
45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옹자)	(사업시행지침 참조)	471
457.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472
458. 도매유통활성화지원(옹자)	(사업시행지침 참조)	473
459.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 참조)	474
460. 사이버거래소 운영 지원		475
461. 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지원(옹자)		476
462. 산지유통시설 행정경비지원사업		477
463. 산지유통종합자금(옹자) - 과채류	(사업시행지침 참조)	478
464. 산지유통종합자금(옹자) - 과실류	(사업시행지침 참조)	479
465. 수급정보조사 등		480
466. 유통협약명령		481
467. 인삼특용작물계열화(옹자)	(사업시행지침 참조)	482
468. 자조금지원(단체)	(사업시행지침 참조)	483
469. 자조금지원(행정경비)		484
470.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485
471.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사업시행지침 참조)	486
472. 채소류생산안정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87
473.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조사		488
474.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옹자)		489

I 차례

475.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지원	490
다. 경쟁력제고	
476.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91
477.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자치단체)	(사업시행지침 참조) 492
478.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행정경비)	(사업시행지침 참조) 493
479. 원예분야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94
480. 원예분야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495
481.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지원	496
VII. 산림분야	497
가. 생산기반확충	
482. 조림	(사업시행지침 참조) 499
483. 정책숲가꾸기	(사업시행지침 참조) 500
484. 공공숲가꾸기	(사업시행지침 참조) 501
485. 양묘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 참조) 502
486.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사업시행지침 참조) 503
487.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시행지침 참조) 504
488.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시행지침 참조) 505
489.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지침 참조) 506
490. 수출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 참조) 507
나. 임가지원 및 유통활성화	
491.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사업시행지침 참조) 508
492.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사업시행지침 참조) 509
493.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시행지침 참조) 510
다. 경쟁력제고	
494.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시행지침 참조) 511
495.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512
496. 산림조합특화사업	(사업시행지침 참조) 513
497.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514

I. 농촌분야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1

6차산업 제품 브랜드 개발 및 실용화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6차산업 제품 브랜드 개발 및 실용화			예산 (백만원)	580		
사업목적	○ 농촌지역의 부존자원(1차산업)을 이용, 식품가공 등 제조업(2차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3차산업)을 융복합하여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농촌지역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 주요내용	○ 6차산업 경영체의 제품브랜드 개발, 시제품 개발, 포장디자인 개선, 6차 산업 사업모델 공모전 추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60	580	580	-		
	국 고	260	580	58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산업과 벤처창업지원팀		사무관 이창일 주무관 손태훈 최민수		044-201-1584 044-201-1585 063-919-1416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관련자료	-						

2

6차산업 제품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6차산업 제품 온라인 판로지원			예산 (백만원)	60		
사업목적	○ 농촌지역의 부존자원(1차산업)을 이용, 식품가공 등 제조업(2차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3차산업)을 융복합하여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농촌지역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 주요내용	○ 6차산업 우수제품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쇼핑몰 상품등록, 판촉지원, 판매 관리, 마케팅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0	60	60	-		
	국 고	60	60	6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산업과 사이버거래소		사무관 이창일 주무관 손태훈 김은정		044-201-1584 044-201-1585 02-6300-1834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						

3

6차산업 판촉 및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6차산업 판촉 및 마케팅 지원			예산 (백만원)	938			
사업목적	○ 농촌지역의 부존자원(1차산업)을 이용, 식품가공 등 제조업(2차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3차산업)을 융복합하여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농촌지역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주요내용	○ 6차산업 우수제품 온오프라인 판촉지원,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과 홍보, 판촉전,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추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56	738	938	-			
	국 고	2856	738	938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산업과 산업육성부		사무관 이창일 주무관 손태훈 황희연		044-201-1584 044-201-1585 031-299-7878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관련자료								

4

6차산업 홍보 및 온라인시스템관리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6차산업 홍보 및 온라인시스템관리			예산 (백만원)	1,372			
사업목적	○ 농촌지역의 부존자원(1차산업)을 이용, 식품가공 등 제조업(2차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3차산업)을 융복합하여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농촌지역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업 주요내용	○ 6차산업 주요정책 및 제품소비촉진 홍보, 박람회 홍보,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콘텐츠 개발 및 운영관리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340	1,372	1,372	-			
	국 고	1,340	1,372	1,372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산업과 인재양성본부		사무간 이창일 주무관 손태훈 오세린		044-201-1584 044-201-1585 044-861-882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5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사업

세부사업명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	예산 (백만원)	400					
사업목적	○ 도시민 등에게 귀농귀촌, 농산업 일자리·창업 정보제공							
사업 주요내용	○ 중앙·지자체 귀농귀촌 정책 홍보, 일자리·창업 구직 연계, 미래농업 소개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1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보조 100%							
지원한도	○ 4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00	400	400	400			
	국 고	400	400	400	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인력과 귀농귀촌지원실		사무관 장성준 실장 김준영		044-201-1539 02-2058-2072		
신청시기	정기('18.2월 중)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6

귀농귀촌교육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귀농귀촌교육지원사업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예산 (백만원)	4,365			
사업목적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종합적인 귀농귀촌 교육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선정 및 운영 ○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 운영 ○ 교육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귀농귀촌 교육 홍보 실시					
국고보조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70~100% (공모교육 교육생 자부담 30% 내외)					
지원한도	○ 귀농귀촌 교육과정별 차등지원 (교육계획에 의거 강사비, 교육생 식비, 숙박비, 실습비 등 지급)					
재원구성 (%)	국고	70~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929	5,058	4,365	4,365	
	국 고	2,929	5,058	4,365	4,3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인력과 귀농귀촌교육실		사무관 장성준 실장 하철호		044-201-1340 02-2058-2850
신청시기	기관선정(1~2월), 교육신청(3~10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귀농귀촌교육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7

귀농귀촌실태조사사업

세부사업명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귀농귀촌실태조사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귀농귀촌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 설정							
사업 주요내용	○ 귀농귀촌 실태조사							
국고보조 근거법령	○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100%							
지원한도	○ 5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0	-	500	500			
	국 고	100	-	500	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인력과 귀농귀촌지원실		사무관 장성준 실장 김준영		044-201-1539 02-2058-2072		
신청시기	정기('18.2월~3월 중)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8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사업

세부사업명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예산 (백만원)	1,000					
사업목적	○ 귀농귀촌 상담, 교육, 홍보 등귀농귀촌 전반 서비스 제공							
사업 주요내용	○ 귀농귀촌 전화·대면 상담, 귀농귀촌아카데미·소그룹 강의, 귀농귀촌 홍보 등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국고보조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보조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00	1,000	1,089	1,000			
	국 고	1,000	1,000	1,089	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경영인력과 귀농귀촌종합센터		장성준 김준영		044-201-1539 02-2058-2072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물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							

9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세부사업명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귀농인의 집 조성			예산 (백만원)	1,050			
사업목적	○ 귀농귀촌희망자가 농촌체험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 주요내용	○ 농촌 빈집 리모델링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개소당 3천만원 이내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100	2,100	2,100	2,100			
	국 고	1,050	1,050	1,050	1,050			
	지방비	1,050	1,050	1,050	1,0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장성준 김용호		044-201-1539 044-201-1540		
신청시기	(정기)8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							

10

기후변화 실태조사사업

세부사업명	기후변화실태조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기후변화 실태조사			예산 (백만원)	833			
사업목적	○ 기후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사업 주요내용	○ 기후변화가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보조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400	833	1,000			
	국 고	-	400	833	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창조농식품정책과 기후변화대응부		노승환 정경훈		044-201-2421 061-338-656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11

농업농촌가치홍보사업

세부사업명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농촌가치홍보			예산 (백만원)	4,408		
사업목적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확산, 농정 공감실현 주요 홍보,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사업 주요내용	○ 방송, 신문, 온오프라인 매체활용 농업농촌 가치 홍보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 및 동법 제11조의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온오프라인 매체활용 및 현장 농정 홍보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737	4,922	4,408	4,000		
	국 고	5,737	4,922	4,408	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홍보담당관 가치공감실		이상범 김백주		044-201-1123 044-861-8840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						

12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		예산 (백만원)	560				
사업목적	○ 국민과 농업인이 함께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공익적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미래 비전 공유·확산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의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100%,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60	560	560	-			
	국 고	560	560	56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진필식		044-201-1717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업인의날행사 추진위원회		
관련자료								

13

농촌개발시험연구 사업

세부사업명	농촌개발시험연구(R&D)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개발시험연구		예산 (백만원)	350				
사업목적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촌지역개발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촌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농촌개발사업 설계기준 정비, 시공공법 개발 및 제도개선 등 연구 추진 및 보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및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지역개발 관련 연구개발이 가능한 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18	2,018	350	-			
	국 고	2,018	2,018	35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농촌정책과 농어촌연구원		정재균 허 건		044-201-1518 031-400-1750		
신청시기	정기(2월)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관련자료	-							

14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 보조				
내역사업명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945				
사업목적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여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p>○ (공통)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비 등 지원</p> <p>○ (인건비 등 경상경비) 사회서비스 유형에 한해 인건비 등 지원</p> <p>*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 (최대 135만원/월·인) 등 경상경비 지출 가능</p> <p>* 지원유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농촌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 복합형 : 사회서비스유형과 소득사업유형의 사업을 함께 수행 ▫ 소득사업 유형 :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 농식품산업형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 도농교류형 :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 - 지역개발형 :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활동 </div>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주민 5인 이상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단체로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도별)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농업법인은 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 실적(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한 경우만 지원 가능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최대 4년간 지원 가능							
	* 사회서비스 유형 및 복합형(최대 4년), 소득사업유형(최대 2년), 매년 사업성과 점검 후 추가 지원 검토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25	용자	-	자부담	2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합 계	1,650	945	1,650	-			
	국 고	1,650	945	1,65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각 도		농촌복지여성과 각도 농업정책 부서		김경은 도 업무 담당자		044-201-1572 -		
신청시기	'18.1월 중			사업시행기관		도, 시·군		
관련자료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의 사업 세부내용 참조							

15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예산 (백만원)	7,315		
사업목적	○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홍보, 경영 및 보험 등을 지원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사업 주요내용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 농촌민박, 축제 등 대상으로 사무장활동비 지원, 보험가입 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30	용자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합 계	3,820	4,885	4,885	4,885			
	사무장(국비)	3,420	4,485	4,485	4,485			
	보험(국비)	400	400	400	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최춘태		044-201-1592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16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예산 (백만원)	7,848		
사업목적	○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력 및 농외소득 증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홍보 및 도시민 유치 확대 등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 홍보 및 도시민 유치확대 등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농촌관광사업 등급 및 평가,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도농교류지원센터 등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합 계	7,848	7,848	7,848	7,848			
	국 고	7,848	7,848	7,848	7,84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최춘태		044-201-1592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17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상위사업명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세목	해당없음	
사업명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예산 (백만원)	해당없음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증진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나목, 제82조, 제84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30조, 제132조, 시행령 제72조, 73조, 74조, 시행규칙 제48조, 시행규칙 별표 3 등)						
자격 및 요건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자 * 필수시설 : 농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원한도	해당없음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소관 시·군·구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행지침서 참조						

18

관광농원

상위사업명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세목	해당없음		
사업명	관광농원사업				예산 (백만원)	해당없음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증진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나목,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30조, 제132조, 시행령 제72조, 73조, 74조, 시행규칙 제 48조 등)							
자격 및 요건	○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 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의 농어업인 단체) ○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필수시설 : 영농체험시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 인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일 것)							
지원한도	해당없음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소관 시·군·구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	관광농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9

농어촌민박

상위사업명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세목	해당없음		
사업명	농어촌민박사업				예산 (백만원)	해당없음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증진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라목, 제86조, 제86조의 2,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130조, 제132조, 시행규칙 제49조, 49조의 2, 시행규칙 별표 3 등)							
자격 및 요건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주민(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이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협의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만을 말하며 다중주택은 제외)으로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지원한도	○ 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업종합자금(용자, 2차보전사업) 지원대상 (총 사업비의 80% 이내)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이차보전	자부담	-
농업 종합자금 담당부서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종합자금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협중앙회		농식품금융부 농업금융지원팀		장영아 차장		02-2080-7592		
신청시기	연중	농업종합자금 용자시행기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용자 취급기관				
관련자료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0

농촌기반기술연구사업

세부사업명	농촌기반기술연구(R&D)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기반기술연구				예산 (백만원)	1,527		
사업목적	○ 농업농촌의 재해 대응력 강화 및 농촌 과소화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응 안전기술, 농업용수 및 생산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기술, 농촌지역의 과소화 대응 기술기반 연구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지역개발 관련 연구·개발이 가능한 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1,527	1,527			
	국 고	-	-	1,527	1,52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농촌정책과 농어촌연구원			정재균 허 건		044-201-1518 031-400-1750	
신청시기	정기(2월)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등	
관련자료								

21

농촌다원적자원활용(민간경상보조)사업

세부사업명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세계중요농업유산보전관리(민간경상보조)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							
사업 주요내용	○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							
지원한도	○ 1억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100	100			
	국 고	-	-	100	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 지역개발지원단			김일수 백승석		044-201-1545 042-610-1913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							

농촌다원적자원활용(지자체)사업

세부사업명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다원적자원활용(지자체)			예산 (백만원)	2,100			
사업목적	○ 농촌의 전통농법·경관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촌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여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다움유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 주요내용	○ 농업유산자원 발굴, 복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 농어촌정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신청지역 포함) 및 농업유산지정지역중 지역행복생활권 우선선정							
지원한도	○ 개소당 15억원(국비기준) : 1년차(150백만원), 2년차(455), 3년차(445)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728	3,000	3,000	3,000			
	국 고	1,910	2,100	2,100	2,100			
	지방비	818	900	900	9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			김일수		044-201-154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관련자료	농촌다원적자원활용(지자체) 시행지침서 참조							

23

세계중요농업유산보전관리(지자체)

세부사업명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세목	자치단체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세계중요농업유산보전관리(지자체)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수를 통한 보전관리						
사업 주요내용	○ 세계중요농업유산 환경정비 및 보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 농어촌정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 2개소(완도 청산도구들장논, 제주 발담)						
지원한도	○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 총 2개소(개소당 1억원, 국비기준)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400	600		
	국 고	-	-	200	300		
	지방비			200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			김일수	044-201-1545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관련자료	세계중요농업유산보전관리(지자체) 시행지침서 참조						

24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생활)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생활)				예산 (백만원)	124,819		
사업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기획평가체계구축지원,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농산물체험전시지원, 농촌체험관광지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 6차산업화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조직,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구청장							
지원한도	○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 특화농공단지 부지 조성비는 단지면적 3.3㎡당 3만원 또는 7만원 정액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25~50	융자	-	자부담	0~2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3,850	302,056	249,638	계속			
	국 고	151,925	151,028	124,819	계속			
	지방비· 자부담	151,925	151,028	124,819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시·도/시·군)		농촌산업과 지자체별 상이		신동원 지자체별 상이		044-201-1586 지자체별 상이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월 중),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생활) 시행지침서 참조							

25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세종)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세종)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세종)				예산 (백만원)	2,800		
사업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기획평가체계구축지원,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농산물 체험전시지원, 농촌체험관광지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 6차산업화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조직,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구청장							
지원한도	○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단지면적 3.3㎡당 3만원 또는 7만원 정액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25~50	용자	-	자부담	0~2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690	1,590	5,600	계속			
	국 고	845	795	2,800	계속			
	지방비· 자부담	845	795	2,80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산업과 로컬푸드과		신동원 이기풍		044-201-1586 044-300-2521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월 중), 수시			사업시행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자료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생활) 시행지침서 참조							

26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		예산 (백만원)	3,344				
사업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기획평가체계구축지원,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농산물 체험전시지원, 농촌체험관광지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 6차산업화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조직,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구청장							
지원한도	○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단지면적 3.3㎡당 3만원 또는 7만원 정액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25~50	응자	-	자부담	0~2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902	5,670	6,688	계속			
	국 고	3,951	2,835	3,344	계속			
	지방비· 자부담	3,951	2,835	3,344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산업과 친환경농정과		신동원 문춘순		044-201-1586 064-710-302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월 중),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생활) 시행지침서 참조							

농촌재능나눔 활성화지원(민간)사업

세부사업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특회계)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예산 (백만원)	2,991			
사업목적	○ 다양한 분야의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마을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 주요내용	○ 농촌재능나눔 일반단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농촌재능나눔 홍보, 농촌집고쳐주기 등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제35조(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확대) ○ 농촌집고쳐주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제10호,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및 대학생 등 ○ (요건) 농촌재능나눔 지원대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직능·사회봉사단체, 법인 및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농림축산식품부형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의 단체 및 기관, 기관·기업체(소속 사회봉사 단체 포함), 대학교 및 대학생 동아리 단체 등							
지원한도	○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예산)규모 : 단체당 20백만원 한도내 국비 100% 지원 ○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예산)규모 : 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 국비 100% 지원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50	1,743	1,743	1,743			
	국 고	1,750	1,743	1,743	1,74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다솜동지복지재단	농업역사문화전시체 험관추진팀 농어촌자원개발원 공 동체지원부 다솜동지복지재단			김기성, 허혜민 업무 담당자 업무 담당자		044-201-1541, 4 031-299-7881~6 031-299-7897~9		
신청시기	해당년도 1~3월,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다솜동지복지재단		
관련자료 등	농촌재능나눔 활성화지원(민간) 시행지침서 참조, 2018년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및 농촌집고쳐주기 사업계획,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 등							

28

농촌지역 종합개발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지역 종합개발 지원			예산 (백만원)	3,093		
사업목적	○ 기초생활권 일반농산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개발 정책 추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성 검토, 모니터링, 컨설팅 및 평가, 역량강화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농어촌정비법 제7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589	3,433	3,093	3,433		
	국 고	3,589	3,433	3,093	3,43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교남 주무관 고은지		044-201-1560 044-201-156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						

29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민간)사업

세부사업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민간)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 교통여건 열악한 농촌지역에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 선정, 관리 및 모니터링 등 지원 가능 기관(한국농어촌공사)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0	100	100	100			
	국 고	100	100	100	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농촌정책과 농어촌자원개발원		정재균 김기진	044-201-1518 0312990-7881			
신청시기	정기(2월)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30

농촌형교통모델사업

세부사업명	농촌형교통모델(생활)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형교통모델		예산 (백만원)	4,100				
사업목적	○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내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이동권 보장							
사업 주요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소형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1항 제5호 및 제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자							
지원한도	개소당 1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200	8,200	8,200	8,200			
	국 고	4,100	4,100	4,100	4,100			
	지방비	4,100	4,100	4,100	4,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농촌정책과 농어촌자원개발원		정재균 김기진		044-201-1518 031-299-7881		
신청시기	정기(5~9월)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	농촌형교통모델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1

도시민 농촌유지사업 평가사업

세부사업명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도시민 농촌유지사업 평가			예산 (백만원)	90			
사업목적	○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추진 지자체 평가							
사업 주요내용	○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지자체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 벤치마킹							
국고보조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0	100	100	100			
	국 고	90	100	100	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인력과 귀농귀촌종합센터		장성준 김준영		044-201-1539 02-2058-2072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예산 (백만원)	5,400				
사업목적	○ 귀농귀촌희망자가 지자체에 귀농귀촌 하도록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귀농귀촌 전담팀 운영, 박람회 등 홍보,주민화합, 귀농귀촌인 복지 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0	5,400	5,400	5,400			
	국 고	5,000	5,400	5,400	5,400			
	지방비	5,000	5,400	5,400	5,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인력과 귀농귀촌종합센터		장성준 김준영		044-201-1539 02-2058-2072		
신청시기	(정기)8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33

주민주도마을만들기(민간)사업

세부사업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주민주도마을만들기(민간)		예산 (백만원)	259				
사업목적	○ 지역개발사업 참여 우수 마을 및 인력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참여 의식 고취 및 분위기 조성							
사업 주요내용	○ 행복마을 콘테스트 시상금, 우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인센티브 부여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및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개발사업 참여 우수 마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59	259	259	259			
	국 고	259	259	259	25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김재학 주무관 강성윤		044-201-1551 044-201-1552 044-201-1553		
신청시기	정기(해당년도 2월중)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34

주민주도마을만들기(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주민주도마을만들기(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540	
사업목적	○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주민 역량조사 및 주민주도 마을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및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주민주도 지역발전, 지자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공공·민간 전문기관이 컨소시엄을 통해 지원 가능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25	1,125	1,125	1,125		
	국 고*	585	585	585	585		
	지방비	540	540	540	540		
* 모니터링, 평가 및 운영지원비(45백만원) 포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김재학 주무관 강성윤		044-201-1551 044-201-1552 044-201-1553	
신청시기	정기(해당년도 2월중)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35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생활기반·제주·세종계정)			예산 (백만원)	879,531			
사업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 지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만들기, 신규마을 조성, 시군역량강화,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농촌현장포럼, 농촌재능나눔,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7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지역 중 농산촌지역 123개 시군 * 어촌지역 11개 시군은 별도 해수부 지침에 따름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원한도	○ 농촌중심지활성화 : 60~120억원이하, ○ 마을만들기 : 5~40억원 이하 ○ 신규마을조성 : 1.5~36억원 이하 ○ 시군창의 : 10억원 이하 ○ 시군역량강화 : 2.5억원 이하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실소요액 ○ 농촌신활력플러스 : 70억원 이하 * 어촌지역은 해수부 지침에 따름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246,191	1,246,191	1,256,220	1,256,220			
	국 고	872,334	872,334	879,351	879,351			
	지방비	373,857	373,857	376,869	376,86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이강석 사무관 신준용 사무관 김정욱 서기관		044-201-1556 044-201-1554 044-201-1553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2월		사업시행기관		시·군			
관련자료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 시행지침서 참조,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							

36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 (백만원)	7,055		
사업목적	○ 농촌지역의 부존자원(1차산업)을 이용, 식품가공 등 제조업(2차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3차산업)을 융복합하여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농촌지역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상담 및 코칭, 우수제품 안테나숍 운영, 기초실태조사,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660	12,410	14,110	-			
	국 고	5,830	6,205	7,055	-			
	지방비	5,830	6,205	7,05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각 시도		농촌산업과 각 시도 농업정책 부서		사무관 이창일 주무관 손태훈 시도 업무담당자		044-201-1584 044-201-1585 -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지자체)

세부사업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6차산업지구조성사업(지자체)				예산 (백만원)	5,550		
사업목적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6차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 산업의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인프라 조성,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산업 주체간 연계·협력, 규제 발굴·개선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원한도	○ 지구당 30억원(국비 15억) 3개년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000	13,500	11,100	계속			
	국 고	4,500	6,750	5,550	계속			
	지방비· 자부담	4,500	6,750	5,55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각 시도/시·군	농촌산업과 각 시도/시·군 농업정책 부서			사무관 신동원 주무관 유영숙 각 시도 업무담당자		044-201-1586 044-201-1587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6~8월 중)			사업시행기관		각 시도/시·군		
관련자료								

38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세부사업명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예산 (백만원)	33,100		
사업목적	○ 지역행복생활권구성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주요내용	○ 님비해소, 교육, 주민안전, 의료질 개선 및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목적),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지원자격 및 요건	○ (시행방법) 자치단체 자본보조 ○ (시행주체)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지원비율) 국고 70~80%, 지자체 20~30% * NIMBY 해소, 교육·의료질 개선 등 5대 중점분야는 국고 80% 우대 지원							
지원한도	○ 3년이내 총사업비 국고기준 30억원							
재원구성 (%)	국고	70~80	지방비	20~3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4,016	84,016	42,445	25,540			
	국 고	65,020	65,020	33,100	20,000			
	지방비	18,996	18,996	9,345	5,5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김재학 주무관 강성윤		044-201-1551 044-201-1552 044-201-1553		
신청시기	'18년부터 신규사업 없음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39

활기찬 농촌 행정경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활기찬 농촌 행정경비 지원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 활기찬농촌프로젝트 효율적 사업 추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사업성 검토, 중앙지원단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29조, 제3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	100	100	-			
	국 고	200	100	1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교남 주무관 고은지		044-201-1560 044-201-156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							

40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경상)사업

세부사업명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경상)				예산 (백만원)	2,584		
사업목적	○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지역 활력제고를 위해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기업유치, 일자리(인력양성), 생활여건, 주거 분야 패키지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8조, 제3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537	3,372	3,691	143			
	국 고	1,776	2,360	2,584	100			
	지방비	761	1,012	1,107	4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교남 주무관 고은지		044-201-1560 044-201-156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관련자료	-							

41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자본)사업

세부사업명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자본)				예산 (백만원)	10,336		
사업목적	○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지역 활력제고를 위해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기업유치, 일자리(인력양성), 생활여건, 주거 분야 패키지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8조, 제3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149	13,486	14,766	571			
	국 고	7,104	9,440	10,336	400			
	지방비	3,045	4,046	4,430	17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교남 주무관 고은지		044-201-1560 044-201-156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관련자료	-							

42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예산 (백만원)	1,200			
사업목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사업 주요내용	○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 주행 농기계에 등화장치 부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로주행 농업기계에 등화장치 부착지원(국고 40%, 지방비 60%)							
지원한도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지원(경운기 방향지시등은 추가 설치 지원 가능)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6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00	3,000	3,000	9,000			
	국 고	1,200	1,200	1,200	3,600			
	지방비	1,800	1,800	1,800	5,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기자재정책팀 시군구 농정과		최승묵 농기계담당자		044-201-1840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11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43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예산 (백만원)	245				
사업목적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 주요내용	○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4개월)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비 및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7조의2, 제33조, 제3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돌봄방의 영유아 정원 중 농업인 자녀의 비율이 70% 이상 - 기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 새로 돌봄 영유아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한도	○ 시설비 : 개소당 20백만원 이내(기자재, 장비 포함) ○ 운영비 : 개소당 12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이후		
	합 계	483	245	245	245	245		
	국 고	483	245	245	245	24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김상열 신영택		044-201-1576 044-201-1580		
신청시기	매년 초(1~2월)			사업시행기관		농어촌희망재단		
관련자료	농번기주말돌봄방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44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세목	보전금			
내역사업명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예산 (백만원)	347,197			
사업목적	○ 농어업인의 건강·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건강보험료 : 농어업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50%*를 차등 지원 * 농식품부 0~28% + 복지부 22% 경감 ○ 연금보험료 : 농어업인이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 「국민연금법」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지원한도	○ 건강보험료 : 1인당 월 최대 지원액 : 92,435원 ○ 연금보험료 : 1인당 월 최대 지원액 : 40,950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43,309	344,431	347,197	358,627			
	국 고	343,309	344,431	347,197	358,62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이승규		044-201-1574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관련자료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45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예산 (백만원)	1,505		
사업목적	○ 농업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 연구와 예방 교육을 통해 농업인 건강증진 및 원통서비스 제공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 직업성 질환 조사 연구, 예방 교육 추진 등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직업성 질환 조사 연구, 예방 교육 및 원격의료 추진 등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대학병원, 의과대학) 지정·운영							
지원한도	○ 센터당 3억원 내외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805	1,805	1,505	1,505			
	국 고	1,805	1,805	1,505	1,50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이승규		044-201-1574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업안전보건센터	
관련자료								

46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방문콘서트)사업

세부사업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방문콘서트)		예산 (백만원)	48				
사업목적	○ 문화접근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클래식 감상 기회 제공 및 새로운 문화경험 제시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1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 공모를 통한 사업수행기관(농어촌지역 문화활동 관련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 지정							
지원한도	○ 48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0	60	60	60	60		
	국 고	48	48	48	48	48		
	자부담	12	12	12	12	1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김상열 신영택		044-201-1576 044-201-1580		
신청시기	공모기관 선정공고(매년 4월)			사업시행기관		공모선정		
관련자료	농업인행복버스운영(방문콘서트) 시행지침 참조							

47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행복버스)사업

세부사업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행복버스)		예산 (백만원)	777				
사업목적	○ 각종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 장수사진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농업인 복지 증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의료서비스 낙후지역 농업인에 대한 질환 검진 및 물리치료, 장수사진 촬영 후 액자 제작 및 제공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지원자격 및 요건	○ 의료 서비스 낙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농업인 및 농촌지역의 소외계층							
지원한도	○ 777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83	983	983	983			
	국 고	777	777	777	777			
	자부담	206	206	206	20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이승규		044-201-1574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사)농촌사랑범 국민운동본부		
관련자료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계획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예산 (백만원)	58,325			
사업목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사업 주요내용	○ 가입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 ○ 보험사업자 : 농업인안전보험(NH농협생명), 농기계종합보험(NH농협손해보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1항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87세(일부상품 84세)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지원한도	○ 가입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연도	합계		농업인		농기계		
	2016	625		551		74		
	2017	579		466		113		
	2018	583		458		12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조수영		044-201-1797		
농업정책보 험금융원	보험2부			박성준		02-3775-6739		
NH농협생명	농축협지원부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예산 (백만원)	13,090			
사업목적	○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							
사업주요내용	○ 농업인 학비 부담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 대학·고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국고보조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지원자격 및 요건	○ (대학장학금) - 영농후계 : 농식품 계열학과 재학중인 학생 - 농업인자녀 : 소득수준, 성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자녀 ○ (고교장학금) : 농식품 계열 및 농촌지역 예체능분야 우수 학생							
지원한도	○ 대학장학금: (농업인자녀) 50~200만원/학기, (영농후계) 250만원/학기 * 타 장학금과 중복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고교장학금: 50만원/연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3,850	13,700	13,090	13,090			
	국 고	13,850	13,700	13,090	13,09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농촌복지여성과 장학팀		이한병 서봉혜		010-2065-1754 010-7221-3405			
신청시기	1학기(1월), 2학기(7월)			사업시행기관		농어촌희망재단		
관련자료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예산 (백만원)	649		
사업목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농촌 소규모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농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주요내용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이동식놀이교실 포함)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제52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 위탁자 ○ 이동식 놀이교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놀이감 및 도서대여 등 놀이차량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지원한도	○ 시설비 :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운영비 : 개소당 13.7백만원 이내(정액지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134	786	786	786	786		
	국 고	8,354	649	649	649	649		
	지방비	2,780	137	137	137	13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김상열 신영택		044-201-1576 044-201-1580		
신청시기	매년(전년도 9월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51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예산 (백만원)	3,015		
사업목적	○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한 환경조성 및 역량 개발						
사업 주요내용	○ 농촌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및 지역 공동체 육성을 위해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학습 기자재비 및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8조의2(농어업인들의 평생교육 지원),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 (공동체 범위) 농촌 면단위 내 15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체						
지원한도	○ 수혜인원, 지원 횟수·시간, 사업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개소당 5~25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15	3,015	3,015	3,015		
	국 고	3,015	3,015	3,015	3,01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농촌복지여성과 복지팀		이한병 양지예		010-2065-1754 010-3487-0605	
신청시기	당해연도 2월중			사업시행기관		농어촌희망재단	
관련자료	농촌 교육·문화·복지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세부사업명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예산 (백만원)	378				
사업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 50백만원 × 9개소 × 70%(국고) ○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 10백만원 × 9개소 × 70%(국고)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3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단체, 법인)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60백만원(국비 70%, 30%) - 프로그램 운영지원 50백만원,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1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합 계	-	378	528	-			
	국 고	-	378	528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각 도		농촌복지여성과 각도 농업정책 부서		김경은 도 업무 담당자		044-201-1572 -		
신청시기	'18.3월 경			사업시행기관		도, 시·군		
관련자료	사업시행지침 별도 시행 예정							

53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준비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준비사업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여성농업인은 과도한 육체노동과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직업성 질환의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검진을 통하여 건강한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사업 주요내용	○ 건강검진 항목선정, 진단방법 마련, 소요자원 규모산정 및 법적 조치사항 검토 등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추진사항 마련							
국고보조 근거법령	○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지원자격 및 요건	○ 공모선정(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지원한도	○ 300백만원 이내(공모 선정금액)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	300	300	300	300		
	국 고	-	300	300	300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김상열 신영택		044-201-1576 044-201-1580		
신청시기	공모(매년 3월)			사업시행기관		공모선정기관		
관련자료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취약농가인력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영농도우미 지원			예산 (백만원)	7,252			
사업목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도모							
사업 주요내용	○ 영농도우미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자, 영농교육 참여 여성농업인 등에게 영농도우미 최대 10일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도우미)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자, 영농교육참여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최대 10일 지원							
지원한도	○ 1일당 국고지원한도 : 49,000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200	10,200	10,360	10,360			
	국 고	7,140	7,140	7,252	7,252			
	자부담	3,060	3,060	3,108	3,10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이승규		044-201-1574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취약농가인력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55

행복나눔이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취약농가인력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행복나눔이 지원	예산 (백만원)	1,337					
사업목적	○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농촌거주 65세 이상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 행복나눔이 최대 12일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거주 65세 이상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 행복나눔이 최대 12일 지원							
지원한도	○ 1일당 국고지원한도 : 8,400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70	2,070	1,910	1,910			
	국 고	1,449	1,449	1,337	1,337			
	자부담	621	621	573	57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이승규		044-201-1574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취약농가인력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II. 농업분야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56

A팜쇼

세부사업명	A팜쇼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A팜쇼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대한민국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가치에 대한 비전 제시하고 다양한 농업일자리 창출의 장 마련							
사업 주요내용	○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 기획 및 운영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업분야 단체, 기업 및 창업과 취업 희망자, 학생							
지원한도	○ 국고 3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300	-			
	국 고	-	-	3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임채홍 김대영		044-201-2425 044-201-2426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57

결혼이민여성농업인교육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결혼이민여성농업인교육 지원		예산 (백만원)	1,666				
사업목적	○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및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교육, 공동농장운영, 생활요리 등 기초농업과정, 멘토링 과정 운영, 농촌정착지원과정 운영							
국고보조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영농의사가 있는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							
지원한도	○ 1,666백만원 이내(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1,366백만원,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 과정 3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162	1,666	1,666	1,666	1,666		
	국 고	10,162	1,666	1,666	1,666	1,66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김상열 신영택		044-201-1576 044-201-1580		
신청시기	매년 초 사업시행기관 선정(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사업시행기관		농협중앙회		
관련자료								

58

경영실습임대농장

세부사업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경영실습임대농장			예산 (백만원)	4,500			
사업목적	○ 청년 농업인(희망자 포함)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영농 전 과정을 본인 책임 하에 경영하는 임대형 경영실습 농장을 조성하여 영농경영 역량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공사 또는 고령농 등에게 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청년농에게 저렴하게 임대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9,000	9,000			
	국 고	-	-	4,500	4,500			
	지방비	-	-	4,500	4,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배민식		044-201-1532		
신청시기	'18.4월~5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관련자료								

59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사업

세부사업명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곤충유통사업단 구성					예산 (백만원)	130		
사업목적	○ 곤충의 광역, 대량유통이 가능하도록 영세농가 및 법인을 조직화, 품질관리를 지원하여 영세성 극복								
사업 주요내용	○ 농가조직화 컨설팅, 상품 개발비, 마케팅 홍보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수행),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곤충산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농업법인, 기업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 (국고 50%, 지방비5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260	260	260				
	국 고	-	130	130	130				
	지방비	-	130	130	13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종자생명산업과 친환경농업과		박선옥 정동식		044-201-2473 054-880-3362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경상북도(예천군)		
관련자료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지차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도시농업활성화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대도시 국·공유지, 개발제한구역 내 미활용 토지 등을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표준 모델로 제시하여 지자체 사업으로 확산 유도							
사업 주요내용	○ 농지조성 : 객토, 구획정리, 관수시설, 울타리 조성, 농기구 창고 등 ○ 편의시설 : 세면장,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 교육장 및 퇴비장, 기타 편의시설 ○ 기타사항 : 기타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선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도시농업육성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 및 지방비 매칭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							
지원한도	○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소당 5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800	800	1,000	1,200			
	국 고	400	400	500	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한장호		044-201-2478	
신청시기	2018.1~2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61

교육훈련 내실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교육훈련 내실화 지원				예산 (백만원)	816		
사업목적	○ 농업인 교육에 대한 체계적 관리, 농업·농촌교육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등 운영 효율화							
사업 주요내용	○ 스마트폰 활용 현장 점검, 전문회계법인 정산업무 검증, 농업·농촌교육 유관기관간 정보교류, 농업인교육 홍보 지원, 농업마이스터 지정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운영비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574		816		816		
	국 고	1,574		816		81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유원상		044-201-1535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예산 (백만원)	1,100				
사업목적	○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노지형 스마트팜 시설보급으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을 분석하고, 빅 데이터 수집·분석 등							
사업주요내용	○ 노지채소 5대작물(무,배추,마늘,양파,고추)에 ICT 시설장비 보급을 보급하고 빅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적생육 환경분석 및 관측모형 개발							
국고보조근거법령	○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업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한도	○ 2천만원/1농가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1,100	-			
	국 고	-	-	1,1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김군태 주무관		044-201-2420		
신청시기	1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물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63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예산 (백만원)	378				
사업목적	○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사업 주요내용	○ 해외 인허가 및 인증 취득 절차, 발급처 정보, 필요서류, 소요기간 및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취득 비용 지원 ○ 해외시장에서의 우리나라 농기자재 제품에 대한 수요여부 및 해외 바이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시장에서의 마켓테스트 활동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3조2, 「사료관리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기자재 수출업체							
지원한도	○ 개소당 21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540	900			
	국 고	-	-	378	630			
	자부담	-	-	162	27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기자재정책팀 국제통상협력실		소병준 임지윤		044-201-1894 044-861-8877		
신청시기	2~3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농기자재수출빅데이터정보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기자재수출빅데이터정보지원	예산 (백만원)	595		
사업목적	○ 국내 농기자재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품목별 기초통계 및 수출국 현지 정보 등 수출촉진에 필요한 해외진출 정보 제공				
사업 주요내용	○ 수출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품목별 기초정보 및 유망수출국 수출전략정보 제공, 수출기업 역량강화 교육 및 업계 대상 간담회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의2, 제34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3조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보조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617	595	600
	국 고	-	617	595	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기자재정책팀 국제통상협력실		소병준 임지윤	044-201-1894 044-861-8877
신청시기	2~3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65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지원						예산 (백만원)	5,880
사업목적	○ 농식품 벤처창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성장산업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운영(5개), 창업콘테스트 추진, 기술가치평가, 농산업체 판로지원, 농촌현장 창업보육,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운영,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식품분야 (예비) 벤처창업자 등							
지원한도	○ 사업별 예산 범위 내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960	4,850	5,880	9,380			
	국 고	4,960	4,850	5,880	9,380			
* 19년~21년 계획 예산 합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과학기술정책과 벤처창업지원팀 미래인재실 투자기획부		유정연 김용호 제정민 류제천		044-201-2460 063-919-1410 044-861-8833 02-3775-6775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농식품 창업정보망(http://www.a-startups.or.kr)							

66

농식품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사업

세부사업명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식품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예산 (백만원)	1,048			
사업목적	○ 농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점검 및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감축실적 평가, 감축이행 점검 및 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보조 100%							
지원한도	○ 에너지경영시스템 및 감축설비 성과검증 지원(국비 50%, 자비 50%)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중소·중견 국비 100%, 대기업 7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86	1,048	1,048	933			
	국 고	1,086	1,048	1,048	93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창조농식품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김화태 이길재		044-201-2423 063-919-1470		
신청시기	관리업체 선정(매년 4월)			사업시행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련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예산 (백만원)	410				
사업목적	○ 청년들의 농업관련 국제기구, 해외기업(연구기관) 등과의 진출 지원을 통해 청년 취업을 제고 및 농업분야 인재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인턴십 프로그램 대상자 선발·교육(연간 50명 내외) ○ 국제기구(해외기업)에 인턴 파견(3~6개월) ○ 인턴 종료 후 활동 실적보고 및 향후 국제기구(해외기업) 지원 시 측면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지원자격 및 요건	○ 재학생(대학교 3학년 이상 또는 대학원생) 및 졸업생(만 30세 이하) * 서류전형(학교성적·어학능력 등) 및 면접을 거쳐 1차 합격자 선발·추천 * 파견 대상기관에서 추천후보자 면접 후 최종 선발							
지원한도	○ 인턴 선발자에게는 해외체재비(월 140만원, 지역별 차등 지급), 왕복항공료 및 비자발급비 등 준비비 지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410	451			
	국 고	-	-	410	45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송재원	044-201-2036			
신청시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물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예산 (백만원)	800			
사업목적	○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 고용 촉진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 혁신을 달성하고,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의 농산업 유입을 확대							
사업 주요내용	○ 농업경영체의 기술개발 및 경영 규모화를 위해 전문인력(CEO, 전문인력, 농고·농대 졸업생)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요건을 충족한 경영체 ○ APC, RPC, 거점도축장 운영사업자 : 직전년도 경영평가 D등급 이상(거점도축장은 직전년도 경영평가 C등급 이상) ○ 들녘별경영체 : 들녘별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한도	○ 채용유형 및 지원연차에 따라 1인당 월80~180만원							
재원구성 (%)	국고	40~8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20~6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00	800	800	800			
	국 고	800	800	800	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한지은		044-201-1534		
신청시기	5-6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농업경영컨설팅(사업평가운영)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경영컨설팅(사업평가운영)		예산 (백만원)	157				
사업목적	○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컨설팅 전문업체 인증, 사업홍보 및 성과관리 등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점검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7	157	157	157			
	국 고	157	157	157	15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한지은		044-201-1534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농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예산 (백만원)	1,032				
사업목적	○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사업 주요내용	○ 농업경영체의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30% 지방비20% 자부담50%							
지원한도	○ 경영체 유형 및 혁신역량진단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개별경영체 10백만원, 법인경영체 20~5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20	응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840	3,840	3,440	3,440			
	국 고	1,152	1,152	1,032	1,032			
	지방비	768	768	688	688			
	자부담	1,920	1,920	1,720	1,7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한지은		044-201-1534		
신청시기	사업시행 전년도 11월			사업시행기관		농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시행지침 참조							

71

농업계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계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 지원			예산 (백만원)	10,170			
사업목적	○ 농업계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업분야(영농 포함) 진출 촉진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주요내용	○ 실습교육, 농산업분야 자격증 취득, 인턴십, 취창업동아리 등 졸업 후 농업 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및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5개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계열 학과가 설치된 농고 및 농대를 대상으로 공모(농업계학교교육지원) 및 지정(미래농업선도고교사업, 영농창업특성화사업)을 통해 선정된 교육기관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4,300		6,100		10,170		
	국 고	4,300		6,100		10,17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유원상		044-201-1535		
신청시기	`18년 1월 예정			사업시행기관		농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epis.or.kr)							

농업계학교 실습장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계학교 실습장		예산 (백만원)	1,300	
사업목적	○ 후계 인력육성을 위해 농고에 기초 교육 인프라 개선 필요에 따라 농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시설지원 실시 - 최신 영농기술 실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영농능력 배양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및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실습시설 확충, 개보수, 기자재·장비 구입 등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계 고등학교(공모)				
지원한도	○ 학교당 10억원(2~3년차 사업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6,500	1,300	1,300	
	국 고	6,500	1,300	1,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유원상	044-201-1535
신청시기	`18년 1~2월 예정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지자체 공문 시달				

73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사업명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 (백만원)	1,056			
사업목적	○ 농업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							
사업 주요내용	○ 농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모니터링, 평가 및 정부 구매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보조 100%							
지원한도	○ 사업계획 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수행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25	936	1,056	940			
	국 고	825	936	1,056	9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창조농식품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김화태 이길재		044-201-2423 063-919-1470		
신청시기	외부감축사업 농가선정(3월, 7월)			사업시행기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관련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예산 (백만원)	5,125				
사업목적	○ 현장중심의 실습형 기술·경영교육을 통해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리더 육성							
사업 주요내용	○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대상으로 9개 대학, 33개 캠퍼스, 100개 품목전공을 개설하여 4학기(2년)/총 32학점(전공 26학점 이상)의 품목교육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제 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4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지원한도	○ 사업계획 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수행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200	10,200	10,200	10,200			
	국 고	5,125	5,125	5,125	5,125			
	지방비	2,504	2,504	2,504	2,504			
	자부담	2,571	2,571	2,571	2,57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사무관 신부선		044-201-1538		
신청시기	정기(2년 교육과정으로 홀수년도 하반기 모집)			사업시행기관		시도		
관련자료	-							

75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법인 취업지원		예산 (백만원)	930				
사업목적	○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정착을 제고하고 농업부문 신규입력 유입 촉진							
사업 주요내용	○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00만원(6개월 기준)까지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제2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지원한도	○ 1인당 월1백만원(최대6개월)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930	930			
	국 고	-	-	930	93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한지은		044-201-1534		
신청시기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운영			예산 (백만원)	2,4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농협 인력중개센터내에 영농작업반 운영을 통해 전문화된 인력의 안정적 공급 추진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협 인력중개센터를 강화하여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사전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중개하는 사업 * 농협 인력중개센터 내에 상시적 영농작업 그룹을 육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국비 70%(농협 30%) 							
지원한도	○ 개소당 68백만원 (국고: 농협=7:3)							
재원구성(%)	국고	70	지방비	-	용자	-	농협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3,428	3,428	3,428	3,428			
	국 고	2,400	2,400	2,400	2,400			
	자부담	1,028	1,028	1,028	1,02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강동윤 사무관 신부선		044-201-1531 044-201-1538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		팀 장 양주필 차 장 김은정		02-2080-5621 02-2080-562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4.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협중앙회		
관련자료	농촌고용인력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농축산용미생물제품인증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축산용미생물제품인증지원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 개발 지원, 제품 효능 검증, 산업체 및 농가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미생물산업 활성화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유용미생물 효능검증을 통한 품질관리 및 미생물제품 인증 ○ 제품화 연구 및 기술 보급 ○ 전략형 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 ○ 교육 및 기업 지원 one-stop 컨설팅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고보조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지자체) ○ 조건 : 국고 30%, 지방비 7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7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1,000	1,000	1,000			
	국 고	-	300	300	500			
	지방비	-	700	700	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종자생명산업과 농생명기획팀		김윤아 조정현		044-201-2476 063-280-3673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농축산용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관련자료								

78

도시농업 교육인력양성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도시농업활성화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활성화를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사업 주요내용	○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교보재비, 운영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고, 도시민들에게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 가능한 도시농업 관련 교육기관 중 도시농업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지원한도	○ 개소당 5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합 계	600	600	600	800			
	국 고	300	300	300	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종자생명산업과 신성장전략실		유보라 이선호		044-201-2478 044-861-8882		
신청시기	2018.2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79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도시농업활성화			예산 (백만원)	37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되어 있는 도시농업 관련 정보 등을 통합제공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향상 도모 ○ 중앙단위 도시농업 사이트를 활용하여 도시농업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 도시농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구입, 기능개선, 홍보 등 시스템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합 계	210	150	370	400			
	국 고	210	150	370	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종자생명산업과 신성장전략실		유보라 이선호		044-201-2478 044-861-8882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도시농업박람회 및 도시농업 정책홍보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도시농업활성화			예산 (백만원)	330			
사업목적	○ 도시민의 농사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박람회,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여 도시민들의 관심유도 및 농업·농촌 가치확산							
사업 주요내용	○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비용 지원 ○ 정부의 도시농업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도시농업박람회 : 2018년도 제7회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자체 ○ 도시농업정책홍보 : 해당 없음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합 계	330	330	330	330			
	국 고	330	330	330	33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유보라		044-201-2478		
신청시기	선정 완료('17.5.18)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물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81

도시양봉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도시양봉지원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 도시민의 여가, 체험, 학습 활동 등과 병행하여 벌꿀 및 양봉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기반 확보							
사업 주요내용	○ 양봉사육 체험 및 교육을 위한 벌통구입비, 도시민 교육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양봉사육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지원한도	○ 벌통구입비로 20만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0	128	100	100			
	국 고	300	128	100	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부서		김성구		044-201-2336		
신청시기	연말 ~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세부사업명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생명산업대전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을 활용한 고부가 생명산업을 전시·체험 할 수 있는 장 마련을 통하여 국민공감대 형성						
사업 주요내용	○ 주제관, 테마관, 체험관 등을 마련하여 농생명 산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 및 일반인이 참여하고 전시 체험의 장 마련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생명산업 관련 정책 및 가치 홍보를 수행하는 기관 ○ 조건 : 국고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0	300	200	300		
	국 고	300	300	200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종자생명산업과 인재기획실		김윤아 김상호		044-201-2476 044-861-8881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83

생명자원통합DB구축사업

세부사업명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생명자원통합DB구축			예산 (백만원)	661		
사업목적	○ 생명자원 정보의 공유 및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미래 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생명자원 신규수집, 발굴자원 DB화, 국제변화 대응 전문서비스 강화, 나고야 의정서 대응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생명자원통합DB 구축 관련 기관 및 단체 ○ 조건 : 국고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61	661	661	930		
	국 고	661	661	661	93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종자생명산업과 인재기획실		김윤아 김상호		044-201-2476 044-861-8881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수직형 농장 성과분석사업

세부사업명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수직형농장 성과분석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 고품질·기능성 작물 등 경제성 있는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사업에 대한 평가·분석·홍보							
사업 주요내용	○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홍보, 컨설팅을 통한 확산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제8조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1조, 제1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100	-			
	국 고	-	-	1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최문환 사무관 김균태 주무관		044-201-2419 044-201-2420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85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

세부사업명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수직형농장 실증				예산 (백만원)	644		
사업목적	○ 기능성 작물 등 경제성 있는 수직형농장(vertical farm) 비즈니스모델 및 작물 재배기술의 발굴 및 실증 추진							
사업 주요내용	○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수직형농장 설비 구축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제8조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1조, 제1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한도	○ 총사업비 715백만원/개소당 * 지방비, 자부담 비율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7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2,145	2,145	-			
	국 고	-	644	644	-			
	지방비	-	1,501	1,501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최문환 사무관 김균태 주무관		044-201-2419 044-201-2420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스마트 농정 통계체계 구축사업

세부사업명	스마트 농정 통계체계 구축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 농정 통계체계 구축				예산 (백만원)	1,800			
사업목적	○ 현장과 밀접한 농경지 경계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 행정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계 통합하는 팜 맵을 구축하여 농정 추진 효율성 증대								
사업 주요내용	○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 맵 및 농식품통계 활용·확산 기반 구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2(농정원 설립 목적 및 사업)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및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 농업농촌 공간정보 활용 기본 계획(16.12) ○ 농식품통계 중장기 발전방안(13.7)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고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280	1,800	1,800	2,286				
	국 고	2,280	1,800	1,800	2,28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강중수		044-201-1406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								

스마트팜 농가활용서비스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농식품ICT융복합촉진(정보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가활용서비스개발				예산 (백만원)	1,132			
사업목적	○ 스마트팜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기업의 기술 및 제품 개선, 최적 생육알고리즘 도출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스마트팜 농가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농가활용 서비스 개발 및 최적 생육알고리즘 도출을 위한 스마트팜 빅데이터 제공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32	1,132	1,132	1,132				
	국 고	1,132	1,132	1,132	1,1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최문환 김균태		044-201-2419 044-201-2420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세부사업명	농식품ICT융복합촉진(정보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ICT융복합 모델개발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10년부터 추진한 모델개발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분석을 통해 사업 재설계 및 신규 확산 사업모델 발굴 추진							
사업 주요내용	○ 국내외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확산 가능한 실증모델 과제 발굴 및 발전 방안 제시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800	4,800	500	0			
	국 고	1,920	1,920	500	0			
	지방비	2,880	2,880	0	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최문환 사무관 김균태 주무관		044-201-2419 044-201-2420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스마트팜 확산 교육 지원(현장실습형교육)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팜 확산지원(현장실습형교육)			예산 (백만원)	360			
사업목적	○ ICT 융복합 스마트팜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 실습형 교육 추진							
사업 주요내용	○ 스마트팜 관심·도입 농가의 운영·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현장에서 작물재배, ICT 활용, 데이터분석 등 이론 및 실습교육 과정 운영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활용·관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지원(자부담 5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용자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0	720	720	720			
	국 고	0	360	360	360			
	자부담	0	360	360	3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최문환 사무관 김균태 주무관		044-201-2419 044-201-2420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스마트팜 확산 지원(권역별 현장지원센터)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팜 확산지원(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예산 (백만원)	600				
사업목적	○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A/S) 등 ICT 활용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사업 주요내용	○ 현장에서 가까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기업,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가의 현장 기술지도, 사후관리, 홍보 등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농업기술지도 기관에서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 지원							
지원한도	○ 20~250백만원/센터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900	1,200	1,200			
	국 고	-	450	600	600			
	지방비	-	450	600	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최문환 사무관 김균태 주무관		044-201-2419 044-201-2420		
신청시기	9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9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사업

세부사업명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	세목	민간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예산 (백만원)	1,254					
사업목적	○ 농업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컨설팅·심사 등을 통해 저탄소 인증 부여 및 유통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보조 100%							
지원한도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수행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30	1,259	1,254	1,116			
	국 고	830	1,259	1,254	1,11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창조농식품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노승환 이길재		044-201-2421 063-919-1470		
신청시기	정기(년 3회, 3~7월)			사업시행기관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관련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							

세부사업명	종자산업기반구축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종자가치 홍보			예산 (백만원)	515			
사업목적	○ 종자가치 홍보(종자가치 홍보 및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등)							
사업 주요내용	○ 종자산업 가치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관련 단체 / 국고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5	515	515	1,545			
	국 고	305	515	515	1,54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생명산업과 종자산업진흥센터		양미희 최윤희		044-201-2481 063-219-880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련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www.seedcenter.fact.or.kr)							

93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사업

세부사업명	종자산업기반구축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예산 (백만원)	1,258					
사업목적	○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사업 주요내용	○ 민간육종연구단지 관리 및 육종 관련 분석서비스 지원 등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국고보조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국고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50	1,258	1,258	3,774			
	국 고	450	1,258	1,258	3,77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생명산업과 종자산업진흥센터		양미희 최윤희		044-201-2481 063-219-880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련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www.seedcenter.fact.or.kr)							

미래농업선도고교 인프라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미래농업선도고교 인프라비 지원		예산 (백만원)	1,200				
사업목적	○ 기존 농고 중 의지와 역량을 가진 학교를 선정하고 현장실습 중심의 농업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실제 영농 정착 후계 인력 양성							
사업 주요내용	○ 3개교(보은자영고, 홍천농고, 호남원예고) 실습장 및 기숙사 개보수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미래농업선도고교로 지정된 교육기관 지원사업							
지원한도	○ 학교당 30억원(3개년차 사업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분(억원)	1년차(16)		2년차(17)		3년차(18)		합계
	인프라비	60(20억원*3개교)		18(6억원*3개교)		12(4억원*3개교)		9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유원상		044-201-1535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							

95

첨단기술공동실습장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 농업인, 농고·농대생 등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ICT 기술교육의 기반마련							
사업 주요내용	○ 선진농업국 수준의 ICT 융복합 기술교육 및 현장중심교육, 시설 및 기자재, 강사 등을 활용한 위탁교육과 시설 임대차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첨단기술공동실습장 2개소(ATEC, JETC) - 국고 70~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70~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00		100		100		
	국 고	100		100		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유원상		044-201-1535		
신청시기	`18.2.~3. 예정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epis.or.kr)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세부사업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예산 (백만원)	7,254		
사업목적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사업 주요내용	○ 영세한 영농규모, 자금 부족 등 현재 농업소득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청년 농업인(1,200명)을 선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70	지방비	30~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10,620	10,620			
	국 고	-	-	7,254	7,254			
	지방비	-	-	3,366	3,36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배민식		044-201-1532		
신청시기	'18.1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97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예산 (백만원)	170			
사업목적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마을리더 및 사무장 등 체험마을 운영진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사업 주요내용	○ 체험마을사업자 지정받은 마을리더 및 사무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기본교육 및 현장체험, 마을간 멘토-멘티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받은 마을리더 및 사무장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합 계	170	170	170	170				
	국 고	170	170	170	17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최춘태		044-201-1592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98

친환경 비료 교육홍보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자재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 비료 교육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 친환경농자재 사용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자재 적정사용 홍보, 우수사례 발굴, 교육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의 2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보조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	200	200	200		
	국 고	200	200	200	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안치홍 박유천		044-201-1892 044-201-1893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사업 공모지원사업

세부사업명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사업 공모지원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영농영어정착에 필요한 아이디어, 현장애로 해결 및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영농영어 정착 유도과 미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토대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우수 아이디어 과제(시설, 기계, 장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총 사업비 중 자부담 20% 이상 * 제외 : 기 수혜자 및 2018년도 졸업예정자							
지원한도	○ 5과제 지원(1과제당 40백만원 지원, 10백만원 이상 자부담)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5	25	25	62.5			
	국 고	20	20	20	50			
	자부담	5	5	5	12.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한국농수산대학		교학과		이호성		063-238-9611		
신청시기	(매년) 당해 연도 3.30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대학		
관련자료								

현장실습 및 전문기술 교육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현장실습 및 전문기술 교육 지원			예산 (백만원)	7,295			
사업목적	○ 선진 농업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도농업인의 전문기술과 핵심노하우 등 현장의 전문기술 습득							
사업 주요내용	○ 현장실습교육(WPL), 첨단기술공동실습장, 농업경영인능력향상교육, 농업인국외훈련 및 방문연수,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마이스터활용 교육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현장실습교육장(WPL) 125개소, 첨단기술교육실습장 7개소 등 교육운영기관, 농고생, 농대생, 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50~8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20~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7,441		8,315		7,295		
	국 고	7,441		8,315		7,29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유원상		044-201-1535		
신청시기	연중(사업마다 상이)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물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농업인력포털 홈페이지(www.agriedu.net)							

101

후계농교육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후계농교육 지원		예산 (백만원)	400				
사업목적	○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 및 농산물 생산·유통시장변화에 능동적·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후계농업인 육성 - 국내·외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 및 경영, 신농업지식 등에 대한 교육 및 체험 지원							
사업주요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대상 의무교육 등 후계농업의 영농비전 설계 등을 위한 경영교육, 컨설팅 등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면서 영농조사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용자	0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800		800		800		
	국 고	400		400		400		
	지방비	320		320		320		
	자부담	80		80		8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배민식		044-201-1532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시도		
관련자료	지자체 공문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지원		예산 (백만원)	252				
사업목적	○ 후계농업경영인의 역할과 사명, 자긍심 고취, 농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 확산							
사업 주요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행사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농연, 후계농업경영인(국고 50%, 자부담 5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60	504	504	504			
	국 고	280	252	252	252			
	자부담	280	252	252	25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박해청		044-201-1524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농연		
관련자료	-							

10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관리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관리		예산 (백만원)	460				
사업목적	○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대비 미래 농업 인력의 주축이 될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성공적 창업 유도 - 농업분야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영농경력별 지원사업 홍보 및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지원							
사업 주요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운영 및 교육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면서 영농조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합 계	460	460	460	460			
	국 고	460	460	460	4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배민식		044-201-1532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							

한-뉴 FTA 협력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한-뉴 FTA 협력사업		예산 (백만원)	1,385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뉴 농업 협력을 토대로 농업·농촌 인적 역량 강화 및 기술협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어학 및 글로벌 의식 함양 - 청년들의 선진 농업기술·경영 노하우 획득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농축산분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양국 간 협력 증진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어학연수: 한국 농업인 자녀 청소년들에게 8주 간 뉴질랜드 공립학교 대상 교환학습 및 어학연수 기회 제공(127명) ○ 농축산업 훈련비자연수: 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 직무·어학교육(3개월) 및 직무연수(최대 9개월)가 가능한 훈련비자 발급 지원(42명) ○ 농업협력장학금: 뉴질랜드 내 축산수의 및 산림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는 석사 및 박사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4명) ○ 농림축산분야 전문가훈련·연구협력: 동물질병, 산림연구 분야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뉴질랜드 연구기관 파견 및 훈련·연구 지원(7명) ○ 수의역학 분야 워크숍: 수의역학 분야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이 매년 교대로 워크숍 주최('18년도 한국 개최)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제14장 농림수산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어학연수: 농촌지역 농업인의 중·고등학생 자녀(중2~3학년, 고1~2학년) ○ 농축산업 훈련비자연수: 농업계열학과 전공 대학생 ○ 농업협력장학금: 축산수의, 산림 분야 뉴질랜드 대학원 진학 예정자, 관련 학위보유자 ○ 농림축산분야 전문가훈련·연구협력: 동물질병, 산림연구 분야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 수의역학 분야 워크숍: 수의역학 분야 전문가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632	1,365	1,385	1,365			
	국 고	1,632	1,365	1,385	1,3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사무관 신부선		044-201-1538		
신청시기	상반기 2~4월 중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							

105

곤충종자보급센터 조성사업

세부사업명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곤충종자보급센터 조성					예산 (백만원)	1,200		
사업목적	○ 곤충자원의 종자화, 규격화를 위한 곤충질병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연중 균일하고 안정적인 곤충자원의 공급 및 질병관리시스템 구축 - 우량곤충종자 보급, 생산·분양 이력관리, 질병관리 모니터링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수행),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광역단위 지자체(부지확보 등) 공모신청 (국고5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240	2,400	2,360				
	국 고	-	240	1,200	1,060				
	지방비	-	-	1,200	1,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종자생명산업과 축산과			박선옥 박성용		044-201-2473 044-220-3715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관련자료									

106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예산 (백만원)	2,0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시장교섭력 확보 ○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의 조직화를 통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가 교육비, 컨설팅, 농가조직화, 상품개발, 마케팅 등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조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농업인단체(광역단위 사업단 조직)							
지원한도	○ 개소당 국비 5억원, 2년간 지원(국비 10억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1,000	2,000	-			
	국 고	-	500	1,000	-			
	지방비	-	300	600	-			
	자부담	-	200	4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각 도(道)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부서		김승동		044-201-2439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광역단위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시행지침 참조							

107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세부사업명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예산 (백만원)	40,890		
사업목적	○ 지진·태풍 등에 취약한 방조제를 보수·보강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 경제 발전과 국토의 보존 등 재해예방							
사업 주요내용	○ 시설물 안전진단(점검)결과 파손 및 노후화 시설 개보수 추진 - 방조제 단면보강, 비탈면 사석보수, 수제공 설치, 노후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 등 교체·보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방조제 관리법」 제7조,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시설) 「방조제 관리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결정 고시된 국가 관리 방조제 또는 지방관리 방조제 ○ (지원자격) 시설물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장·군수, 시도지사)							
지원한도	○ 재해예방 등을 위한 시설물 성능개선과 기능유지 및 내구연한 연장 등을 위한 필요 시설물 개보수 비용 ○ 지자체보조 : 국가관리(국고 100%), 지방관리(국고 50, 지방비 50)							
재원구성 (%)	국고	50~100	지방비	0~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3,169	52,000	53,661				
	국 고	45,000	37,000	40,890				
	지방비	8,169	15,000	12,770				
* '19이후 사업비는 18계속의 잔여사업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김창수		044-201-185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08

국내채종 기반 구축사업

세부사업명	품종심사및재배시험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국내채종 기반 구축사업			예산 (백만원)	3,521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방지 ○ 국내 채종기반 구축·유지를 위해 국내생산 종자 구매금액 일부 지원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채종 종자업체와 지원대상 작물에 대한 채종계약을 한 채종농가 구매자금 지원 - 구매대금 정산 확인 후 종자업체에 구매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동법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품목별 신청량이 아래 기준 이상이어야 함 - 무 150kg, 배추 230, 양파 150, 양배추 200, 고추 30, 박과 23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채종단가의 약 50% 지원 (단, 품목별 지원상한 단가는 무 22.5천원/kg, 배추 13.5, 양배추 20, 양파 86, 고추 138, 수박 170, 오이 125, 멜론 167, 참외 163, 호박 35, 대목 54)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197	3,521	3,521	3,721			
	국 고	3,197	3,521	3,521	3,72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박찬웅 신승교		054-912-0160 054-912-016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12월)			사업시행기관		국립종자원		
관련자료								

109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세부사업명	행정정보화(정보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운영		예산 (백만원)	1,364				
사업목적	○ 농림사업의 신청·선정·집행·사후관리 등의 과정을 전산처리하여 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사업 주요내용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운영							
국고보조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100%							
지원한도	해당없음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426	1,364	1,364	1,364			
	국 고	1,426	1,364	1,364	1,36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이효열		044-201-1412		
신청시기	해당없음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물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110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예산 (백만원)	671				
사업목적	○ 국가 가뭄 예·경보 기술지원 및 뒷받침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가뭄 대응센터」신설을 통한 가뭄 상시 및 선제적 대응							
사업 주요내용	○ 가뭄 예경보, 가뭄정보조사, 농업가뭄 평가대책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보조, 국고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671	4,760			
	국 고	-	-	671	4,7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과 농업가뭄센터		이재천 사무관 이광야 센터장		010-3362-8237 010-2367-1156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111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사업

세부사업명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정보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백만원)	1,880			
사업목적	○ 보조·용자금의 중복·편중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와 지역·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정보를 통합관리							
사업 주요내용	○ 농식품 보조·용자사업 102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6),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시스템 구축·개선(17~)							
국고보조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100%							
지원한도	해당없음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22	1,668	1,880	1,880			
	국 고	322	1,668	1,880	1,88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이효열		044-201-1412		
신청시기	해당없음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물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112

농업기반정비사업

세부사업명	농업기반정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기반정비				예산 (백만원)	156,678			
사업목적	○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								
사업 주요내용	○ 발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논밭작물재배기반지원 등 사업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시도, 시군)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한도	○ 지자체(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89,934	213,660	195,848					
	국 고	151,947	170,928	156,678					
	지방비	37,987	42,732	39,170					
* 포괄보조사업으로 '19이후 사업비 미작성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농업기반과 시도 농업정책과			강창엽		044-201-1862		
신청시기	지자체(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사업시행기관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13

농업기반정비(세종)사업

세부사업명	농업기반정비(세종)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기반정비(세종)				예산 (백만원)	1,000		
사업목적	○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							
사업 주요내용	○ 시군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시도, 시군)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한도	○ 지자체(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250	1,250	1,250				
	국 고	1,000	1,000	1,000				
	지방비	250	250	250				
* 포괄보조사업으로 '19이후 사업비 미작성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농업기반과 시도 농업정책과		강창엽		044-201-1862		
신청시기	지자체(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사업시행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14

농업기반정비(제주)사업

세부사업명	농업기반정비(제주)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기반정비(제주)				예산 (백만원)	16,079		
사업목적	○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							
사업 주요내용	○ 발기반정비,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사업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시도, 시군)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한도	○ 지자체(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4,221	24,454	20,099				
	국 고	19,377	19,563	16,079				
	지방비	4,844	4,891	4,020				
* 포괄보조사업으로 '19이후 사업비 미작성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농업기반과 시도 농업정책과		강창엽		044-201-1862		
신청시기	지자체(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사업시행기관		제주특별자치시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15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관리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예산 (백만원)	10,373					
사업목적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체계를 갖춰 용수절약, 재해 사전 예방							
사업 주요내용	○ 15년까지 93지구 중 41지구 완료(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설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및 제108조(자금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보조, 국고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800	10,800	10,373	330,700			
	국 고	10,800	10,800	10,373	330,7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과 첨단기술총괄부		이재천 사무관 문찬희 차장		010-3362-8237 010-3512-0760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16

농업용수 수질개선 기본조사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관리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용수 수질개선 기본조사			예산 (백만원)	1,190			
사업목적	○ 오염용수원 수질개선으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과 농촌환경 개선							
사업 주요내용	○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1조(농어촌용수오염 방지와 수질개선 등)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별표 2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보조, 국고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20	680	1,190	7,480			
	국 고	520	680	1,190	7,48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과 수질환경부		이재천 사무관 김형중 차장		010-3362-8237 010-2464-8817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17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관리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예산 (백만원)	20,840				
사업목적	○ 오염용수원 수질개선으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과 농촌환경 개선							
사업 주요내용	○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침강지, 인공습지, 물순환시설 등 설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별표 2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보조, 국고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2,507	15,114	20,840	261,115			
	국 고	12,507	15,114	20,840	261,115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및 수질조사사업비 합산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과 수질환경부		이재천 사무관 김형중 차장		010-3362-8237 010-2464-8817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18

농업용수 수질조사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용수 수질조사		예산 (백만원)	4,300				
사업목적	○ 전국 농업용수원 수질현황 및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 평가하여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사업 주요내용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상시측정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보조, 국고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300	4,300	4,300	-			
	국 고	4,300	4,300	4,300	-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및 수질조사사업비 합산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과 수질환경부		이재천 사무관 김형중 차장		010-3362-8237 010-2464-8817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19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세목	이차보전금			
내역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예산 (백만원)	221,227			
사업목적	○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1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등 80~100% 용자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지원한도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재원구성 (%)	국고	100% 이차보전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17,459	210,123	221,227	계속			
	이차보전	217,459	210,123	221,227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은행		농업금융정책과 농식품금융부		이성준 사무관 김종인 팀장		044-201-1752 02-2080-7561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자료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20

농업정보이용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정보이용활성화 지원			예산 (백만원)	5,826			
사업목적	○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제공 및 ICT융합모델 확산으로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 제고 및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							
사업 주요내용	○ 농식품통합정보서비스(Okdab4.0)를 통한 현장 중심의 지식정보 제공 ○ 농식품 클라우드 전환 및 수요자 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빅데이터 융합 모델 발굴·제공 ○ 데이터 융·복합 정보 생산으로 고객 맞춤형 정보이용 체계 강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의 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정보화 촉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보조 100%							
지원한도	해당없음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994	3,955	5,826	4,700			
	국 고	3,994	3,955	5,826	4,7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권병철		044-201-1414		
신청시기	해당없음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농식품 통합정보서비스(옥답4.0, www.okdab.kr)							

121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지원				예산 (백만원)	295		
사업목적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여건변화 등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 보완 정비							
사업 주요내용	○ 도로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유형정보 수정 및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추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시행령 제31조(기금의 기타사업),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0	291	295	300			
	국 고	300	291	295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강민수 사무관 김동남 주무관		044-201-1739 044-201-1740	
신청시기	정기(사업시행이전 연도말)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사업

세부사업명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예산 (백만원)	8,152				
사업목적	○ 구 농지개량조합구역 (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개량시설 설치시 농업인이 차입금으로 부담한 금액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승계하고 전액 국고에서 부담							
사업 주요내용	○ 매년 도래하는 장기채 원금 및 이자 상환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4,680	12,854	8,152	7,907			
	국 고	14,680	12,854	8,152	7,90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서은희 사무관 유소영 주무관		044-201-1852 044-201-1854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123

농지은행 지원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지은행인적역량강화사업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지은행 지원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예산 (백만원)	330				
사업목적	○ 농업농촌경쟁력제고							
사업 주요내용	○ 농지은행 지원자의 농지이용 및 관리능력 함양 교육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24조 및 제29조의2 (농어업인력의 육성 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50~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0~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32	385	385	385			
	국 고	280	330	330	330			
	자부담	52	55	55	55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백재관 사무관 이현우 주무관		044-201-1737 044-201-1738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124

농지은행사업 관리비 지급사업

세부사업명	농지은행사업관리비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지은행사업 관리비 지급			예산 (백만원)	67,314		
사업목적	○ 농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						
사업 주요내용	○ 농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사업관리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5조(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결산)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7,076	61,714	67,314	67,314		
	국 고	57,076	61,714	67,314	67,31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백재관 사무관 이현우 주무관		044-201-1737 044-201-1738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125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지이용관리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예산 (백만원)	4,318		
사업목적	○ 농지이용실태조사 효율적 실시						
사업 주요내용	○ 효율적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해 지자체 조사인력 채용경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지법」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49조제2항(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이수현사무관		044-201-1736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						

126

농지제도개선홍보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지제도개선홍보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지제도개선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181		
사업목적	○ 농지제도의 원활한 운영						
사업 주요내용	○ 농지실무 및 농지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홍보 및 법령집 발간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기금의 기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이수현사무관		044-201-1736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						

127

농지종합정보화사업

세부사업명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지종합정보화			예산 (백만원)	1,912			
사업목적	○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개선 및 국가 공간 정보와의 융·복합 활용을 통해 농지관리업무 추진 및 농지행정의 효율성 제고							
사업 주요내용	○ 농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농지정보 정비, 공간정보 DB 현행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기금의 기타사업),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 민간보조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73	1,658	1,912	2,049			
	국 고	1,773	1,658	1,912	2,04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최수아 사무관 강은영 주무관		044-201-1742 044-201-1734		
신청시기	정기(사업시행이전 연도말)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관리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촌 지하수 자원관리			예산 (백만원)	6,019			
사업목적	○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이용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 지원),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 국비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723	5,427	6,019	23,754			
	국 고	5,723	5,427	6,019	23,75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과 지하수관리부		강창엽 사무관 이관용 차장		010-8472-1101 010-3819-1057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29

농촌용수분야 국제협력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용수분야 국제협력 지원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 농촌용수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기술 홍보를 통한 국격 제고							
사업 주요내용	○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보조, 국고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0	100	100	300			
	국 고	100	100	100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과 농어촌연구원		김문석 주무관 백종현 과장		010-6660-4492 010-7252-6250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30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개발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예산 (백만원)	64,422					
사업목적	○ 기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계배분하여, 지역간, 수계간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							
사업 주요내용	○ 송수관로, 연결수로, 양수장 등 용수 연계배분에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 국비 100%							
지원한도	○ 수혜구역 50ha 이상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9,325	74,600	64,422	163,999			
	국 고	89,325	74,600	64,422	163,99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유재중 서기관 강창엽 사무관 임정근 주무관		044-201-1858 044-201-1862 044-201-1859		
신청시기	정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31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개발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예산 (백만원)	295,745		
사업목적	○ 가뭄상습지에 농업, 생활, 환경 등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 주요내용	○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필요 용수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조 내지 제11조, 제10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100%						
지원한도	○ 수혜구역 50ha 이상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0,000	274,900	295,745	3,398,600		
	국 고	300,000	274,900	295,745	3,398,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유재중 서기관 임정근 주무관		044-201-1858 044-201-1859	
신청시기	정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세부사업명	품종심사및재배시험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예산 (백만원)	24					
사업목적	○ 「대한민국우수품종상」포장재 제작을 지원하여 우수품종 홍보 및 보급 확대							
사업 주요내용	○ 「대한민국우수품종상」민간 수상자를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최근 5년간 「대한민국우수품종상」민간 수상 품종							
지원한도	○ 포장재 제작 비용의 50% 지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4	24	24	24			
	국 고	24	24	24	2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박찬웅 신승교		054-912-0160 054-912-0162		
신청시기	9월~10월			사업시행기관		국립종자원		
관련자료								

133

민간육종가 육성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품종심사및재배시험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민간육종가 육성 지원		예산 (백만원)	330				
사업목적	민간육종 활성화로 신품종 육성 저변 확대하고, 민간육종가를 대상으로 신품종 개발의 동기부여 및 육성품종의 상업화 촉진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규모가 영세한 민간육종가에게 신품종개발비·해외출원비·특수검정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품종 개발 및 상업화 촉진을 통한 육종활성화로 종자산업 발전 도모 ○ 해외연수 비용 일부 지원으로 종자 선진국의 시장 정보 수집 및 육종 기술 견학을 통하여 친 시장성을 가진 우수품종 개발 기회 부여 							
국고보조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및 제11조(중소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품종개발비 : 민간육종가, 2016.1.1.이후에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 ○ 해외출원비 : 민간육종가 및 중소기업,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2016.1.1.이후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 ○ 특수검정비 : 민간육종가, 2016.1.1.이후 육성 과정 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특수검정을 전문기관(업체)에 위탁 수행한 품종 또는 계통 ○ 교육비 : 민간육종가, 육종관련 교육이수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 해외연수비 : 민간육종가, 전공교수 및 학생(대학원생 포함), 지원 대상자가 해외연수 전 구비서류 첨부하여 선지급 신청 및 연수 후 정산금 신청 * 국립종자원장이 규정하는 민간육종가(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법인체 소속 육종가)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품종개발비 : 연간 최대 3품종까지 지원 가능(품종당 400만원) ○ 해외출원비 : 연간 최대 3품종까지 지원 가능(품종당 500만원) ○ 특수검정비 : 동일인 연간 5건까지 지원 가능(건당 50%, 50만원 한도내) ○ 교육비 : 동일인 연간 1건까지 지원 가능(25만원 한도내) ○ 해외연수비 : 연수비 50~80% 지원 가능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70	330	330	400			
	국 고	370	330	330	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박찬웅 이진성		054-912-0160 054-912-0163		
신청시기	정기(매월 25일까지, 12월 제외)			사업시행기관		국립종자원		
관련자료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세부 계획							

134

배수개선(민간)사업

세부사업명	배수개선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배수개선(민간)		예산 (백만원)	2,000				
사업목적	○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농방법, 작부체계조사, 주민의견 수렴 및 호응도조사, 하천영향분석, 사업성 및 사업효과 분석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사업 주요내용	○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농방법, 작부체계조사, 주민의견 수렴 및 호응도조사, 하천영향분석, 사업성 및 사업효과 분석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실시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지원자격 및 요건	○ 상습침수 농경지 302.7천ha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0,680	291,500	277,800	6,112,300			
	국 고	300,680	291,500	277,800	6,112,300			
* 배수개선사업(민간, 지자체) 예산합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간척지농업과		조래청 김선웅		044-201-1881 044-201-1875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35

배수개선(지자체)사업

세부사업명	배수개선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배수개선(지자체)		예산 (백만원)	275,800				
사업목적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 방지와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 설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지원자격 및 요건	○ 상습침수 농경지 302.7천ha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0,680	291,500	277,800	6,112,300			
	국 고	300,680	291,500	277,800	6,112,300			
* 배수개선사업(민간, 지자체) 예산합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간척지농업과		조래청 김선웅		044-201-1881 044-201-1875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36

비료품질관리시스템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자재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비료품질관리시스템			예산 (백만원)	75		
사업목적	○ 비료의 원료부터 생산판매까지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불법원료 사용, 부정유통 등에 대한 사전 정보관리로 비료품질 관리 강화						
사업 주요내용	○ 비료품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제14조의2(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지원조건 : 국비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	75	75	75		
	국 고	200	75	75	7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안치홍 박유천		044-201-1892 044-201-1893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물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						

13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사업명	수리시설개보수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백만원)	460,000			
사업목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노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노후수로 보수·보강과 흙수로 구조물화, 안전진단(정밀점검), 저수지 준설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공사관리 구역중 수리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결과 등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지구							
지원한도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안전진단은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 및 세부시행계획 금액 내에서 지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64,692	504,300	460,000	5,724,600			
	국 고	564,692	504,300	460,000	5,724,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한준희 사무관 강경만		044-201-1851 044-201-1860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38

수질개선 사후 모니터링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관리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수질개선 사후 모니터링 지원	예산 (백만원)	170					
사업목적	○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된 저수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설물의 적정 운영							
사업 주요내용	○ 수질개선사업 완료지구의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 연차별 정화효율검증 및 수질정화효율 향상(활용)방안 연구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별표 2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보조, 국고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0	140	170	-			
	국 고	100	140	17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과 수질환경부		이재천 사무관 김형중 차장		010-3362-8237 010-2464-8817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39

시설농업단지 지하수함양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관리	세목	자치단체자본 보조					
내역사업명	시설농업단지 지하수함양	예산 (백만원)	600					
사업목적	○ 지하수 과다 사용 등에 따라 매년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업단지의 지하수함양							
사업 주요내용	○ 지하수함양을 위한 양수정, 주입정, 송수관로, 집수 및 여과시설 등 설치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지하수법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진주시)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414	1,417	857	-			
	국 고	990	992	600	-			
	지방비	424	425	257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농업기반과 농업정책과		강창엽 사무관 전상곤 주무관		010-8472-1101 010-9305-1775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경남 진주시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40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

세부사업명	종자산업기반구축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예산 (백만원)	7,210		
사업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종자보급 체계가 미비한 품목(씨감자, 고구마종순, 약용작물 종자, 버섯종균, 육묘, 딸기종묘, 과수묘목, 화훼종묘, 녹비작물, 종묘삼, 마늘종구)에 대한 종묘 생산기반(시설·장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 및 농업인 / 국고 30~50%, 지방비 30~50%, 자부담 40%							
지원한도	○ 지원분야에 따라 2~40억원(총사업비 기준) 차등지원 (약용작물 : 20~40억, 씨감자·고구마종순·버섯종균 : 20~30억, 육묘 : 12~20억, 딸기원묘·과수묘목·화훼종묘·녹비작물 : 8~12억, 종묘삼·딸기원원묘·마늘종구·육묘 : 2~8억)							
재원구성 (%)	국고	30~50	지방비	30~5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8,167	18,214	17,303	51,911			
	국 고	8,625	7,565	7,210	21,630			
	지방비	7,170	6,665	6,344	19,034			
	자부담	2,372	3,984	3,749	11,24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종자생명산업과 시·도 친환경농업과			양미희		044-201-2481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9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41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원원종및원종생산			세목	자치단체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예산 (백만원)	5,692		
사업목적	○ 벼, 맥류, 콩, 감자 등 주요 농작물에 대하여 안정적인 보급종 생산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 벼, 콩, 보리, 밀 등 보급종 생산에 필요한 원원종 및 원종 생산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생산비를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 2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벼, 맥류, 콩, 감자 등 주요 농작물의 원원종 및 원종을 생산하는 지자체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411	4,809	5,692	-		
	국 고	4,411	4,809	5,692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이영재		054-912-0182	
신청시기	정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사업

세부사업명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예산 (백만원)	856				
사업목적	○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유기농업 체험·소비·교육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 주요내용	○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보조(국비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총사업비 180억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25	용자	-	자부담	2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0	11,600	1,712	-			
	국 고	1,000	5,800	856	-			
	지방비	1,000	5,800	856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산과		김승동 용미숙		044-201-2439 0443-220-362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청주시		
관련자료	-							

143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자재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유기농업자재 지원			예산 (백만원)	3,105			
사업목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사업 주요내용	○ 화학 비료, 농약을 절감, 대체할 수 있 유기농업 자재, 녹비작물종자, 자재원료 구입비 일부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자 ○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등							
지원한도	○ (녹비작물 종자,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980	15,525.0	15,525.0	15,525.0			
	국 고	3,196	3,105	3,105.0	3,105.0			
	지방비	4,794	4,657.5	4,657.5	4,657.5			
자부담	7,990	7,762.5	4,657.5	4,657.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서정우		044-201-2437		
신청시기	전년도 11~12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14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자재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 (백만원)	149,000	
사업목적	○ 가축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사업 주요내용	○ 유기질비료, 퇴비 등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지에 대해 지원 ○ 20kg 포대당 1,000원(800원~1,3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 - 유기질비료 : 1,300원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정액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56,000	256,000	238,400	238,400	
	국 고	160,000	160,000	149,000	149,000	
	지방비	96,000	96,000	89,400	89,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안치홍 박유천	044-201-1892 044-201-1893		
신청시기	'17.11.7~'17.12.6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관련자료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45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개발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예산 (백만원)	20,000			
사업목적	○ 북한 황강댐 담수로 인한 수위감소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체계 유지							
사업 주요내용	○ 양수장 신설, 양수장 보강 및 도수로 설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 국비 100%							
지원한도	○ 수혜구역 50ha 이상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4,000	15,000	20,000	32,200			
	국 고	14,000	15,000	20,000	32,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강창엽 사무관		044-201-1853		
신청시기	정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개발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예산 (백만원)	1,120			
사업목적	○ 제주도 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 주요내용	○ 관정, 용천수, 저수조, 급수관로 등 설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10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80%, 지방비 20%)							
지원한도	○ 수혜구역 50ha 이상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1,470	1,400	141,837			
	국 고	-	1,470	1,120	113,470			
	지방비	-	-	280	28,36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박재수 서기관 김문석 주무관		044-201-1855 044-201-1856		
신청시기	정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47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자체)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예산 (백만원)	6,213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사업 주요내용	○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친환경농 수산물 등의 생산 유통 수출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지구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중 시설·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 경과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구·단지							
지원한도	○ 친환경농업지구 : 총사업비 1~20억원 한도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단지별 총사업비 20억원 한도, 지구별 총사업비 10억원 한도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40~50	용자	-	자부담	2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1,467	25,557	20,710	23,584			
	국 고	9,440	7,667	6,213	7,075			
	지방비	15,375	12,327	10,355	11,792			
	자부담	6,652	5,563	4,142	4,71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철호 최수미		044-201-2443 044-201-2438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48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지원		예산 (백만원)	2,000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보급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친환경농업 전문 연구시설 건립 및 기자재 구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 연구를 수행하는 2년제 이상 대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한도	○ 개소당 총 사업비 100억원(국고 50%, 지방비 20~50%, 자부담 30~0%)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20~50	응자	-	자부담	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000	11,000	4,000	-			
	국 고	4,000	5,500	2,000	-			
	지방비	4,000	4,000	800	-			
자부담	-	1,500	1,2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이 태 용 최 득 수		044-201-2432 044-201-2433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		한 현 수		031-8008-5447		
신청시기	공모완료(사업자 기 선정)			사업시행기관		경기도		
관련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149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자재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토양개량제 지원				예산 (백만원)	50,830		
사업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개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							
사업 주요내용	○ 토양개량을 위한 규산질비료, 석회질 비료 공급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60, 80	지방비	40, 20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1,366	82,229	72,614	72,614			
	국 고	63,956	57,560	50,830	50,830			
	지방비	27,410	24,669	21,784	21,78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안치홍 박유천		044-201-1892 044-201-1893	
신청시기	2017.11.7.~2017.12.6				농기자재정책팀		시군구	
관련자료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50

토양개량제(제주)사업

세부사업명	토양개량제사업(제주)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토양개량제(제주)				예산 (백만원)	2,000		
사업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개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							
사업 주요내용	○ 토양개량을 위한 규산질비료, 석회질 비료 공급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 농지법 제2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751	3,281	2,857	2,857			
	국 고	3,326	2,297	2,000	2,000			
	지방비	1,425	984	857	85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안치홍 박유천		044-201-1892 044-201-1893		
신청시기	2017.11.7.~2017.12.6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관련자료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51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세부사업명	수리시설유지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유지관리		예산 (백만원)	162,232				
사업목적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 유지 관리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및 가뭄 홍수 등 국가재난 예방							
사업 주요내용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수리시설물, 용배수로 등) 유지 관리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및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29조(보조금)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63,000	154,700	162,232	145,000			
	국 고	163,000	154,700	162,232	14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서은희 사무관 유소영 주무관		044-201-1852 044-201-1854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세부사업명	한발대비용수개발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한발대비용수개발		예산 (백만원)	12,100				
사업목적	○ 가뭄취약지역에 긴급 용수대책비 지원으로 가뭄에 의한 농업피해 최소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가뭄발생지역에 용수대책비 긴급지원으로 가뭄에 의한 영농피해 최소화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80%, 지방비 2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3,125	65,625	15,125	15,625			
	국 고	42,500	52,500	12,100	12,500			
	지방비	10,625	13,125	3,025	3,12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농업기반과 각 시군구 담당과		이재천 사무관 각 시군구 담당자	010-3362-8237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53

FTA분야 교육·홍보 사업

세부사업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FTA분야 교육·홍보 사업				예산 (백만원)	2,945			
사업목적	○ FTA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일반 국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공감대 형성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공모 등을 통해 적정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의 교육홍보 사업 추진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업인등 지원센터·어업인등 지원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945	2,945	2,945	미정				
	국 고	2,945	2,945	2,945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이충녕 사무관 나원식 주무관		044-201-1721 044-201-1722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관련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rei.re.kr)								

154

경관보전직불(지자체)사업

세부사업명	경관보전직불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경관보전직불(지자체)				예산 (백만원)	9,216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형성하여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시장·군수와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후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가꾸기 등 협약사항 이행에 따른 경관보전활동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5장 농어업인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9,666	22,976	18,432	22,976		
	국 고	13,766	11,488	9,216	11,488		
	지방비	5,900	11,488	9,216	11,48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교남 주무관 고은지		044-201-1560 044-201-1561	
신청시기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관련자료	-						

155

경영이양직불금사업

세부사업명	경영이양직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경영이양직불금		예산 (백만원)	46,461			
사업목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						
사업 주요내용	○ 65~74세 농업인이 전업·후계농 등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 65세~74세 이하의 농업인 *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지원한도	○ 매도 330만원/ha/년, 임대 250만원/ha/년, 4ha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4,686	50,960	46,461	계속		
	국 고	54,686	50,960	46,461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가소득지원부		최민지 장용준		044-201-1772 061-338-5912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경영이양직불금 시행지침서 참조						

156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사업

세부사업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세목	융자금				
내역사업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예산 (백만원)	260,000				
사업목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 보장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제1항 및 제34조(기금의 용도)제1항제6호							
지원자격 및 요건	○ 매입대상자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 3천만원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경영체 ○ 매입대상농지 : 농지(전,답,과수원) 및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축사,버섯재배사)							
지원한도	○ 개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예산)	2018년(예산)	2019년 이후			
	합 계	258,438	290,000	260,00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백재관 이현우		044-201-1737 044-201-1738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관리시스템							

157

국제농기계박람회사업

세부사업명	농기계임대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국제농기계박람회			예산 (백만원)	400		
사업목적	○ 중소 농업기계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국내 농기계 우수성 해외 홍보를 통해 농기계 수출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 스마트팜 등 주요농기계·자재 전시, 국제학술심포지엄, 농기계 연시 및 체험관 운영, 중고농기계 전시 및 경매 등 -외국 농기계 회사 및 바이어 초청 국내 농업기계 홍보 및 수출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대한민국 국제농기계박람회 개최 비용 4억원(총 행사비의 16.7%)						
지원한도	○ 4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정액 (4억원)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00	-	400	800		
	국 고	400	-	400	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자재정책팀 수출전시팀		최승묵 이연하		044-201-1840 041-411-213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기계공업협 동조합	
관련자료							

노후농기계대체사업

세부사업명	농기계임대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노후농기계대체		예산 (백만원)	5,000				
사업목적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신형농업기계로 대체 지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를 신형 발농업기계로 교체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군구 임대사업소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비용 지원 2억원(국고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1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2,000	10,000	30,000			
	국 고	-	1,000	5,000	15,000			
	지방비	-	1,000	5,000	1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기자재정책팀 농정과		최승묵 농기계담당		044-201-1840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11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59

농기계임대사업소

세부사업명	농기계임대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기계임대사업소	예산 (백만원)	16,000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발농업 기계화율 제고							
사업 주요내용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보관창고 설치 및 임대농업기계 구입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임대사업소 신규설치 또는 증설 시군구 임대사업소 설치 개소당 10억 내외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400~800백만원(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2,000	42,000	32,000	160,000			
	국 고	21,000	21,000	16,000	80,000			
	지방비	21,000	21,000	16,000	80,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기자재정책팀 농정과		최승묵 농기계담당		044-201-1840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11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60

농업인 부채상환인센티브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인 부채상환인센티브			예산 (백만원)	335			
사업목적	○ 농가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채대책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또는 1년이상 조기 상환한 경우에 이자액의 일부(40%)를 환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383호) 제1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정액보조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정액보조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17	396	335	계속			
	이차보전	517	396	335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은행		농업금융정책과 농식품금융부		이성준 사무관 김기훈 팀 장		044-201-1752 02-2080-758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협은행		
관련자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161

농업재해대책비(지자체)사업

세부사업명	재해대책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재해대책비(지자체)	예산 (백만원)	27,000					
사업목적	○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자연재난으로 인해 저수지 등 농업분야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자체에 피해 복구비를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분야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지자체 ○ 지원조건 : (국가관리시설) 국비 100%, (지방관리시설) 국비 50, 지방비 50, (농어촌공사관리시설)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한도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정병석 안준영		044-201-1794 044-201-1795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재해보험		세목	민간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예산 (백만원)	252,148				
사업목적	○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보험제도로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사업 주요내용	○ 보험대상 농작물(축산물)을 경작(양축)하는 농가의 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려는 농가 혹은 법인(국고50%)							
지원한도	○ 보험료 50%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20,323	520,690	502,907	미정			
	국 고	286,885	286,995	252,148	미정			
	자부담	233,438	233,695	250,759	미정			
* 2017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 지원(국고 100%) 포함								
* 자부담은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 위해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20~3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오재협 이병길		044-201-1728 044-201-1793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재해보험사업자		
관련자료								

163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정책자금관리				예산 (백만원)	6,577			
사업목적	○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재해보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농업정책자금관리·농업재해보험사업·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위탁관리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의2								
지원자격 및 요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출연 또는 보조								
지원한도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609	2,760	6,577	6,577				
	국 고	2,609	2,760	6,577	6,57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원팀			이승원 사무관 최화진 주무관		044-201-1764 044-201-1765		
신청시기	매분기				사업시행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련자료	-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세목	민간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예산 (백만원)	50,962			
사업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의 공익적 기능 강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 운영비(국고 100%)								
지원한도	○ 운영비 100% 지원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50,962	계속				
	국 고	-	-	50,962	계속				
* 2018년 신규사업(2017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 지원에 포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오재협 이병길		044-201-1728 044-201-1793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NH농협손해보험		
관련자료									

165

농지연금(용자)사업

세부사업명	농지연금(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농지연금(용자)		예산 (백만원)	92,314				
사업목적	○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							
사업 주요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용자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9,808	66,300	92,314	93,382			
	국 고	49,808	66,300	92,314	93,38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최수아 사무관 강은영 주무관		044-201-1742 044-201-1734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166

맞춤형농지지원(용자)사업

세부사업명	맞춤형농지지원(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맞춤형농지지원(용자)		예산 (백만원)	388,300				
사업목적	○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은퇴)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사업 주요내용	○ 농지의 매매, 임대, 교환분합 지원 * 기존 농지규모화사업과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통합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 합법) 및 제24조의2(농지의 매입, 매도 등), 제34조(기금의용도)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농지매입비축(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각시 상환) - 농지매매용 : 금리 1%, 11~30년간 분할상환 - 임차, 임대용 : 무이자, 5~10년 임대기간 동안 분할상환 - 교환분합 : 금리 1%, 10년 분할상환							
지원한도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개인 10ha, 법인 20ha 등 *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 지원한도 상이 - 농지매매 : 35천원/3.3m ² (생애첫농지취득자금지원 100ha, 45천원/3.3m ²) - 장기임대차 : 관행 임대차료 수준 지원 - 교환분합 : 교환분합 농지 가격차액 지원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예산)	2018년(예산)	2019년 이후			
	맞춤형농지지원사업	299,371	334,300	388,300	계속			
	-농지매입비축	148,597	180,000	254,000	계속			
	-농지매매용	113,991	63,500	63,500	계속			
	-임차임대용	36,391	90,000	70,000	계속			
-교환분합	392	800	80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백재관 이현우		044-201-1737 044-201-1738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관리시스템							

167

발농업직불금사업

세부사업명	발농업직불제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발농업직불금		예산 (백만원)	193,103				
사업목적	○ 발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발작물의 자급률 제고							
사업주요내용	○ (발고정) '12~'14년 기간동안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 (논이모작)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논에서 동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국고보조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 (발고정) '12~'14년 기간동안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논이모작)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논에서 동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							
지원한도	○ (발고정) 농업인 40,000m ²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100,000m ² ○ (논이모작) 농업인 300,000m ²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500,000m ² ,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0,000m ²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221	179,038	193,103	계속			
	국 고	200,221	179,038	193,103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김영민 정광호		044-201-1778 044-201-1779		
신청시기	매년 2월~4월(논이모작은 2월~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발농업직불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사업

세부사업명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예산 (백만원)	809,000			
사업목적	○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사업 주요내용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지급단가: '17년 평균 100만원/ha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100%							
지원한도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들녘경영체 400ha)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24,000	816,000	809,000	계속			
	국 고	824,000	816,000	809,00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박춘근 손효림		044-201-1776 044-201-1777		
신청시기	2월~4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69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사업관리비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예산 (백만원)	7,370					
사업목적	○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비 지원							
사업주요내용	○ 지자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신청·접수 및 지급대상자 선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 지원							
국고보조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치단체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987	4,987	7,370	계속			
	국 고	4,987	4,987	7,37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박춘근 김영민		044-201-1776 044-201-1778		
신청시기	해당없음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쌀직불금 현장점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사업

세부사업명	사업관리비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쌀직불금 현장점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예산 (백만원)	361				
사업목적	○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사업 주요내용	○ (현장점검시스템) 이행점검 수행을 위한 모바일 현장점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비 보조 ○ (상담지원센터) 직불제 시스템 관련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 (조건불리지역DB) 조건불리지역 선정 및 관련 DB 관리를 위한 운영비 보조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지원한도	○ 사업비 내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72	361	계속			
	국 고	-	72	361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박춘근 김영민		044-201-1776 044-201-1778		
신청시기	해당없음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171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기계임대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예산 (백만원)	3,000					
사업목적	○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되었거나,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여성친화형 임대농업기계 구입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시군구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비 100백만원 내외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5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000	6,000	6,000	30,000			
	국 고	3,000	3,000	3,000	15,000			
	지방비	3,000	3,000	3,000	1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기자재정책팀 농정과		최승묵 농기계담당		044-201-1840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11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재해대책비(용자)사업

세부사업명	재해대책비(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재해대책비(용자)		예산 (백만원)	28,500				
사업목적	○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농업분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복구비의 일부를 용자금으로 지원하여 피해농가의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도모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분야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농가 ○ 지원조건 : 복구지원 항목에 따라 30~70%(금리 1.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한도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정병석 안준영		044-201-1794 044-201-1795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관련자료								

173

조건불리직불금사업

세부사업명	조건불리지역직불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조건불리직불금		예산 (백만원)	50,560				
사업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마을에 거주하면서 '03년~'05년 기간동안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관리된 토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초지를 이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마을에 거주하면서 '03년~'05년 기간동안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관리된 토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초지를 이용·관리하는 농업인등							
지원한도	○ (농업인) 밭 40,000㎡, 논·초지 각각 300,000㎡ ○ (농업법인) 밭 100,000㎡, 논·초지 각각 500,000㎡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9,170	58,795	63,160	계속			
	국 고	38,635	47,220	50,560	계속			
	지방비	9,659	11,575	12,60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김영민 정광호		044-201-1778 044-201-1779		
신청시기	매년 2월~4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조건불리직불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74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기계임대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예산 (백만원)	3,000	
사업목적	○ 주요 주산지지역의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마늘, 양파, 콩 등 10개 품목의 파종(정식)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 구입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시군구 주요밭작물 5ha 이상 집적화 주산지에 임대 농기계 구입비 지원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1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000	4,000	6,000	42,000		
	국 고	2,000	2,000	3,000	21,000		
	지방비	2,000	2,000	3,000	2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기자재정책팀 농정과		최승묵 농기계담당		044-201-1840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11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75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예산 (백만원)	26,392			
사업목적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 직불금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속지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제2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논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 밭 : <과수>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채소특작기타>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 유기지속직불 : (논) 350천원/ha, (밭) <과수>700천원/ha, <채소특작기타>65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5,893	23,943	26,392	계속			
	국 고	25,893	23,943	26,392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친환경농업과 시군구 담당과		이 태 용 최 득 수 담 당 자		044-201-2432 044-201-2433		
신청시기	정기(3.1~3.31)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176

폐업지원사업

세부사업명	폐업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폐업지원			예산 (백만원)	102,717			
사업목적	○ FTA이행으로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등에 폐업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해당산업의 구조조정도모							
사업 주요내용	○ 폐업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에 대해 폐업을 신청한 농업인 등에 폐업지원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 보조(국고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나원식		044-201-1720		
신청시기	5~7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폐업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5월경 지원대상 품목 고시 이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							

177

피해보전직불사업

세부사업명	피해보전직불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피해보전직불			예산 (백만원)	100,478			
사업목적	○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발생한 피해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사업 주요내용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 보조(국고 100%)							
지원한도	○ 법인은 50백만원, 개인은 35백만원 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나원식		044-201-1720		
신청시기	5~7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피해보전직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5월경 지원대상 품목 고시 이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							

178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불사업 운영비사업

세부사업명	경영이양직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불사업 운영비	예산 (백만원)	3,201					
사업목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사업 운영							
사업 주요내용	○ 인건비, 경비, 홍보·교육비 등 경영이양직불사업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653	3,557	3,201	계속			
	국 고	2,653	3,557	3,201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가소득지원부		최민지 장용준		044-201-1772 061-338-5912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							

179

농경지 중금속 오염실태조사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안전성조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경지 중금속 오염실태조사	예산 (백만원)	1,260					
사업목적	○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중금속)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물 생산의 기반이 되는 토양·용수에 대한 관리							
사업 주요내용	○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토양정밀조사지침 중 정밀조사,개황조사 기준준용 - (개황조사) 오염우려지역의 개략적인 오염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 (정밀조사) 개황조사 결과 오염 확인지역에 대하여 정확한 오염정도, 오염필지 확인을 위한 조사 * 분석항목: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중금속 6항목(Cd,Cu,Pb,As,Zn,Ni)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농지소유자)/국고보조 100%							
지원한도	○ 오염우려지역 주변 농경지 관리사업 : 49지구 - 휴폐금속 광산 주변 농경지 관리 : 22지구 - 기타오염우려지역 주변 농경지 관리 : 27지구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260	1,260	1,260	계속			
	국 고	1,260	1,260	1,26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소비안전과 지하수지질처		박영석 장기영		010-9162-2458 010-2496-2588		
신청시기	정기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www.safeqin.go.kr)							

180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원산지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원		예산 (백만원)	399				
사업목적	○ 농식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 강화							
사업 주요내용	○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명예감시원 교육훈련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99	399	399	계속			
	국 고	399	399	399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이상욱 김학우		054-429-4152 054-429-4154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각 시도 명예감시원 소속단체		
관련자료								

181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원산지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지원				예산 (백만원)	153			
사업목적	○ 원산지 표시 위반자 대상 재위반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사업 주요내용	○ 원산지 표시 위반자 집합 및 온라인 의무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및 전산 시스템 개발, 기타 운영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 육)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 반자 교육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3		153		계속			
	국 고	153		153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김병천 정현		054-429-4162 054-429-4163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원산지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 지원		예산 (백만원)	381				
사업목적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 단체의 자율적인 지도·홍보를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음식점 영업자 단체 소속 자율감시원의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활동수당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원산지 표시)							
지원자격 및 요건	○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의 단체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81	381	381	계속			
	국 고	381	381	381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이상욱 김학우		054-429-4152 054-429-4154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음식점 영업자 단체		
관련자료								

183

지리적표시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원산지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지리적표시 활성화 지원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의 내실화를 통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컨설팅, 홍보 및 유통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및 제110조(자금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 또는 한국 지리적표시 특산물 연합회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50	250	100	100			
	국 고	250	250	100	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김병천 김영환		054-429-4162 054-429-4164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한국지리적특산물 연합회		
관련자료								

세부사업명	국제기구분담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FAO한국협회 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593				
사업목적	○ FAO 국제회의 대응 및 통상현안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 지원							
사업 주요내용	○ FAO 주관 국제회의 의제 분석, 발언자료 정리, 논의동향 수집·분석 업무 지원 및 국제기구와 외국의 농업정책 관련 보고서 및 통계자료 등 발간 보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분야의 국제협력) ○ 농산장려보조금 교부규칙(대통령령 제5178호, 1970.7.9)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보조 8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80% 이내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03	543	593	600			
	국 고	603	543	593	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안완기 안창석		044-201-2032 044-201-2033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FAO한국협회		
관련자료								

185

FTA해외정보조사사업

세부사업명	농업협상대응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FTA해외정보조사사업		예산 (백만원)	120				
사업목적	○ 주요 FTA 협상 대상국에 대한 수출입 등 기초 통계조사, 주요 품목별 생산 및 수급동향 조사를 실시하여 DB구축. 이를 통하여 FTA 협상 지원							
사업 주요내용	○ FTA 기 체결국가미 신규추진 대상 국가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및 수출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분석 실시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제56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제5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보조(보조율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30	120	120	120			
	국 고	130	120	120	1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이진		044-201-2062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OECD 농촌 컨퍼런스 개최사업

세부사업명	농업협상대응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OECD 농촌 컨퍼런스 개최		예산 (백만원)	182				
사업목적	○ 한국 최초의 OECD 농촌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국제 위상제고와 농촌 및 발전에 기여 ※ (경위)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로부터 `농촌컨퍼런스의 한국 개최를 요청받음							
사업 주요내용	○ 34개 OECD 회원국 및 중국 등 비회원국 장·차관급 참가, 농촌정책분야 정책 발전 논의, 사례 및 경험 공유 등 ○ 초청인사 및 OECD 사무국 항공 및 숙박료, 회의장 임차, 참석자 식사대, 회의 진행경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제11조의 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2018년 단일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장재균		044-201-1518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세부사업명	국제농업협력(ODA)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개도국 농업발전 기획협력사업				예산 (백만원)	14,387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해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에 기여 ○ 협력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호혜적 협력기반 구축으로 우리 농림축산식품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물적 지원이 결합된 장기 프로젝트 방식으로 기획협력사업, 컨설팅사업 및 다자성 양자(Multi-bi) 추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855	13,438	14,387	15,826			
	국 고	10,855	13,438	14,387	15,82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배태현		044-201-2039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							

개도국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세부사업명	국제농업협력(ODA)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개도국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백만원)	900				
사업목적	○ 국가별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NAIS) 구축 및 식량안보 분야 전문 인력 육성 등을 통해 아세안+3 지역 식량안보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① 농업 유통 통계정보(재고·가격·수출입 등) 수집을 위한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NAIS) 고도화 및 국가별 액션플랜 수립, ② 모바일 기반 농업통계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및 국별 현지화, ③ 아세안 ICT 인적역량 개발을 통한 식량안보에 관한 정책적 역량 배양 및 시스템 활용능력 제고(연 2회, 관리자급·실무자급 각 1회)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00	300	900	1,400			
	국 고	600	300	900	1,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정세희	044-201-2047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							

189

국제통상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협상대응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국제통상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417			
사업목적	○ DDA/FTA 협상 등 통상현안 및 국제협력 업무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농업통상 관련 워크숍 등 국제회의 개최 지원, OECD, WTO 등 통상 관련 연구용역 추진, 농업인 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및 DDA/FTA 협상 진행 홍보를 위한 지역별 설명회, 전문가포럼, 간담회 등 개최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제56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제5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보조(보조율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23	917	417	417				
	국 고	923	917	417	41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제협력총괄과 국제통상협력실			안완기 전우석		044-201-2032 044-861-8871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190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예산 (백만원)	2,898			
사업목적	○ 우리 농산업을의 외연확장 및 비상시 대비 안정적인 해외식량확보							
사업 주요내용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환경조사, 인력양성, 정보제공 및 진출기업의 현지 정착·안정화 촉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보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보조 : 100%(단, 민간환경조사 지원은 70%이내)							
지원한도	○ 국고보조 100%(단, 민간환경조사 지원은 70% 이내)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598	2,598	2,898	7,107			
	국 고	2,598	2,598	2,898	7,10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주정제 이호진		044-201-2040 044-201-2041		
신청시기	수시(사업시행기관 별도 공고)			사업시행기관		-		
관련자료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oads.or.kr)							

191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

세부사업명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		세목	융자금				
내역사업명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		예산 (백만원)	12,600				
사업목적	○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장 및 비상시 대비 안정적인 해외식량 확보							
사업 주요내용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환경조사, 인력양성, 정보제공 및 진출기업의 현지 정착·안정화 촉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보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지원한도	○ 융자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2,600	12,600	12,600	32,100			
	용 자	12,600	12,600	12,600	32,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주정제 이호진		044-201-2040 044-201-204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		
관련자료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oads.or.kr)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초청연수사업

세부사업명	국제농업협력(ODA)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초청연수사업		예산 (백만원)	155				
사업목적	○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연수를 위한 2개 사업 추진							
사업 주요내용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축산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축산물 생산 증대 및 유통 체계 개선 특화 연수(10~15명)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5	155	155	260			
	국 고	155	155	155	2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배태현	044-201-2039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 관리평가원			
관련자료	-							

193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세목	정부출연금		
내역사업명					예산 (백만원)	176,882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Golden Seed Project,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농축산물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항에 명시한 기관 : 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기업							
지원한도	○ 각 사업별 예산 범위 내(사업 공고 및 RFP 명시)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8,118	169,586	176,882	483,965			
	국 고	178,118	169,586	176,882	483,965			
* 19년~21년 계획 예산 합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안형근 유정연		044-201-2457 044-201-246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중자생명산업과 식품산업정책과 농생명·ARC사업실 식품사업실 첨단·가축질병사업팀 수출·사업화팀 GSP사업운영실			양미희 정찬민 류명선 김혜리 채명희 김민석 김동현		044-201-2481 044-201-2121 031-420-6762 031-420-6775 031-420-6782 031-420-6793 031-420-6883	
신청시기	정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관련자료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대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							

신기술시범 사업

세부사업명	신기술보급사업(보조)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신기술시범		예산 (백만원)	35,453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사업비 지원으로 새로운 농사기술의 신속한 확산 ○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농가에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 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R&D 사업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특성화 사업 기반조성 ○ 안전 농축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기술시범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 ○ 농산물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 17조, 「농촌진흥법」 제25조2항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단체, 마을 등 - 개발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 지원 							
지원한도	○ 시군별 사업물량 및 사업별 기본 금액에 따라 배정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5,586	79,090	72,086	72,086			
	국 고	38,363	40,115	36,633	36,633			
	지방비	37,223	38,975	35,453	35,45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창수		063-238-097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4.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신기술시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95

농업현안해결 기술지원

세부사업명	신기술보급사업(보조)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업현안해결기술지원				예산 (백만원)	3,040		
사업목적	○ 우수한 신기술의 확대보급으로 농업현장의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계화된 종합기술 투입으로 신기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							
사업 주요내용	○ (우수기술 확산시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 기술확산을 요하는 우수기술의 현장 확산을 지원 ○ (현안해결 종합기술시범) 쌀 수급안정, AI등 시급한 농업현장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관련된 우수 농업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 17조, 「농촌진흥법」 제25조2항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단체, 마을 등 - 개발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 지원							
지원한도	○ 시군별 사업물량 및 사업별 기본 금액에 따라 배정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6,080	6,080			
	국 고	-	-	3,040	3,040			
	지방비	-	-	3,040	3,0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창수		063-238-097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4.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업현안해결기술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96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예산 (백만원)	1,442				
사업목적	○ 농업현장 스마트팜 기술 교육과 현장 확산을 위한 교육장 구축으로 지속적 인 농산업화를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시설) 스마트팜 온실 및 원격제어시스템, 교육용 키트, 키오스크(DID) 등 ○ (노지) 스마트 관수시설, 토양환경측정장치, 무인해충예찰시스템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17조, 「농촌진흥법」 제25조2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한도	○ 시군별 사업물량 및 사업별 기본 금액에 따라 배정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2,942	2,942			
	국 고	-	-	1,500	1,500			
	지방비	-	-	1,442	1,44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창수		063-238-097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4.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 교육장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Ⅲ. 식량분야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RPC 경영평가(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			예산 (백만원)	390			
사업목적	○ RPC의 농가단위 조직화, 관내 벼 매입 등 지역 쌀 산업을 위한 역할 수행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							
사업 주요내용	○ RPC 쌀산업 기여도평가							
국고보조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390	미정			
	국 고	-	-	390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황인준		044-201-1838 044-201-1839		
신청시기	해당없음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관련자료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세부사업명	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RPC 교육·홍보·컨설팅			예산 (백만원)	180			
사업목적	○ 통합 규모화된 거점 RPC 중심으로 대표브랜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 농가 교육홍보 지원, 브랜드 쌀 홍보, 컨설팅 비용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총 사업비 2억원을 4년간 균분지원(연간 총사업비 50백만원)							
지원한도	○ 2억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00	700	600	미정			
	국 고	210	210	180	미정			
	지방비	210	210	180	미정			
	자부담	280	280	240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황인준		044-201-1838 044-201-1839		
신청시기	해당없음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199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세부사업명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고품질쌀 브랜드육성(가공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4,500		
사업목적	○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사업 주요내용	○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도정)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기준사업비 30억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감 가능							
지원한도	○ 사업비 심의에 따라 차등지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40	용자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000	15,000	15,000	미정			
	국 고	4,500	4,500	4,500	미정			
	지방비	4,500	4,500	4,500	미정			
	자부담	6,000	6,000	6,000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사무관 황인준 주무관		044-201-1838 044-201-183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			- -		061-931-1030 061-931-1035	
신청시기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00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예산 (백만원)	1,000			
사업목적	○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조직화 및 공동경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50ha 이상 들녘의 농가 조직화 및 공동영농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원한도	○ 공동영농면적에 따라 4천만원 이내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용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0	2,000	2,000	미정			
	국 고	1,000	1,000	1,000	미정			
	지방비	800	800	800	미정			
	자부담	200	200	200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박춘민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01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들녘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지원				예산 (백만원)	6,800		
사업목적	○ 들녘경영체의 일반 벼 중심의 소득구조 다원화 및 참여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논 이용의 다양화, 생산된 쌀·타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논 이용의 다양화, 쌀·타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사업기간 2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들녘경영체육성(교육·컨설팅 지원) 1회 이상 사업을 추진한 우수 들녘경영체							
지원한도	○ 사업기간 2년, 10억원 이내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40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3,200	14,000	17,000	미정			
	국 고	5,280	5,600	6,800	미정			
	지방비	5,280	5,600	6,800	미정			
	자부담	2,640	2,800	3,400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박춘민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202

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들녘경영체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 지원			예산 (백만원)	736			
사업목적	○ 쌀 농정 및 쌀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쌀 선도경영체의 역량 향상을 통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활로 모색							
사업 주요내용	○ 쌀전업농, RPC 임직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약 1,000명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쌀전업농, RPC임직원, 농업경영체 등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용자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609	1,379	1,246	미정			
	국 고	824	804	736	미정			
	자부담	785	575	510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송재원 유미애		044-201-1832 044-201-183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재양성본부		조민욱		044-861-8839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203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세목	용자				
내역사업명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50,0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소비량이 감소되는 쌀에 대한 소비를 촉진함으로 쌀 산업보호 ○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지원으로 쌀 소비 확대 및 정부관리양곡 품질 향상 도모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등 용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가공업체(일반)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이상인 업체 ○ 쌀가공업체(신규) :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라도, 사업 등록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 1년 이상 영위하였으나 쌀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2018.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 							
지원한도	○ 지원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 (쌀가공업체 50억원 이내,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업체 15억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80~100	자부담	0~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00	50,000	50,000	50,000			
	용 자	50,000	50,000	50,000	50,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쌀가공) 식량정책과(정부양곡)		임수현 장 미		044-201-1843 044-201-1820		
신청시기	정기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세부사업명	대단위농업개발(농지)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간척농지 실태조사 지원		예산 (백만원)	5,676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척지의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간척지 활용 극대화 ○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간척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 극대화 방안 제시 							
사업 주요내용	○ 간척농지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13,418ha) 및 영농편의 지원(10,272ha)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시설관리자)							
지원한도	○ 농지조성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개발비(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내부개발 소요 총사업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396	5,676	5,676	계속			
	국 고	1,396	5,676	5,676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간척지농업과 대단위간척처		이행우 이을출		044-201-1879 061-338-5383		
신청시기	연중,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지침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205

논타작물재배지원(생산조정제)사업

세부사업명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예산 (백만원)	136,000			
사업목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사업 주요내용	○ 50,000ha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지원자격 및 요건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최소 1,000㎡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지원한도	○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면적·단가) 조사료 15천ha(400만원/ha), 두류 15(280), 일반작물 20(340) * 사도별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평균단가 340만원/ha)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단,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필요) - (지원금액) 170,000백만원(50천ha×340만원)							
재원구성(%)	국고	8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170,000	미정			
	국 고	-	-	136,000	미정			
	지방비	-	-	34,000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 송재원		044-201-18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 장 박은엽 사무관 최동철		054-429-4071 054-429-4077			
신청시기	정기(당해년도 2.28.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논타작물재배지원(생산조정제) 시행지침서 참조							

206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사업

세부사업명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			예산 (백만원)	39,0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기설치된 저수지 및 방조제의 시설물(물넘이, 제체, 배수갑문) 보강을 통해 홍수배제능력 향상 및 재해예방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의거 사업준공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 제체신설 및 방수로확장 등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홍수 예·경보 시스템 ○ 이동저수지: 물넘이 및 방수로 확장 ○ 불갑저수지: 보조여수로 설치, 방수로 터널, 수로암거 ○ 사후환경영향조사: 11개지구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조~제9조, 제16조, 제18조, 제108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시설관리자)							
지원한도	○ 농지조성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개발비(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내부개발 소요 총사업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242	28,400	39,000	164,434			
	국 고	30,242	28,400	39,000	164,43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간척지농업과 대단위간척처		김성률 정현경		044-201-1879 061-338-5383		
신청시기	연중,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 시행지침서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207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예산 (백만원)	2,500				
사업목적	○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조직화 및 공동경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							
사업 주요내용	○ 50ha 이상 들녘의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동육묘장·방제기 등 생산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들녘경영체육성(교육·컨설팅 지원) 1회 이상 사업을 추진한 들녘경영체							
지원한도	○ 공동영농면적에 따라 4억원 이내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용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000	7,000	5,000	미정			
	국 고	3,500	3,500	2,500	미정			
	지방비	2,800	2,800	2,000	미정			
	자부담	700	700	500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박춘민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08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예산 (백만원)	9,480		
사업목적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사업 주요내용	○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감리 등 산물 벼 건조저장 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통합 RPC :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 일반 RPC : 국고 30%, 지방비 10, 자부담 60 저온저장고 :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 통합RPC 9억원, 일반RPC 6억원, 저온저장고 3억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감 가능							
지원한도	○ 사업비 심의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재원구성 (%)	국고	30□50	지방비	10	용자		자부담	60□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2,800	22,800	21,000	미정			
	국 고	9,990	9,990	9,480	미정			
	지방비	2,280	2,280	2,100	미정			
	자부담	10,530	10,530	9,420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사무관 황인준 주무관		044-201-1838 044-201-183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			- -		061-931-1030 061-931-1035	
신청시기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209

조성토지관리처분비(민간)사업

세부사업명	조성토지관리 처분비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조성토지관리처분비(민간)		예산 (백만원)	2,240				
사업목적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임대, 매각, 매각대금징수관리 제비용 등을 지원하여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관리 도모							
사업 주요내용	○ 24개소 22,846ha(임대 및 매각대금징수 22, 일시사용2)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령」 제31조, 「매립지등의 관리·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3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지원한도	○ 관리처분된 매립지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676	1,912	2,240	계속			
	국 고	2,676	1,912	2,24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간척지농업과 기금관리처		이행우 정경자		044-201-1877 061-338-5973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210

조성토지관리처분비(지자체)사업

세부사업명	조성토지관리 처분비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조성토지관리처분비(지자체)			예산 (백만원)	77			
사업목적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임대, 매각, 매각대금징수관리 제비용 등을 지원하여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관리 도모							
사업 주요내용	○ 9개소 2,462ha(임대및매각대금징수 6, 일시사용1, 임시사용2))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1조, 「매립지등의 관리·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3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지원한도	○ 관리처분된 매립지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136	97	77	계속			
	국 고	10,136	97	77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간척지농업과 기금관리처		이행우 정경자		044-201-1877 061-338-5973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전라남도		
관련자료								

211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쌀소비활성화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			예산 (백만원)	400			
사업목적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쌀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가 가능한 플랫폼 지원을 통해 쌀 소비							
사업 주요내용	○ 쌀 관련 제품 판매, 홍보, 소비자 반응 테스트 등을 통해 쌀 가공제품 인지도 제고 및 수요 창출							
국고보조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6조(용자 및 보조),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자격 및 요건	○ 쌀 관련 제품, 요리의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지원한도	○ 1개소당 최대 2억원(국비 1억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400	400	계속			
	국 고	-	400	40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서지예 임수현		044-201-1842 044-201-1843		
신청시기	별도통보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212

쌀소비활성화 사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쌀소비활성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쌀소비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 (백만원)	6,000		
사업목적	○ 지속적인 쌀 소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홍보,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쌀·쌀 가공식품 인지도 및 국민건강 제고						
사업 주요내용	○ 미래세대 대상 쌀 중심 식습관 학교 운영, 대중매체 활용 쌀에 대한 영양학적 정보 제공 등 가치 확산, 쌀 가공식품 개발·유통망 확충 등을 통한 실질적인 쌀 소비와의 연계 사업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6조(용자 및 보조),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자격 및 요건	○ 쌀 생산자 및 소비자 등 대국민 대상 홍보 사업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000	6,000	6,000	계속		
	국 고	6,000	6,000	6,00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서지예		044-201-1842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213

양곡류 해외시장 동향(수급, 가격 등) 조사사업

세부사업명	수입양곡대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양곡류 해외시장 동향(수급, 가격 등) 조사		예산 (백만원)	400				
사업목적	○ 주요 수출국의 수급, 수출입동향, 수출가능가격 등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세액심사 및 정부의 쌀 정책 수립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주요 쌀 수출국 정보조사, 사전세액 심사 관련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국제 곡물정보분석 협의회 운영, 국내외 곡물 모니터 실시, 주요곡물 이슈 조사 및 DB 구축 및 관리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곡물수입 관련 단체, 업계 및 곡물 수급 상황 관련 연구기관 등 / 보조 100%(보조사업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00	400	400	400			
	국 고	400	400	400	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양지연 류성훈		010-2279-0995 010-6358-8591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							

214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지자체)사업

세부사업명	정부양곡관리비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지자체)			예산 (백만원)	1,162			
사업목적	○ 정부관리양곡의 보관, 가공, 운송 등 양곡관리							
사업 주요내용	○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미곡, 수입쌀)의 보관, 가공, 운송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자체 경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시도, 시군) 국고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62	1,162	1,162	1,162			
	국 고	1,162	1,162	1,162	1,16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최경철 강경미		010-5398-6059 010-9840-1258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관련자료	-							

IV. 축산분야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15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분보조				
내역사업명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예산 (백만원)	3,200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 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자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자(2020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함(한우, 젓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6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600	3,200	3,200	3,200			
	국 고	3,600	3,200	3,200	3,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16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		예산 (백만원)	182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공급 시설의 경우 동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조직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60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02	702	182	182			
	국 고	702	702	182	18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17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예산 (백만원)	3,630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 시설 등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업 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자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자(2020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 하여야함(한우, 젖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6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426	2,940	3,630	3,630			
	국 고	3,426	2,940	3,630	3,63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18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예산 (백만원)	7,934		
사업목적	○ 가축분뇨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여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친환경 축산 체계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속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이종지원으로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 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함(한우, 젓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속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전문유통주체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744	7,934	7,934	7,934			
	국 고	7,744	7,934	7,934	7,93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19

가축분뇨처리지원(용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용자)				예산 (백만원)	55,710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퇴비·액비·정화 등 시설·기계·장비 지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자금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자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자(2020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함(한우, 젓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 생산·이용 등을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전문유통주체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등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20~50	지방비	20~50	용자	20~7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8,592	65,822	55,710	55,710			
	국 고	98,592	65,822	55,710	55,7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1,800			
사업목적	○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 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등급판정 및 위생·안전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신축 또는 시설보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하려는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조합 또는 법인							
지원한도	○ 기준사업비 - 신규 시설 : 최소 60억원 ~ 100억원 - 시설 보완 : 최소 10억원 ~ 30억원 ※ 총 사업비의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자부담하고,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 계획량, 원료조달 능력, 지자체의 육성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6,000	154,000			
	국 고	-	-	1,800	46,200			
	지방비	-	-	1,800	46,200			
자부담	-	-	2,400	61,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상훈 주무관 유해리		044-201-2338 044-201-2339			
축산물품질평가원 시도·시군구	평가관리처 축산담당(가금,계란)		송중호 사무분장에 따름		044-410-706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계란GP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21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 (백만원)	1,600				
사업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 주요내용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 발전기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어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 생산·이용 등을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전문유통주체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등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83	1,800	1,600	1,600			
	국 고	683	1,800	1,600	1,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		예산 (백만원)	3,500				
사업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 주요내용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 생산·이용 등을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전문유통주체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등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250	8,750	3,500	3,500			
	국 고	5,250	8,750	3,500	3,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별도시행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23

공동자원화 퇴액비 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공동자원화 퇴액비 시설장비 지원			예산 (백만원)	1,800		
사업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 주요내용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사·도(시군) 중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 생산·이용 등을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전문유통주체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등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119	2,400	1,800	1,800		
	국 고	10,119	2,400	1,800	1,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별도시행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예산 (백만원)	2,100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등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자(2020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함(한우, 젖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60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353	2,353	2,100	2,100		
	국 고	2,353	2,353	2,100	2,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별도시행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25

말산업육성지원(용자)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용자)				예산 (백만원)	1,950		
사업목적	○ 말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승마저변 확대							
사업 주요내용	○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지원자격 및 요건	○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 마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자 ○ 기존의 승마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50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용 자	3,340	3,340	1,950	1,9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한병윤		044-201-2325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								

사료산업종합지원(용자)사업

세부사업명	사료산업종합지원(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사료원료구매자금,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예산 (백만원)	56,8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분리 및 사료수출 활성화 등 개보수비 지원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도모 							
사업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마·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 사료제조시설개보수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국고보조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 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원료구매자금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TMR사료제조업체가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18년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중 조사료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사업에 신청토록 적극 유도 ○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사료수출 및 품질고급화 등 생산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70~80	자부담	2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93,000	71,240	71,240	55,800			
	국 고	93,000	71,240	71,240	55,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양재욱 주무관		044-201-2360	
신청시기	연중 3회(2월, 7월, 11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도사료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사료품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세부사업명	사료산업종합지원(용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사료품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백만원)	157			
사업목적	○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시스템 유지운영, 정보시스템교육, 권역별 설명회, 시스템 운영매뉴얼 제작 배포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 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 운영							
지원한도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	-	157	-			
	국 고	-	-	157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양재욱		044-201-2360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구입 지원			예산 (백만원)	150			
사업목적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							
사업 주요내용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지원한도	○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재원구성 (%)	국고	1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3,000	3,000	1,500	1,500			
	국 고	300	300	150	150			
	지방비	900	900	450	450			
	용 자	900	900	450	450			
	자부담	900	900	450	4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최종범		044-201-2353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산지생태목장조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29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예산 (백만원)	660				
사업목적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							
사업 주요내용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지원한도	○ 초지조성은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신규조성은 7,137천원, 보완조성은 2,122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5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2,200	2,030	1,320	1,320			
	국 고	1,100	1,015	660	660			
	용 자	1,100	1,015	660	6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최종범		044-201-2353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산지생태목장조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30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부담금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부담금 지원		예산 (백만원)	400				
사업목적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							
사업 주요내용	○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을 위한 초지조성부담금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지원한도	○ 초지조성부담금은 3ha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1ha 미만은 절사) * ha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	1,000	1,000	1,000			
	국 고	-	400	400	400			
	지방비	-	300	300	300			
	자부담	-	300	300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최종범		044-201-2353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산지생태목장조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31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예산 (백만원)	120			
사업목적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							
사업 주요내용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컨설팅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지원한도	○ 컨설팅은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300	300	300	300			
	국 고	120	120	120	120			
	지방비	90	90	90	90			
	자부담	90	90	90	9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최종범		044-201-2353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산지생태목장조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 교육·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							
사업 주요내용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지원한도	○ 예산범위 내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	300	200	200			
	국 고	-	300	200	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복지과 기술지원부		최종범 배종훈	044-201-2353 042-822-9829			
신청시기	교육, 홍보사업별 별도공지			사업시행기관	(재)축산환경관리원			
관련자료	산지생태목장조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33

악취측정ICT기계장비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예산 (백만원)	360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축사 내·외(퇴·액비화 시설 포함) 축산악취에 대한 실시간 감지를 통해 악취 민원 발생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컨설팅 등 축산농가 및 자원화 조직체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함(한우, 젓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352	360	360			
	국 고	-	352	360	3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별도시행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34

액비유통전문조직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액비유통전문조직			예산 (백만원)	1,800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바큇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 ○ 액비유통센터와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신규 센터는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 비료생산업 등록 권장(2018년까지) ○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205	1,800	1,800	1,800		
	국 고	2,205	1,800	1,800	1,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35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액비저장조 지원			예산 (백만원)	5,200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함(한우, 젓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전문유통주체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 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831	5,595	5,200	5,200			
	국 고	7,831	5,595	5,200	5,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36

유해가스측정기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유해가스측정기		예산 (백만원)	90				
사업목적	○ 축사 내·외(퇴·액비화 시설 포함) 유해가스(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등)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실시간 감지를 통해 미연 방지							
사업 주요내용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회'에 참여하여야함(한우, 젓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90	40			
	국 고	-	-	90	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37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예산 (백만원)	900			
사업목적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및 조사료 생산능력 향상							
사업 주요내용	○ 사료 전문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및 조사료 생산능력 향상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000	9,000	4,500	4,500			
	국 고	1,800	1,800	900	900			
	지방비	2,700	2,700	1,350	1,350			
	용자	2,700	2,700	1,350	1,350			
	자부담	1,800	1,800	900	9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예산 (백만원)	11,880					
사업목적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및 조사료 생산능력 향상							
사업 주요내용	○ 전문단지조성을 위한 사일리지 지원 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 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용자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9,440	21,600	23,760	23,760			
	국 고	9,720	10,800	11,880	11,880			
	지방비	7,776	8,640	9,504	9,504			
	자부담	1,944	2,160	2,376	2,37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39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파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파종 지원	예산 (백만원)	248					
사업목적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및 조사료 생산능력 향상							
사업 주요내용	○ 전문단지조성을 위한 입모중파종 지원 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27	827	827	827			
	국 고	248	248	248	248			
	지방비	248	248	248	248			
	자부담	331	331	331	33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40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예산 (백만원)	1,056					
사업목적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및 조사료 생산능력 향상							
사업 주요내용	○ 전문단지조성을 위한 종자 지원 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6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160	3240	2640	2640			
	국 고	864	1296	1056	1056			
	자부담	1296	1944	1584	158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41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예산 (백만원)	3,520
사업목적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및 조사료 생산능력 향상					
사업 주요내용	○ 전문단지조성을 위한 퇴액비 지원 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6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400	8,000	8,800	8,800	
	국 고	2,560	3,200	3,520	3,520	
	지방비	3,840	4,800	5,280	5,28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 지원			예산 (백만원)	210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정착촌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자(2020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함(한우, 젖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한센인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한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및 분뇨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30	용자	20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20	420	210	210		
	국 고	420	420	210	2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43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예산 (백만원)	1,080				
사업목적	○ 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유통 및 품질의 효율성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유통 및 품질의 효율성 유도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000	15000	3600	3600			
	국 고	4500	4500	1080	1080			
	지방비	4500	4500	1080	1080			
	자부담	6000	6000	1440	14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44

조사료생산기반확충(용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용자)		예산 (백만원)	16,658				
사업목적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용자 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8,282	22,424	16,658	16,658			
	용 자	38,282	22,424	16,658	16,65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45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예산 (백만원)	3,350			
사업목적	○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사업 주요내용	○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1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9,000	36,000	33,500	33,500			
	국 고	3,900	3,600	3,350	3,350			
	지방비	11,700	10,800	10,050	10,050			
	용자	11,700	10,800	10,050	10,050			
	자부담	11,700	10,800	10,050	10,0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46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예산 (백만원)	41,463	
사업목적	○ 조사료생산 보조사업으로 생산 효율 증대						
사업 주요내용	○ 조사료생산 효율 증대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60	용자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29,963	129,967	129,970	129,973		
	국 고	38,989	38,990	38,991	38,992		
	지방비	77,978	77,980	77,982	77,984		
	자부담	12,996	12,997	12,997	12,99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47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예산 (백만원)	10,800			
사업목적	○ 조사료생산 보조사업으로 생산 효율 증대							
사업 주요내용	○ 조사료생산 효율 증대를 위한 종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7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480	34,333	36,000	36,000			
	국 고	9,144	10,300	10,800	10,800			
	자부담	21,336	24,033	25,200	25,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조사료생산용 초지조성(보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조사료생산용 초지조성(보완) 지원	예산 (백만원)	365					
사업목적	○ 조사료생산 보조사업으로 생산 효율 증대							
사업 주요내용	○ 조사료생산 효율 증대를 위한 초지조성(보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5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1,216	730	730			
	국 고	-	608	365	365			
	용 자	-	608	365	3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49

축사시설현대화(용자)사업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용자)			예산 (백만원)	113,680			
사업목적	○ 축사시설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한 축사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14.12.31이전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50세 이하), 축산계열 학교(학과) 졸업자(50세 이하)							
지원한도	○ 축종별로 다름							
재원구성 (%)	국고	0~30	지방비	-	용자	50~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1,528	124,509	123,424	123,424			
	국 고	28,257	16,244	9,744	-			
	용 자	83,271	108,265	113,680	123,42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김성구		044-201-2336		
신청시기	연말 ~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250

축사시설현대화(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9,744				
사업목적	○ 축사시설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주요내용	○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한 축사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지원							
국고보조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14.12.31이전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50세 이하), 축산계열 학교(학과) 졸업자(50세 이하)							
지원한도	○ 축종별로 다름							
재원구성 (%)	국고	0~30	지방비	-	용자	50~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계	111,528	124,509	123,424	123,424			
	국고	28,257	16,244	9,744	-			
	용자	83,271	108,265	113,680	123,42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부서		김성구	044-201-2336				
신청시기	연말 ~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251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	예산 (백만원)	6,000 (보조·용자 각 3,000)					
사업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식육판매점포(검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용자 3) 이내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	용자	3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00	13,300	10,000	10,000			
	국 고	6,000	4,000	3,000	3,000			
	용 자	6,000	4,000	3,000	3,000			
	자부담	8,000	5,300	4,000	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15.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18,000					
사업목적	○ 축산농가에 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							
사업 주요내용	○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오리, 사슴분야 농업경영체							
지원한도	○ 1,0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	용자	5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9,520	25,840	48,000	64,000			
	국 고	7,820	9,690	18,000	2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민호		044-201-2335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							

253

축산환경관리원 운영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환경관리원 운영지원			예산 (백만원)	2,927			
사업목적	○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사업 주요내용	○ 축산환경관리원 운영(인건비, 사업비 등) -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교육 - 분뇨처리 기술이 적합한지 관련 기술 평가 - 공동자원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련 컨설팅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지원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77	2,708	2,927	7,283			
	국 고	2,077	2,708	2,927	7,28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축산환경관리원		
관련자료	-							

254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예산 (백만원)	1,560			
사업목적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퇴비 생산 시설 개보수 및 관리장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농어업 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 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및 제38조(친환경농어업 등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3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지원한도	○ 개소당 지원한도 : 300백만원/개소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3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400	8,400	7,800	7,800			
	국 고	1,680	1,680	1,560	1,560			
	용 자	2,520	2,520	2,340	2,340			
	지방비	1,680	1,680	1,560	1,560			
	자부담	2,520	2,520	2,340	2,3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안치홍 박유천		010-2373-0623 010-6796-0628			
신청시기	2018년 1월 중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관련자료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55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가공원료유 지원			예산 (백만원)	17,000			
사업목적	○ FTA 확대로 유가공품 수입이 확대됨에 따른 국산 원유로 생산한 유가공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 국산 원유를 정상가격에 구입하여 유가공품 생산시(농가 : 원유생산시) 우유 생산비와 국제탈지분유가격 차액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산 원유로 분유, 치즈 등 가공원료유를 생산하면서 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 제도에 참여하는 유가공업체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000	17,000	17,000	51,000			
	국 고	17,000	17,000	17,000	5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김정희		044-201-2341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낙농진흥회		
관련자료								

256

가축개량지원(용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개량지원(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가축개량지원(용자)		예산 (백만원)	9,000				
사업목적	○ 우수한 한우 수정란 이식을 통한 지역단위 우량암소 축군 조성으로 농가 암소개량을 촉진하고 소득 증대							
사업 주요내용	○ 수란우 입식비, 수정란 이식 관련 비용, 수란우 및 ET송아지 사양비, 친자확인비, 사육시설, 인건비, 소모성 기자재, 기타 수용성 비용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수정란을 이용한 지역 암소개량군 기반구축을 위해 사육시설과 사육장을 확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장 : 암소(12개월령) 200두 이상 사육계획이고, 생축장내에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 후대축을 생산할 수 있는 생축장 보유 - 사육 시설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육장 ○ 우량 수정란 확보 : 가능한 관할지역 지자체로부터 우량 수정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함 ○ 자료 관리 :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 ○ 질병관리 : 12개월령 이상 암소에 대해 질병검진 항목(브루셀라병, 우결핵병, 구제역)의 검진을 실시하여 음성판정 							
지원한도	○ 9,000백만원(3,000백만 원 × 3개소)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000	9,000	9,000	9,000			
	용 자	15,000	9,000	9,000	9,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상훈		044-201-2343			
신청시기	매년 1월		사업시행기관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관련자료								

257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분석기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분석기 지원				예산 (백만원)	167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함(한우, 젓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 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68	108	167	167		
	국 고	168	108	167	16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분뇨 부숙도판정기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가축분뇨 부숙도판정기 지원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함(한우, 젓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 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10	135	300	300	
	국 고	210	135	300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					

259

가축분뇨처리사업 교육·홍보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가축분뇨처리사업 교육·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348				
사업목적	○ 축산악취저감 등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원화 조직체 관리, 컨설팅, 교육·홍보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사업 주요내용	○ 축산환경협의회 운영, 자원화조직체 평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퇴액비 이용 활성화 교육 및 홍보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교육·홍보							
지원한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50	346	348	350			
	국 고	350	346	348	3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		
관련자료	-							

260

국제낙농연맹총회개최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국제낙농연맹총회개최				예산 (백만원)	450			
사업목적	○ '18년 국제낙농연맹총회를 한국(대전)에서 개최하여 한국 낙농산업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인프라 강화								
사업 주요내용	○ 국제낙농연맹총회 개최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낙농진흥회(IDF사무국)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450	-				
	국 고	-	-	45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김정희		044-201-2341		
신청시기	별도 안내				사업시행기관		낙농진흥회		
관련자료									

261

기타가축개량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개량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기타가축개량지원		예산 (백만원)	150				
사업목적	○ 신제품 여왕벌 보급을 통해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양봉농가의 신제품 별(장원벌) 사육을 위한 벌통 구입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제품 별 생산 농가 또는 단체에서 생산한 여왕벌(장원벌) 구입을 희망하는 양봉농가							
지원한도	○ 15천원/벌통, 75천원/군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0	150	150	150			
	국 고	150	150	150	1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부서		김성구		044-201-2336		
신청시기	연말 ~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262

기타가축개량지원(흑염소개량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개량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기타가축개량지원(흑염소개량지원)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흑염소 개량지원을 통한 흑염소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 주요내용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이 씨흑염소 선발, 교배 등 개량을 통해 생산한 우량 흑염소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개량시설 등) 마련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상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지원한도	○ 2,000백만원(4년간, 4개소)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1,000	1,000			
	보 조	-	-	500	500			
	지방비	-	-	500	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상훈		044-201-2343		
신청시기	매년 11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관련자료								

263

낙농통계관리시스템운영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낙농통계관리시스템운영			예산 (백만원)	390			
사업목적	○ 효율적인 낙농통계관리로 정확한 우유수급 예측							
사업 주요내용	○ 낙농통계(원유생산및소비, 원유생산쿼터이력관리, 학교우유급식) 등 관리를 위한 시스템관리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발기금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40	240	390	1,170			
	국 고	240	240	390	1,17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김정희		044-201-2341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낙농진흥회		
관련자료								

돼지경제능력검정 경상지원(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가축개량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돼지경제능력검정 경상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25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능력 종돈개량 및 양돈농가 우수 유전자원 보급 활성화 ○ 국가단위 돼지 유전능력평가 및 유전능력정보 중심의 종돈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고능력 종돈 개량·이용 선순환 체계 정착 						
사업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돼지 유전자원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 종돈 중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을 돼지인공수정센터가 확보하여 농가에 우수정액을 공급할 경우 해당 종돈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 						
국고보조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정액등처리업체 중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서 선발된 종돈을 사용한 업체						
지원한도	○ 일반종돈과 우수종돈과의 구입가격 차액을 종돈의 유전능력(검정결과)에 따라 차등(마리당 500~1,000천원)하여 정액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계	500	500	500	500		
	보조	250	250	250	250		
	지방비	250	250	250	2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상훈		044-201-2343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265

돼지경제능력검정 지원(민간)사업

세부사업명	가축개량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돼지경제능력검정 지원(민간)			예산 (백만원)	1,253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을 통해 종돈장에 선발지표를 제공하고, 국내산 우수 종돈의 선발·보급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량종돈 선발, 교류, 평가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종돈 개량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검정(90kg 도달일령, 1일평균 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지원 ○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 중 사업에서 요구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장 등							
지원한도	○ 1,253백만 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53	1,253	1,253	1,253			
	보 조	1,553	1,253	1,253	1,25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상훈		044-201-2343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종축개량협회		
관련자료								

266

말산업 인식 개선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말산업 인식 개선		예산 (백만원)	1,820				
사업목적	○ 말문화 홍보 등을 통한 인식 개선 추진							
사업 주요내용	○ 말 문화 홍보, 말고기 소비촉진, 안성팜랜드 내 말산업 홍보 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마사회(보조사업자 : 농협중앙회, 민간, 법인, 관련협회 등)							
지원한도	○ 말산업 박람회(4억원 내) ○ 말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6억원 내) ○ 안성팜랜드 활성화(4.2억원 내)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120	1,420	1,820	1,820			
	국 고	2,120	1,420	1,820	1,8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농협경제지주		축산정책과 말산업기획부 말산업육성팀		한병윤 유원미 최진		044-201-2325 02-509-2973 02-2080-6559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관련자료								

267

말산업 전담기관 기능 강화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말산업 전담기관 기능 강화				예산 (백만원)	1,800			
사업목적	○ 말산업전담기관 운영 및 강화를 통한 말산업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 말등록, 종합정보시스템, 연구소 운영 등 기반조성 사업 수행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제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말산업전담기관 (조건) 국비 50~100% 지원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10	1,648	1,800	2,600				
	국 고	1,710	1,648	1,800	2,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축산정책과 말산업기획부			한병윤 이한수		044-201-2325 02-509-2972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한국마사회		
관련자료									

268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 (백만원)	1,380		
사업목적	○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 강화를 통한 인력양성							
사업 주요내용	○ 말산업 교육과정 운영, 말 자격시험, 전문인력 고용촉진 사업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마사회(보조사업자 : 승마장, 인력양성기관, 관련협회 등)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50	지방비		용자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427	1,571	1,788	1,788			
	국 고	1,283	1,355	1,380	1,380			
	자부담	144	216	408	40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한병윤		044-201-2325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한국마사회		
관련자료								

269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자치단체경상)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자치단체경상)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 강화를 통한 인력양성							
사업 주요내용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 (조건) 「말산업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한 기관으로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00	600	600	600			
	국 고	300	300	300	300			
	지방비	300	300	300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축산정책과 말산업기획부		한병윤 유원미		044-201-2325 02-509-2973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								

270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자치단체자본)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 보조		
내역사업명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자치단체자본)				예산 (백만원)	1,350		
사업목적	○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 강화를 통한 인력양성							
사업 주요내용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설 및 운영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 (조건) 「말산업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한 기관으로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00	3,000	2,700	2,700			
	국 고	1,500	1,500	1,350	1,350			
	지방비	1,500	1,500	1,350	1,3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축산정책과 말산업기획부		한병윤 유원미		044-201-2325 02-509-2973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271

말산업 특구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말산업 특구지원		예산 (백만원)	2,000				
사업목적	○ 말산업 특구 지역의 말산업 진흥을 통한 기반조성 사업							
사업 주요내용	○ 신규지정 말산업특구 및 기존 말산업특구 발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제2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말산업육성법」제20조에 따라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 (조건)「말산업육성법」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한 말산업 특구							
지원한도	○ 지정된 말산업특구 대상 전년도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국비 30억 내외 50:50 매칭), 등급별 20~50% 차등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6,000	10,000	4,000	4,000			
	국 고	8,000	5,000	2,000	2,000			
	지방비	8,000	5,000	2,000	2,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한병윤		044-201-2325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말산업의 6차산업화(민간)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말산업의 6차산업화(민간)		예산 (백만원)	2,550				
사업목적	○ 말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회 활성화 및 안전 제도 운영							
사업 주요내용	○ 민간승마대회 활성화, 기승능력인증제 시행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제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마사회(보조사업자 : 협회 또는 승마시설(승마장포함)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 ○ (조건) 승마대회 개최 신청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사업계획서 접수와 심사를 통하여 사업성에 따른 차등지원 시행							
지원한도	○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마대회별 차등 지원 (승마대회 : 1억원/1개 이내, 지역단위 소규모 승마대회(풀뿌리 승마대회 : 3천만원/1개 이내)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900	4,411	4,750	4,750			
	국 고	1,900	1,968	2,550	2,550			
	자부담	-	2,443	2,200	2,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축산정책과 승마지원담당		한병윤 김용옥		044-201-2325 02-509-2464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한국마사회		
관련자료								

273

미래한돈창조혁신센터사업

세부사업명	가축개량지원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미래한돈혁신센터		예산 (백만원)	1,400				
사업목적	○ ICT 융복합 양돈 표준모델 정립과 높은 수준의 농가 ICT 현장교육 및 견학 시설 설립							
사업 주요내용	○ 돼지 검정, 현장실험 및 연구, 양돈교육 등을 위한 (가칭)미래한돈창조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대한한돈협회							
지원한도	○ 총 1,8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400	1,400	-			
	국 고	-	400	1,4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044-201-2336		
신청시기	선정완료			사업시행기관		대한한돈협회		
관련자료								

274

밀집지역 개편사업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밀집지역 개편			예산 (백만원)	9,000			
사업목적	○ 밀집되고 방역에 취약한 축사를 청정 지역으로 이전하여 차단 방역 및 환경친화 축산을 구현							
사업주요내용	○ 개별 축사를 이전하거나 축사를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국고보조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가금 밀집지역의 축산농가							
지원한도	○ 축종별로 다름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40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9,000	9,000			
	국 고	-	-	9,000	9,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부서		김성구		044-201-2336		
신청시기	연말 ~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275

번식용 승용마 도입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번식용 승용마 도입(씨수말)				예산 (백만원)	144		
사업목적	○ 번식용 승용마 도입통한 승용마 확대							
사업 주요내용	○ 번식용 승용마 도입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지원자격 및 요건	○ 승용마 번식지원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 확보 또는 계획을 보유한 지자체 (산하 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지원한도	○ 총 사업비 범위내 사업자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인공수정용 번식 씨수말 도입)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75	275	180	180			
	국 고	220	220	144	144			
	지방비	55	55	36	3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축산정책과 생산육성부		한병윤 오원석		044-201-2325 02-509-2981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276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예산 (백만원)	1,040				
사업목적	○ 현재 산닭 유통비율이 총 출하두수의 36% 수준임을 감안,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3년부터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의 산닭 유통을 금지할 계획으로 '22년까지 거점 단위 토종닭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산닭 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등 거점단위 소규모 도계장 10개소 설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소규모 도계장 설치 운영을 희망하는자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한도	○ 1개소당 보조 104백만원, 지방비 104백만원, 자부담 138.5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3,465	-			
	국 고	-	-	1,040	-			
	지방비	-	-	1,040	-			
	자부담	-	-	1,385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김지훈		044-201-2323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							

277

승마시설 등 설치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승마시설 등 설치			예산 (백만원)	4,300			
사업목적	○ 번식용 승용마 도입통한 승용마 확대							
사업 주요내용	○ 번식용 승용마 도입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지원자격 및 요건	○ 승용마 번식지원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 확보 또는 계획을 보유한 지자체 (산하 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지원한도	○ 총 사업비 범위내 사업자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인공수정용 번식 씨수말 도입)							
재원구성 (%)	국고	31	지방비	37	용자	16	자부담	16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400	37,100	13,880	13,880			
	국 고	4,360	7,960	4,300	4,300			
	지방비	4,360	9,660	5,200	5,200			
	용 자	3,340	2,940	2,190	2,190			
	자부담	3,340	2,940	2,190	2,19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축산정책과 생산육성부		한병윤 오원석		044-201-2325 02-509-2981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사업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예산 (백만원)	3,000 (보조 500, 용자2500)					
사업목적	○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 등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축산법」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한도	○ 보조 10%(100백만원), 용자 50%(500백만원)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재원구성(%)	국고	10	지방비	20	용자	5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0	5,000	5,000	5,000			
	국 고	500	500	500	500			
	지방비	1,000	1,000	1,000	1,000			
	용 자	2,500	2,500	2,500	2,500			
	자부담	1,000	1,000	1,000	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79

우수말 생산육성조련 강화(민간)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우수말 생산육성조련 강화(민간)				예산 (백만원)	2,020		
사업목적	○ 우수한 국산종마 육성, 안전한 승용마 공급, 생산저변 확대 등							
사업 주요내용	○ 승용마품평을 통한 선별 공급체계 구축, 경주퇴역마 조련, 용도다각화, 국산 경주마 종마선발, 우수경주마 자마선발, 국산경주마 구매촉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지원자격 및 요건	○ 마사회(보조사업자 : 마주, 민간, 법인, 관련협회 등)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90~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230	2,219	2,242	2,242			
	국 고	1,980	2,015	2,020	2,020			
	자부담	250	204	222	22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축산정책과 생산육성부		한병윤 신원호		044-201-2325 02-509-2982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한국마사회		
관련자료								

280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용자)사업

세부사업명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용자)				예산 (백만원)	10,000		
사업목적	○ FTA 확대에 따라 국내에 가격이 저렴한 수입 유제품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원유생산비 절감을 통한 낙농조합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우수한 조합에 지원하여 낙농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원유생산비 절감을 위한 육성우 전문목장 운영, 조사료·조사료 종자 구매, 컨설팅, 교육, 유우균 검정능력사업비, 국산젖소 정액 구입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법 제3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낙농조합 및 축협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용 자	10,000	10,000	10,000	20,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김정희		044-201-2341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281

원유소비활성화(용자)사업

세부사업명	원유소비활성화(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원유소비활성화(용자)				예산 (백만원)	10,000		
사업목적	○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 생산 활성화로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원유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치즈 등 국산 유제품 생산사업 육성기반 마련							
사업 주요내용	○ 치즈 등 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원유 구입비, 유통·판매 및 시장개척비, 제품 및 브랜드 개발비, R&D, 컨설팅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법 제3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산 원유를 사용하여 치즈 등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자(옥장유가공업자 포함)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용 자	10,000	10,000	10,000	70,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김정희		044-201-2341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낙농진흥회	
관련자료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예산 (백만원)	1,200				
사업목적	○ 지속가능 수요창출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제17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창단지원 : 시·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 운영지원 : 기존 유소년 승마단 운영자 (조건)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 시·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중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자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 창단일이 1년 이상이고 대회 출전 등 유소년 승마단의 활동 실적이 있는 시·도(시·군·구), 승마시설(승마장) 운영자,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승마단 ○ 공통요건 - 승마장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운영자에 한함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400	2,400	2,400	2,400			
	국 고	1,200	1,200	1,200	1,200			
	지방비	1,200	1,200	1,200	1,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한병윤	044-201-2325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283

조사료사업 교육홍보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조사료사업 교육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224				
사업목적	○ 교육홍보를 통한 고품질 조사료 사업 유도							
사업 주요내용	○ 교육홍보를 통한 고품질 조사료 사업 유도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조사료 교육·홍보 사업 주관 기관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4	114	224	224			
	국 고	114	114	224	22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284

조사료통계관측조사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조사료통계관측조사			예산 (백만원)	78			
사업목적	○ 조사료의 생산·유통실태를 조사·관측하여 조사료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 주요내용	○ 사료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비, 유통가격 통계조사 및 생산·유통 관측조사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조사료 통계관측조사 사업 주관 기관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8	78	78	78			
	국 고	78	78	78	7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							

285

종축등록사업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개량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종축등록사업지원		예산 (백만원)	180				
사업목적	○ 능력평가대회 및 체형형질 심사를 통해 한우(젓소) 유전능력 개량을 통한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방향 제시 및 농가의 자발적 개량참여 유도							
사업 주요내용	○ 능력평가대회 개최비용 일부 지원 ○ 개체정보, 일반외모, 자질 등에 대해 선형심사를 실시한 개체를 보유한 농가에 선형심사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장 중 사업에서 요구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장 등							
지원한도	○ 3,000원/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4	180	180	180			
	보 조	174	180	180	18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상훈		044-201-2343		
신청시기	매년 1월			사업시행기관		종축개량협회		
관련자료								

286

축사시설현대화(민간)사업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민간)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축사시설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및 사업개선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경제지주						
지원한도	○ 5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	500	500	500		
	국 고	500	500	500	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044-201-2336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287

축사시설현대화(사업관리)사업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사업관리)			예산 (백만원)	203		
사업목적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한 축사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지원을 위한 사업관리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출취급기관						
지원한도	○ 대출금의 0.25%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203	203		
	국 고	-	-	203	20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044-201-2336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기금수탁기관, 대출취급기관	
관련자료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 (백만원)	1,816	
사업목적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축산법규, 가축방역, 질병관리, 친환경축산 등을 교육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비용 일부 지원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3조의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받은 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및 등록한 자,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및 등록한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에 따른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지원한도	○ 1인당 교육비 35,820원의 70%, 운영비 100%				
재원구성 (%)	국고	70~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21	2,266	2,266	2,266
	국 고	1,641	1,816	1,816	1,816
	자부담	380	450	450	4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정지원	044-201-2330
신청시기	매월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				

289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민간)사업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민간)			예산 (백만원)	1,800			
사업목적	○ 축산농가에 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							
사업 주요내용	○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전컨설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한도	○ 3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	1,050	1,800	2,400			
	국 고	500	1,050	1,800	2,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민호		044-201-2335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							

290

학생승마체험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학생승마체험	예산 (백만원)	7,140					
사업목적	○ 지속가능 수요창출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 초중고생 승마체험 및 재활승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제17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조건)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0만원(3만원 × 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0만원(3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0만원(3만원 × 10회) - 재활승마 40만원(4만원 × 10회)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30~50	지방비	40~50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100	13,300	22,901	22,901			
	국 고	3,330	4,250	7,140	7,140			
	지방비	4,440	5,450	9,632	9,632			
	자부담	3,330	3,600	6,129	6,12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한병윤		044-201-2325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291

한우젓소개량 경상지원(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가축개량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한우젓소개량 경상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841	
사업목적	○ 국가단위 능력검정에 공시할 유전능력이 우수한 검정용 수송아지 확보, 고능력씨암소축군 지원 및 우량암소수정란이식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수송아지를 생산한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에 개량비 지원 ○ 고능력씨암소축군조성 경상경비 지원 ○ 우량암소수정란이식지원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개량기관(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지원한도	○ 한우육종농가(지자체 센터) 선발 씨수소 개량비 : 도 센터 2개소 * 60백만원 ○ 고능력씨암소축군조성 : 도센터 4개소 * 50백만원 ○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 : 9개소 * 57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44	1,472	1,682	1,682		
	보 조	944	736	841	841		
지방비	944	736	841	84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상훈		044-201-2343	
신청시기	매년 1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관련자료							

한우젓소개량 자본지원(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가축개량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한우젓소개량 자본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1,0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보증씨수소와 우량암소의 계획교배로 생산한 수정란을 활용하여 유전적 능력이 높은 우수한 송아지를 다량으로 생산·공급 ○ 희소한우개량지원 							
사업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도 종축장은 수정란 생산용 우량암소 축군확보(30두) 및 사육시설, 수정란 생산·공급에 필요한 시설 확충 ○ 희소한우개량 자본적 경비 지원 							
국고보조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개량기관(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소한우개량 자본적 경비 지원 : 9개소 10백만원 ○ 수정란이식 우량암소 지원 : 9개소 101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874	2,000	2,000	2,000			
	보 조	1,437	1,000	1,000	1,000			
	지방비	1,437	1,000	1,000	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상훈		044-201-2343		
신청시기	매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관련자료								

293

한우젓소개량지원(민간)사업

세부사업명	가축개량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한우젓소개량지원(민간)		예산 (백만원)	36,784				
사업목적	○ 한우·젓소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그 우량정액을 농가에 생산·공급하여 한우·젓소의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 주요내용	○ 한우·젓소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당후대 송아지 검정비용, 보증씨수소 생산 농가 개량장려금, 개량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등 지원 ○ 한우·젓소의 암소검정 등을 통해 참여암소별 능력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선발·도태 지원 ○ 농가, 검정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가축개량기술 교육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법상 한우젓소개량 및 검정기관, 축산법(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중 한우육종농가, 검정농가 등에 필요한 일정조건 충족한 농가							
지원한도	○ 검정비 : 10,000두, 개발장려금 : 70두, 농가후대검정 자료조사비 : 700두 등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5,439	34,924	36,784	36,784			
	보 조	35,439	34,924	36,784	36,78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상훈		044-201-2343		
신청시기	매년 1월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제주 가축개량원		
관련자료								

CCTV 등 방역인프라사업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CCTV 등 방역인프라			예산 (백만원)	9,288			
사업목적	○ CCTV 영상기록물을 통해 가금상태 관찰 실시로 조기 신고 유도과 AI 발생시 방역실태를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 평소 방역실태 등을 평가하여 농가 방역의식 제고와 AI 발생 시 영상기록물을 역학조사에 활용							
사업 주요내용	○ 농장 내 CCTV 등 방역시설 설치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사업자							
지원한도	○ 지원상한액(표준사업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표준사업비) 계열화사업자 위탁 농가 : 16.6백만원 / 일반 농가 : 5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	1,910	18,576	미 정			
	국 고	-	955	9,288	미 정			
	용 자	-	955	9,288	미 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강호성		044-201-2557		
신청시기	연말 ~ 연초			사업시행기관		기초지자체(시·군)		
관련자료								

295

GMP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GMP 컨설팅 지원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국제적 수준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우수제품 발전기여 및 수출 촉진 도모			우수제조기준 적용을 위한 통한 농가보호 등 축산업				
사업 주요내용	○ 국제기구(WHO, PIC/S 등) 수출국가별(EU, 미국, 일본 등) GMP 기준관련, GMP 적용 현장교육 및 컨설팅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동물용의약품,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을 갖춘 제조업체 - 수출국가의 GMP 적용요건에 따라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업체 - 동물약품 품질향상 및 수출을 위해 국제 수준 및 국내 GMP 선진화 기준(안)에 부합한 제조시설 운영개선,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교육 필요업체							
지원한도	○ 지원기준 : 개소당 20백만원(국고보조)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30	용자	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50	250	250	250			
	국 고	100	100	100	100			
	지방비	75	75	75	75			
	자부담	75	75	75	7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기봉		044-201-2554		
신청시기	정기(당해연도 2~3월),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2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장비 구입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위생방역지원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장비 구입지원		예산 (백만원)	548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자산취득비 지원(방역장비, 차량 등 구입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05	1,505	548	548			
	국 고	405	1,505	548	54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조현준		044-201-2522		
신청시기	해당없음			사업시행기관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관련자료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29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위생방역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예산 (백만원)	8,535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60%, 지방비 40%							
지원한도	○ 국비 60%, 지방비 40%							
재원구성 (%)	국고	6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918	12,718	14,225	14,225			
	국 고	7,151	7,631	8,535	8,535			
	지방비	4,767	5,087	5,690	5,69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조현준		044-201-2522		
신청시기	해당없음			사업시행기관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관련자료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29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위생방역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예산 (백만원)	25,789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인건비, 운영비, 전화예찰사업, 가축질병 근절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2,299	22,874	25,789	25,789			
	국 고	22,299	22,874	25,789	25,78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조현준		044-201-2522		
신청시기	해당없음			사업시행기관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관련자료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299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경상)사업

세부사업명	시도가축방역	세목	자치단체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경상)	예산 (백만원)	114,776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및 검진약품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50~70%, 지방비 30~5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70,797	161,388	217,459	217,459
	국 고	98,019	92,619	114,776	114,776
	지방비	72,778	68,769	102,683	102,68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김주연	044-201-2521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관련자료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300

개업수의사보수교육 등 지원(민간경상보조)사업

세부사업명	시도가축방역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개업수의사보수교육 등 지원(민간경상보조)		예산 (백만원)	2,593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50~100%, 자부담 0~5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50~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0~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272	3,221	2,683	2,683
	국 고	2,182	3,056	2,593	2,593
	자부담	90	165	90	9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김주연	044-201-2521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대한수의사회
관련자료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301

공동방제단 운영사업

세부사업명	가축위생방역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공동방제단 운영				예산 (백만원)	13,129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공동방제단 인건비,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376	20,158	26,258	26,258			
	국 고	8,688	10,079	13,129	13,129			
	지방비	8,688	10,079	13,129	13,12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조현준		044-201-2522		
신청시기	해당없음(비공모형사업)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농(축)협		
관련자료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302

광역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광역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지원		예산 (백만원)	1,120				
사업목적	○ 유실·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							
사업 주요내용	○ 유실·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 * 부지 및 운영비 일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기 수립하고 시설설치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계획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 ○ 전년도 기준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2,000두 이상인 시·도 * 2년차 사업(지원 비율 : 국비 40%, 지방비 60%)							
지원한도	○ '18년 : 국고 1,12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6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1,200	2,800	-			
	국 고	-	480	1,120	-			
	지방비	-	720	1,680	-			
담당'18년 :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이승환 이승윤		044-201-2364 044-201-2365		
신청시기	'17년 사업대상자 기 선정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303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도축검사운영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예산 (백만원)	8,953			
사업목적	○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성검사와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제고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전국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도축검사 업무를 지원하는 검사원 배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60%, 지방비 4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60	지방비	4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3,970	14,458	14,922	15,370				
	국 고	8,382	8,675	8,953	9,222				
	지방비	5,588	5,783	5,969	6,14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이효근		044-201-2527		
신청시기	전년도 4분기				사업시행기관		시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련자료									

304

도축검사원운영비 지원(민간)사업

세부사업명	도축검사운영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도축검사원운영비 지원(민간)				예산 (백만원)	1,741			
사업목적	○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성검사와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제고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전국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도축검사 업무를 지원하는 검사원 배치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41	1,741	1,741	1,741				
	국 고	1,741	1,741	1,741	1,74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이효근		044-201-2527		
신청시기	전년도 4분기				사업시행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		
관련자료									

305

동물보호 교육 홍보사업

세부사업명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동물보호 교육 홍보		예산 (백만원)	1,105				
사업목적	○ 동물보호와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하여 동물등록제 등 제도 정착과 함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사업 주요내용	○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 동물등록제 및 동물보호 홍보캠페인, 동물보호 및 복지 상담센터 운영, 동물보호문화축제, 동물복지현장 체험단 운영, 영업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온라인 교육,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대한수의사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지원한도	○ 국고 1,105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05	805	1,105	미정			
	국 고	805	805	1,105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이승환 이승윤		044-201-2364 044-201-2365		
신청시기	`17. 11월			사업시행기관		대한수의사회, 농림수산물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306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재구축사업

세부사업명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재구축		예산 (백만원)	703				
사업목적	○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보호·처리 투명성·활용도 제고, 영업자 등을 위하여 시스템의 현행화 및 콘텐츠 확대							
사업 주요내용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재구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한도	○ 국고 703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703	-			
	국 고	-	-	703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이승환 이승윤		044-201-2364 044-201-2365		
신청시기	`17. 11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307

동물복지 실태조사사업

세부사업명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동물복지 실태조사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 농가가 준수해야 하는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사업 주요내용	○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 비용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한도	○ 국고 2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200	-			
	국 고	-	-	2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이승환 이승윤		044-201-2364 044-201-2365		
신청시기	`17. 11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세부사업명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국제협력포럼)			예산 (백만원)	20			
사업목적	○ 동물용의약품 정보교류 및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정부 관계관 회의 및 세미나 등 포럼 개최를 통한 수출확대							
사업 주요내용	○ 국제 동물약품 정보교류, 수출품목 등록 진행점검회의, 구제역, AI 등 방역 기술협력, 동물약품 등록 규정 및 시장정보 등 포럼개최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관련협회(민간보조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0	30	30	30			
	국 고	20	30	30	3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기봉		044-912-2554		
신청시기	전년도 하반기			사업시행기관		한국동물약품협회		
관련자료								

309

동물용의약품 수출시장개척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동물용의약품 수출시장개척지원		예산 (백만원)	600				
사업목적	○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해외바이어와의 접촉 기회를 증대하여 해외 수출판로 개척 및 홍보를 통한 국내 동물용의약품 수출확대							
사업 주요내용	○ 해외전시회 참여에 소요되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 등 - 해외 동물용의약품 현지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상담회 개최 등을 위한 제반 경비 - 외국어 브로셔제작 등 홍보비,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 수출대상국 인·허가 담당 공무원 초청 워크숍 개최 비용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출시장개척지원 등 70% 민간보조 지원 ○ 국가간네트워크구축사업 100% 민간보조 지원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70~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895	895	895	895			
	국 고	600	600	600	600			
	자부담	295	295	295	29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기봉		044-912-2554		
신청시기	1~2월			사업시행기관		한국동물약품협회		
관련자료								

310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자본)사업

세부사업명	시도가축방역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자본)				예산 (백만원)	12,179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지자체별 가축질병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25	지방비	50~25	용자	0	자부담	40~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8,933	18,203	24,364	24,364				
	국 고	9,464	9,099	12,179	12,179				
	지방비	9,469	9,104	12,185	12,18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김주연		044-201-2521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311

살처분보상금사업

세부사업명	살처분보상금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살처분보상금				예산 (백만원)	40,000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보상							
사업 주요내용	○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 되는 가축 및 그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살처분보상금 : 국비 64~80% 기립불능우 폐기보상금 : 국비 100%							
지원한도	○ 살처분(폐기)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평가액 전액 보상 (다만, 구제역·AI 등 발생, 방역조치 미이행 등 별도 기준에 따라 감액)							
재원구성 (%)	국고	80~100	지방비	0~2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5,000	50,000	50,000	75,000			
	국 고	60,000	40,000	40,000	60,000			
	지방비	15,000	10,000	10,000	1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김황용 신소연		044-201-2541 044-201-2542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312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세목	자치단체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예산 (백만원)	756					
사업목적	○ 유실·유기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한 입양비용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유실·유기동물을 입양자에 대해 예방접종 및 중성화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자격요건 : 유실·유기동물 입양자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자부담 지방비 대체 가능							
지원한도	○ 국비 756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3,780	-			
	국 고	-	-	756	-			
	지방비	-	-	1,134	-			
	자부담	-	-	1,89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이승환 이승윤		044-201-2364 044-201-2365		
신청시기	`17.10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313

일반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일반 유실·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지원		예산 (백만원)	1,800				
사업목적	○ 유실·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							
사업 주요내용	○ 유실·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 * 부지 및 운영비 일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기 수립하고 시설설치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계획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 ○ 전년도 기준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500두 이상인 시·도 ○ 지원 비율 :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한도	○ 국고 1,8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7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00	3,000	6,000	미정			
	국 고	300	900	1,800	미정			
	지방비	600	2,100	4,200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이승환 이승윤		044-201-2364 044-201-2365		
신청시기	`17.10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314

지역축협소독차량(민간자본보조)사업

세부사업명	시도가축방역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지역축협소독차량(민간자본보조)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민간 방역기관인 지역 축협에 대한 소독차량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50%, 자부담 5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360	600	600	600			
	국 고	180	300	300	300			
	지방비	180	300	300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김주연	044-201-2521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315

축산물HACCP 조사, 평가, 교육, 세미나, 홍보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HACCP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HACCP 조사, 평가, 교육, 세미나, 홍보			예산 (백만원)	210			
사업목적	○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일관된 축산물HACCP 적용 식품망(food-chain)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HACCP 전문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HACCP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 평가, 교육, 세미나, 홍보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100%							
지원한도	○ 만족도 조사, 평가, 교육, 세미나 20백만원 ○ 홍보 30백만원 ○ 도축장,집유장 평가 16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	50	210	210			
	국 고	50	50	210	2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박준호		010-2951-7475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관련자료								

316

축산물HACCP 현장 기술지도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HACCP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HACCP 현장 기술지도		예산 (백만원)	320				
사업목적	○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일관된 축산물HACCP 적용 식품망(food-chain)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HACCP 전문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기존 인증 농장 및 집유장, 도축장 중 운용능력이 부족한 경우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100%							
지원한도	○ 개소 당 1회 방문 시 40만원(농장) 또는 60만원(도축장·집유장) 이내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12	320	320	320			
	국 고	312	320	320	3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박준호		010-2951-7475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관련자료								

317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HACCP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HACCP컨설팅				예산 (백만원)	1,120			
사업목적	○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일관된 축산물HACCP 적용 식품망(food-chain)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HACCP 전문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HACCP 인증 희망 농장, 집유장, 도축장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지원한도	○ 개소당 5백만원 ~ 12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200	3,200	2,800	2,800				
	국 고	1,280	1,280	1,120	1,120				
	지방비	960	960	840	840				
	자부담	960	960	840	8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박준호		010-2951-7475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관련자료									

318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도축검사운영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				예산 (백만원)	6,400			
사업목적	○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지원 등을 통해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장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40%, 지방비 6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6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005	4,200	16,000	16,000				
	국 고	1,602	1,680	6,400	6,400				
	지방비	2,403	2,520	9,600	9,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이효근		044-201-2527		
신청시기	전년도 4분기				사업시행기관		시도		
관련자료									

319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도축검사운영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 (백만원)	768			
사업목적	○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성검사와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제고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40%, 지방비 6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6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995	1,680	1,920	2,500				
	국 고	798	672	768	1,000				
	지방비	1,197	1,008	1,152	1,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이호근		044-201-2527		
신청시기	전년도 4분기				사업시행기관		시도		
관련자료									

320

축산물위생관리인력 교육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도축검사운영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위생관리인력 교육 지원				예산 (백만원)	650			
사업목적	○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성검사와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제고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도축검사관, 검사원, 책임수의사 등 축산물위생관리인력 교육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보조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50	650	650	650				
	국 고	650	650	650	6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이효근		044-201-2527		
신청시기	전년도 4분기				사업시행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관련자료									

321

축산물이력관리 장비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품질관리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이력관리 장비지원			예산 (백만원)	641			
사업목적	○ 소, 돼지의 이력정보를 사육부터 판매까지 기록관리하여 방역의 효율성,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이전(경상·자본)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4	123	641	641			
	국 고	24	123	641	64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권병운		044-201-234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4.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자료	축산물이력관리장비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22

축산물이력관리 지원(민간)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품질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이력관리 지원(민간)			예산 (백만원)	18,195			
사업목적	○ 소, 돼지의 이력정보를 사육부터 판매까지 기록관리하여 방역의 효율성, 유통 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귀표구입,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관리, 이력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이전(경상·자본)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115	14,797	18,195	18,195			
	국 고	15,115	14,797	18,195	18,19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권병운		044-201-234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4.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축산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종축개량협회		
관련자료	축산물이력관리 지원(민간)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23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품질관리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4,232			
사업목적	○ 소, 돼지의 이력정보를 사육부터 판매까지 기록관리하여 방역의 효율성,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귀표부착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치단체이전(경상) 50%							
지원한도	○ ('17.7월 시행) 소 사육두수 200두 미만('16.12.1일 기준) 농가에 한해 귀표부착비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476	9,198	8,464	8,464			
	국 고	5,238	4,599	4,232	4,232			
	지방비	5,238	4,599	4,232	4,2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권병운		044-201-234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4.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자치단체) 시행지침서 참조							

324

가금산물 가격조사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가금산물 가격조사시스템 운영				예산 (백만원)	787		
사업목적	○ 생산자협회 등에서 제시하는 가금 및 가금산물 대표 가격의 개선하기 위해 가격조사체계 개선을 통한 살처분 기준 가격의 합리적 설정과 공공성 확보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조사체계 개선을 통한 살처분 기준 가격의 합리적 설정과 공공성 확보			
사업 주요내용	○ 생산자협회 등에서 제시하는 가금 및 가금산물 대표 가격의 개선하기 위해 가격조사체계 개선을 통한 살처분 기준 가격의 합리적 설정과 공공성 확보				○ 생산자협회 등에서 제시하는 가금 및 가금산물 대표 가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조사체계 개선을 통한 살처분 기준 가격의 합리적 설정과 공공성 확보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물품질평가원,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51	300	300	300			
	국 고	351	300	300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김지훈 박순홍		044-201-2323 044-201-2347	
신청시기	분기별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자료								

325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사업

세부사업명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사료구매자금		예산 (백만원)	380,000				
사업목적	○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싼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거래 등으로 현재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①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③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16년~'17년 추천서 발급일 기간 중 KAHIS 확인 결과 질병 발생농가)							
지원한도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400,000	450,000	420,000	380,000			
	용 자	400,000	450,000	420,000	380,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양재욱		044-201-2360			
신청시기	연중 3회 분산(1~2월, 6월, 10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			
관련자료								

326

말 경매 등 유통활성화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말 경매 등 유통활성화		예산 (백만원)	390				
사업목적	○ 선진국 수준의 말 전문경매시장 개설로 판로 확보 및 말 가치 향상 추진 등							
사업 주요내용	○ 인공수정지원, 경매유통비율 확대, 국산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지원자격 및 요건	○ 마사회(보조사업자 : 마주, 민간, 법인, 관련협회 등)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12	710	390	390			
	국 고	712	710	390	39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축산정책과 생산육성부		한병윤 오원석		044-201-2325 02-509-2981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한국마사회		
관련자료								

327

방역본부 수입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교육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축산식품안전관리	세목	민간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방역본부 수입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교육 지원	예산 (백만원)	201					
사업목적	○ 수입쇠고기이력제 안정화							
사업 주요내용	○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보급대상자 교육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지원자격 및 요건	○ 관련 법에 따른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보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한도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92	196	201	201			
	국 고	192	196	201	20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		김연주		054-912-0382		
신청시기	정기			사업시행기관		가축위생방역지 원본부		
관련자료								

328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예산 (백만원)	700		
사업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급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지원한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468	1,850	1,850	1,850		
	국 고	1,318	700	700	700		
	지방비	575	575	575	575		
	자부담	575	575	575	57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영과 축산지원부		조재성 박철진		044-201-2332 02-2080-6553	
신청시기	정기(매년 5.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29

육류유통수출입정보 및 소비실태조사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육류유통수출입정보 및 소비실태조사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국내 및 수입 육류의 소비·유통 상황과 육류 수출입국가의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농가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정보 제공							
사업 주요내용	○ 육류(소,돼지) 수급 및 가격 동향,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위한 조사비 및 관련 경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육류유통관련 사항을 조사 및 연구하는 전문기관							
지원한도	○ 3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0	300	300	300			
	국 고	300	300	300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044-201-2336		
신청시기	연말~연초			사업시행기관		육류유통조사전문 기관		
관련자료								

330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예산 (백만원)	1,759
사업목적	○ 조사료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통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대					
사업 주요내용	○ 조사료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통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대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소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474	35,118	3,518	3,518	
	국 고	2,237	1,759	1,759	1,759	
	지방비	2,237	1,759	1,759	1,75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31

조사료공급활성화 유통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조사료공급활성화 유통비 지원			예산 (백만원)	2,160			
사업목적	○ 유통비 지원을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급 조사료 증산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유통비 지원을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급 조사료 증산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p>○ 지원내용 및 기준 - (장거리 운송비) 지원대상은 품질 C등급 이상 조사료(짚류제외)를 타 시·군으로 50km이상* 유통할 경우 실운송비의 30%~40% 지원(30원/kg 한도)</p> <p>* 50km~100km 미만 → 실운송비의 30%, 100km이상 → 실운송비의 40%</p> <p>- 공급조합(경영체 포함)과 구매조합간 거리가 온라인 지도상 50km 이상 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동 기준에 의한 거리가 50km 미만인 경우 실운송거리가 50km 이상이 되면 지원 가능</p> <p>- 실운송비는 운송업체에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된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p> <p>○ (생산구축비) 생산주체에서 양질의 조사료(짚류제외)를 연간 1천톤이상 타 시·군 50km이상 유통 시 생산구축비 지원 (5원/kg)</p> <p>○ (유통촉진비) 조사료 대량 사용처인 TMR공장이 생산주체로부터 국내산 조사료(짚류제외)를 연간 5백톤이상 구매 시 유통촉진비 지원 (10원/kg)</p> <p>- 단,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지원 제외 원칙</p> <p>*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은 해당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소비</p>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7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600	9,600	7,200	7,200			
	국 고	2,880	2,880	2,160	2,160			
	자부담	6,720	6,720	5,040	5,0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최윤종		044-201-2356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32

축산물 거래증명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 거래증명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예산 (백만원)	1,293			
사업목적	○ 축산물의 품질·인증·위생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9종의 거래증명서류를 1종으로 간소화하여 유통업계의 서류관리비용 절감으로 유통효율화								
사업 주요내용	○ 거래증명통합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 - 가축 및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증명서·인증서 등을 통합 조회·발급 9종의 거래 증명서류를 1종의 통합증명서로 간소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물품질평가원, 민간이전-민간자본보조(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1,293	-				
	국 고	-	-	1,293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김지훈		044-201-2323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자료									

333

축산물 온라인가격비교 플랫폼 구축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 온라인가격비교 플랫폼 구축			예산 (백만원)	782		
사업목적	○ 산지·도매·소매 등 각 단계별 축산물 가격정보를 수집·제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 및 거래지표 제공						
사업 주요내용	○ 산지·도매·소매가격 등 축산물 관련가격을 수집·제공할 수 있는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 구축·운영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물품질평가원, 민간이전-민간자본보조(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782	-		
	국 고	-	-	782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김지훈		044-201-2323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자료							

334

축산물가격조사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가격조사			예산 (백만원)	85		
사업목적	○ 산지가격, 도매가격 조사						
사업 주요내용	○ 산지가격 4품목 19종류(67개 축협), 도매가격 2품목 2종류(9개 축협) 조사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47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조사비						
지원한도	○ 국고보조 10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5	85	85	85		
	국 고	85	85	85	8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반기별 신청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						

335

축산물등급판정 운영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품질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등급판정 운영			예산 (백만원)	14,115		
사업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 유통 원활화, 가축개량 촉진을 위해 등급판정을 실시						
사업 주요내용	○ 국내산 축산물(소, 돼지, 닭, 계란, 오리)의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본 경비를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5조 및 제36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물품질평가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등급판정에 드는 경비 중 등급판정 수수료로 충당하는 경비 외 나머지 경비)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58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42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2,885	23,367	24,435	24,435		
	국 고	12,549	12,799	14,115	14,115		
	자부담	10,336	10,568	10,320	10,3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김지훈		044-201-2323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자료							

336

축산물등급판정 장비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품질관리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등급판정 장비지원	예산 (백만원)	2,581						
사업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 유통 원활화, 가축개량 촉진을 위해 등급판정을 실시								
사업 주요내용	○ 국내산 축산물(소, 돼지, 닭, 계란, 오리)의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장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5조 및 제36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물품질평가원, 민간이전-민간자본보조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89	421	2,581	2,581				
	국 고	1,189	421	2,581	2,58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김지훈		044-201-2323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자료									

337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운영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운영		예산 (백만원)	70				
사업목적	○ 축산물 수급안정정책, 산업발전방안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사업 주요내용	○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국 고	140	70	70	28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김민호		044-201-2335		
신청시기	연초			사업시행기관		축산물수급조절협 의회		
관련자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사업 운영지침							

338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예산 (백만원)	86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신뢰 확보를 통해 축산물 소비촉진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 도축장, 집유장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수준 향상과 사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 조직을 갖춘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단체 등 13개 단체에서 축산물 소비촉진, 축산 시책 관련 홍보, 교육, 조사 사업 등을 수행 ○ 전국 도축장 및 집유장 대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사항을 소비자 단체를 통해 평가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 회원, 지회, 지부 등을 보유한 13개 소비자단체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서울YWCA,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영양사협회,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 100%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 단체별 사업비 55백만원, 평균운영비 20백만원 *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2개 단체 10백만원 인센티브, 하위 2개 단체 10백만원 패널티 배정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 1개 소비자단체 7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801	1,981	860	860			
	국 고	1,801	1,981	860	8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본부		축산정책과 고객홍보팀 방역정책과 위생검역부		홍성현 김태성 이동식 반광훈		044-201-2329 044-410-7082 044-201-2541 044-550-5573		
신청시기	정기(매년 상반기)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		
관련자료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시행지침서 참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							

339

축산물유통실태조사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유통실태조사			예산 (백만원)	322			
사업목적	○ 축산물 유통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유통현안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 수집·조사·분석							
사업 주요내용	○ 유통조사 품목 및 경로 등 기본조사, 도축장, 전통시장, 우수유통업체등 심층조사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물품질평가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30	300	322	322			
	국 고	230	300	322	32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김지훈		044-201-2323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자료								

340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			예산 (백만원)	3,000			
사업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식육판매점포(검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용자 3) 이내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	용자	3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00	13,300	10,000	10,000			
	국 고	6,000	4,000	3,000	3,000			
	용 자	6,000	4,000	3,000	3,000			
	자부담	8,000	5,300	4,000	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15.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41

축산자조금 운영사업

세부사업명	축산자조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자조금 운영		예산 (백만원)	26,000				
사업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발전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안정, 조사연구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2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축산단체							
지원한도	○ 국고보조50%(농가거출금의 100%범위내 매칭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00	52,000	52,000	52,000			
	국 고	25,000	26,000	26,000	26,000			
	자부담	25,000	26,000	26,000	26,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당해연도 수시			사업시행기관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		
관련자료	축산자조금운영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42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홍보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397				
사업목적	○ 친환경 가치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이해와 신뢰 제고를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한 대중 매체 홍보, 책자 제작 등 홍보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인증 제도 활성화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지원한도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등 397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97	397	397	397			
	국 고	397	397	397	39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친환경농업과 소비촉진실		이윤식 제수만		044-201-2439 044-861-8852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							

343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학교우유급식 지원			예산 (백만원)	37,016			
사업목적	○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국내 원유수급안정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우유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지원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60	지방비	4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5,780	61,705	61,705	246,820			
	국 고	33,468	37,016	37,016	148,064			
	지방비	22,312	24,689	24,689	98,75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김정희		044-201-2341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학교		
관련자료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44

한국형메쓰거라이 경영컨설팅사업

세부사업명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한국형 메쓰거라이 경영컨설팅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지방부위 소비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 추진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의 업종전환 및 신규창업자 등에 대해 영업 초기 매장설계와 제품생산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 애로사항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여 경영안정화 및 조기정착 구현 							
사업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기존사업자(식육판매업자 등)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창업 및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및 기술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기반 이론, 실습 등 집합컨설팅과 기존 영업점 또는 신규개설 영업점에 대한 현장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지원자에 개별맞춤형 매장설계, 설비, 제품생산 및 조리, 매장운영, 마케팅 등에 관한 경영컨설팅 비용 50% 국고지원 							
국고보조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식품산업진흥법」 제15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수행기관 : 컨설팅 수행기관 자격기준(공고)을 갖춘 법인(기업) ○ 컨설팅 신청업체 : 식육판매점 사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전환 및 창업자 (개인 및 업체)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신청업체별 2백만원(국고보조 50%) ○ 컨설팅 사업운영비 6백만원(국고보조 100%) 							
재원구성(%)	국고	51.5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48.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10	390	194	533			
	국 고	210	200	100	273			
	자부담	200	190	94	2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육가공협회	축산정책과 한국육가공협회		홍성현 최진성		044-201-2329 02-588-1264			
신청시기	- 컨설팅 수행기관 : 정기(매년 2~4월) - 컨설팅 신청업체 : 수시		사업시행기관		(사)한국육가공협회			
관련자료	한국형메쓰거라이 경영컨설팅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사)한국육가공협회 홈페이지(www.kkkk.go.kr)							

345

공공동물장묘시설지원

세부사업명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예산 (백만원)	900				
사업목적	○ 반려동물 소유자 장례비 부담완화, 불법 매립·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지역 님비현상 극복 등 성숙한 동물장묘문화 조성 - 연간 발생하는 반려동물 사체 및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안락사되는 유기동물의 사체 화장 처리							
사업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용수·전가도로 등 기반조성, 동물장묘시설 설치비 및 시설부대비, 동물 화장로 신설비 * 다만, 사업부지는 지자체에서 자체비용으로 확보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 시·군·구							
지원한도	○ 총사업비 개소당 5,00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70%, 1년차 30%)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7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합 계	-	3,000	7,000	-			
	국 고	-	900	2,100	-			
	지방비	-	2,100	4,9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박종현 이명아		044-201-2366 044-201-2362		
신청시기	'17. 1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346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세목	자치단체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예산 (백만원)	780					
사업목적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등 정책효과 거양							
사업 주요내용	○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국고보조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자격요건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실시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80%							
지원한도	○ 국고 78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8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3,900	-			
	국 고	-	-	780	-			
	지방비	-	-	3,12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이승환 이승윤		044-201-2364 044-201-2365		
신청시기	`17.10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347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예산 (백만원)	540		
사업목적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 농촌관광 승마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지원한도	○ 총 사업비 범위내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0	500	1,800	1,800			
	국 고	45	150	540	540			
	지방비	45	150	540	540			
	자부담	60	200	720	7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축산정책과 승마활성화부		한병윤 최현주		044-201-2325 02-6006-3692		
신청시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이동제한 등에 따라 농가 피해 발생시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							
사업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 자금 지원, ○ 방역대 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출하지연, 입식지연 등 피해 농가 소득 안정자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 ○ 방역대 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출하지연, 입식지연 등 피해 농가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43	143	143	572			
	국 고	100	100	100	400			
	지방비	43	43	43	17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구제역방역과		박순홍 신소연		044-201-2345 044-201-2518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349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축산직불		예산 (백만원)	17,153				
사업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종류별(유기, 무항생제) 직불금 지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2~제23조의8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6. 11. 1. ~ '17.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17,757	17,153	17,153	17,153			
	국 고	17,757	17,153	17,153	17,15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이수한 주무관 박수연		044-201-2381 044-201-2382 044-201-238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 장 박은엽 사무관 김현태 주무관 배승호		054-429-4071 054-429-4072 054-429-4079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인증담당자				
신청시기	매년 별도 공지			사업시행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자료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V. 식품분야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350

GAP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GAP 교육 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450			
사업목적	○ 농산물과 농업환경의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GAP제도 현장 전문인력 육성 및 내부심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내부심사자 등 GAP 현장 전문인력 육성 및 인증심사원 역량 강화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품질관리법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GAP 컨설턴트, 내부심사자, 품목별 GAP 전문농업인 및 GAP 인증심사원 등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	-	450	450			
	국 고	-	-	450	4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사무관 조용준 주무관 주동운		054-429-4172 054-429-4173		
신청시기	별도 공지			사업시행기관		미지정		
관련자료								

351

GAP생산여건 조성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GAP생산여건 조성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GAP인증 희망농업인의 GAP 교육,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인증신청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해 GAP인증 생산기반 확대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제도인 농산물우수관리(GAP)의 확산을 위해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GAP 교육, GAP실천요령, 위해요소 관리 및 GAP인증 신청 지원 등의 인증 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활성화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GAP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500	500	500	500				
	국 고	500	500	500	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주동운		054-429-4173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직접공모		
관련자료									

352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		예산 (백만원)	1,050				
사업목적	○ GAP 인증시설 확대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처리시설에의 위생관리시설 보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p>○ 지원대상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자</p> <p>○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p>*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p> <p>○ 우선지원 -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대상자 - '17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및 확대계획을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p>							
지원한도	○ 300백만원 이내/개소							
재원구성(%)	국고	30%, 50%	지방비	20%, 50%	융자	-	자부담	50%
	* 국고 : (생산자단체) 30% (시장군수) 50% * 지방비 : (생산자단체) 20% (시장군수) 50% * 자부담 : (생산자단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0	3,500	3,500	(계속)			
	국 고	1,500	1,050	1,050	-			
	지방비	1,000	700	700	-			
	자부담	2,500	1,750	1,75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과 장 정혜련 사무관 이원형		044-201-2271 044-201-22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사무관 조용준		054-429-4172		
신청시기	정기(당해연도 2.28.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GAP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53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지원				예산 (백만원)	770			
사업목적	○ GAP인증제도 홍보 강화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GAP 인증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업인의 GAP인증제도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통한 소비자의 건강 보호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소비자·유통자·생산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 송출,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인증농가 현장체험, GAP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GAP인증 농산물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770	770	770	770				
	국 고	770	770	770	77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사무관 조용준 주무관 주동운		054-429-4172 054-429-4173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								

354

GAP인증기관 운영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GAP인증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 (백만원)	1,910			
사업목적	○ GAP인증 확대 추진을 위한 GAP 민간인증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적 운영비를 기관별 인증농가수, 인증농가 증가율, 교육·홍보 추진 등 실적 반영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GAP인증기관, 사)한국GAP협회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1,740	1,910	1,910	1,910			
	국 고	1,740	1,910	1,910	1,9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사무관 조용준 주무관 이동규		054-429-4172 054-429-4174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GAP 민간인증 기관		
관련자료								

355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예산 (백만원)	2,000			
사업목적	○ GAP인증 참여농가가 부담하는 토양, 용수, 농산물의 안전성검사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완화 및 인증 참여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GAP인증 농가가 인증의 신청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부담하는 토양, 용수 및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에 소요되는 검사비를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GAP인증 참여 농업인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2,000	2,000	2,000	2,000			
	국 고	2,000	2,000	2,000	2,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사무관 조용준 주무관 이동규		054-429-4172 054-429-4174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356

건전한 식생활 확산(민간보조)사업

세부사업명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건전한 식생활 확산(민간보조)			예산 (백만원)	3,104			
사업목적	○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바른 식생활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회적비용 절감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교육 추진을 위해 영유아 등 어린이, 학생 등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고령자·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추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전 국민							
지원한도	○ 민간경상보조(10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국 고	3,529	4,023	3,104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사무관 이주영 주무관 나승원		044-201-2272 044-201-2273		
신청시기	수시(각 내내역사업 별 진행)			사업시행기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		
관련자료								

357

건강한 식생활 확산(지자체보조)사업

세부사업명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세목	자치단체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건강한 식생활 확산(지자체보조)				예산 (백만원)	2,400		
사업목적	○ 지역단위 바른 식생활교육을 통해 사회적비용 절감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지자체의 바른식생활 관심제고 및 확산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적 학교, 학생, 학교급식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 식습관 교육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지자체 주민							
지원한도	○ 자치단체보조(50%)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400	4,800	4,800	(계속)			
	국 고	1,700	2,400	2,400	-			
	지방비	1,700	2,400	2,4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사무관 이주영 주무관 나승원		044-201-2272 044-201-2273		
신청시기	수시(각 내내역사업 별 진행)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358

국산 농축산물 구매 이행보증보험사업

세부사업명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강화			세목	민간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국산 농축산물 구매 이행보증보험			예산 (백만원)	25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한 중소 식품·외식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구매자금 확보 및 국산원료 사용 활성화 분위기 정착 ○ 지역농협, 생산자 단체, 도·소매점 등 식품업계와 직거래 확대로 농업계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기반 마련 							
사업 주요내용	○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중소 식품·외식업체에 대해 신용 거래 보증 및 보증수수료 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계약재배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50~100%)							
지원한도	○ 보증보험 신청 업체 당 보험수수료(요율 협의 중)의 50%지원 - 업체당 최대 보증한도 5천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50	600	600	600			
	국 고	250	600	600	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정책과 식품기획부		홍석구 김승찬		044-201-2118 061-931-0712		
신청시기	상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							

359

김치 자조금사업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김치 자조금			예산 (백만원)	250			
사업목적	○ 우리나라 김치 산업의 자생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김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 김치산업진흥법 제19조(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김치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라 구성된 자조금조성 단체							
지원한도	○ 자조금 조성액 매칭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조금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00	500	500	500			
	국 고	200	250	250	2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진흥부		곽기형 사무관 이희연 주무관 박나영 과장		044-201-2138 044-201-2139 061-931-0733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김치자조금협회		
관련자료								

360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예산 (백만원)	800				
사업목적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통합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소비 촉진							
사업 주요내용	○ 농식품부 소관 국가인증 농식품의 통합 홍보 및 소비자 인지도조사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수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한도	○ 민간경상보조 10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68	800	800	800			
	국 고	868	800	800	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식생활소비정책과 소비촉진실		곽재은 제수만		044-201-2277 044-861-8852		
신청시기	비공모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361

농식품 소비정보교류사업

세부사업명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식품 소비정보교류				예산 (백만원)	838		
사업목적	○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및 소비자 소통채널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한 농식품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제철 농산물 포스터 제작, 소비자단체 협력 교육·홍보, 농식품 소비자 전문 교육강사(농사랑알리미) 양성, 소비자 정책포럼 및 간담회 개최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민							
지원한도	○ 민간경상보조 10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30	1,030	838	838			
	국 고	1,030	1,030	838	83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식생활소비정책과 소비촉진실			김희연 제수만		044-201-2275 044-861-8852	
신청시기	비공모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362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

세부사업명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식품 스마트소비				예산 (백만원)	340		
사업목적	○ 소비자 교육이 지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에 대한 합리적 소비 문화 조성 및 우리 농산물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안전 농산물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역 소비자를 중심으로 교육·홍보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비자단체							
지원한도	○ 자치단체경상보조 50%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80	680	680	680			
	국 고	340	340	340	340			
	지방비	340	340	340	3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김희연		044-201-2275		
신청시기	'18.3~4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관련자료								

363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예산 (백만원)	429					
사업목적	○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유통 활성화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지리적표시 등록 농식품 유통활성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 관리) 및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자(단체)							
지원한도	○ 민간경상보조 10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79	579	429	429			
	국 고	579	579	429	42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식생활소비정책과 소비촉진실		곽재은 안미주		044-201-2277 044-861-8853		
신청시기	비공모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364

농식품소비정보망 이용활성화사업

세부사업명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식품소비정보망 이용활성화			예산 (백만원)	519			
사업목적	○ 소비자에게 제철 농식품 영양, 가격, 요리법, 식생활 등 다양한 농식품 소비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사업 주요내용	○ 농식품소비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 운영 및 농식품 정보매거진 '농식품 소비 공감' 발간으로 소비자에게 제철 농식품 영양, 가격, 요리법, 농촌체험, 농식품 트렌드, 귀농귀촌 등 다양한 농식품 소비정보 제공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3조(정보제공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민							
지원한도	○ 민간경상보조 10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03	603	519	519			
	국 고	603	603	519	51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식생활소비정책과 소비촉진실		김희연 임다영		044-201-2275 044-861-8855		
신청시기	비공모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관련자료								

365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 전통방식으로 제조된 발효식품으로부터 추출한 유용균주를 업체에 보급하고 한국형균주를 활용한 전통식품 개발지원을 통해 발효식품산업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보급)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 유용균주 보급 ○ (제품화) 공급받은 유용균주를 활용하여 전통식품 개발 및 상품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용균주를 확보한 기관 및 유용균주를 활용할 수 있는 전통식품 업체							
지원한도	○ 자치단체경상보조 50%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100	200	200			
	국 고	-	100	200	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산업진흥부		조주현 문재훈		044-201-2134 061-931-0732		
신청시기	'18.2~3월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66

수출농산물 해외정보조사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수출인프라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수출농산물 해외정보조사 지원		예산 (백만원)	4,700			
사업목적	○ 국내외 농식품수출정보 조사 및 제공을 통한 수출확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통상환경 및 수출시장 동향, 수출유망품목 등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수출업체 등 수요자에게 정보제공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272	4,492	4,700	4,700		
	국 고	4,272	4,492	4,700	4,7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진흥과 수출정보부		신종갑 곽정화		044-201-2175 02-2600-1672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시스템 (www.kati.net)						

367

수출업체 맞춤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수출업체 맞춤지원			예산 (백만원)	63,751		
사업목적	○ 수출업체의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 추진						
사업 주요내용	○ 물류비, 보험, 통관, 해외인증, 농식품 수출바우처지원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제9조4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0조1항5(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출농가, 농식품 수출업체 등						
지원한도	○ 민간경상보조 50~90%						
재원구성 (%)	국고	50~90	지방비		용자		자부담 10~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64,929	63,341	1,634		
	국 고	-	1,634	1,634	1,63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진흥과 농산수수출부		유미랑 정규영		044-201-2981 061-931-0842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관련자료							

368

술 품질인증 신청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술 품질인증 신청비 지원			예산 (백만원)	40		
사업목적	○ 술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참여업체 신청 수수료 지원으로 업체 비용 부담 경감						
사업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제조업체의 품질인증 신청 심사비, 제품 시험검사비, 출장비 등 수수료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술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제조 업체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70	지방비		용자		자부담 30~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5	40	40	계속		
	국 고	45	40	4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정황균		054-429-4123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관련자료							

369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사업

세부사업명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예산 (백만원)	8,420			
사업목적	○ 아세안(+인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및 대외변수로 인한 수출액 변동 위험 관리 차원에서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및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추진							
사업 주요내용	○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미개척 시장 개척단 파견 등, 프론티어 업체 시장개척 활동지원),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권역별 소비자 선호 부합 제품 개발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지원한도	○ 민간경상보조 80~100%							
재원구성 (%)	국고	80~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0~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8,420	8,420	8,420			
	국 고	-	8,420	8,420	8,4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진흥과 시장다변화TF		박혜란 성시찬		044-201-2180 061-931-0880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370

식품기능성원료 등록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기능성식품산업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기능성 원료등록 지원	예산 (백만원)	125					
사업목적	○ 농업과 식품사업간 연계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 원료 개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기능성 개별인증등록(식약처)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컨설팅 등 지원 ○ 기능성소재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농업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한 사업자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지원한도	○ 과제당 지원규모 25백만원(국고보조는 12.5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254	250	1,530			
	국 고	-	129	125	780			
	자부담	-	125	125	7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진흥과 대사영양연구본부		김성만 양혜정		044-201-2132 063-219-9341		
신청시기	상시			사업시행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관련자료	식품기능성원료등록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ood.kr)							

371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기능성식품산업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품기능성평가 지원		예산 (백만원)	1,981				
사업목적	○ 농업과 식품사업간 연계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 前시험(세포·동물시험/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지원한도	○ 과제당 지원규모 1억원(국고보조는 6천만원)							
재원구성 (%)	국고	6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880	3,482	3,081	10,782			
	국 고	2,740	2,507	1,981	6,582			
	자부담	1,140	975	1,100	4,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진흥과 대사영양연구본부		김성만 양혜정		044-201-2132 031-780-9341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관련자료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ood.kr)							

372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2,150			
사업목적	○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및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등							
지원한도	○ 지원기준 : 개소당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사업신청) 한도 :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0	7,000	7,000	7,000			
	국 고	1,500	2,100	2,100	2,100			
	지방비	1,500	2,100	2,100	2,100			
	자부담	2,000	2,800	2,800	2,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자치단체	식품산업진흥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경기 농식품유통과 충북 원예유통식품과 충남 농업정책과 전북 농식품산업과 전남 농식품유통과 경남 농산물유통과 경북 FTA농식품 유통대책단 강원 유통원예과		사무관 광기형 주무관 이희연 차 장 문재훈 주무관 이대운 주무관 윤명상 주무관 조민구 주무관 김철성 주무관 김송원 주무관 이명근 주무관 심재용 주무관 김대혁		044-201-2138 044-201-2139 061-931-0732 031-8008-4445 043-220-3673 041-635-4002 063-280-3675 061-286-6461 055-211-6433 054-880-3349 033-249-2716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월말~9월중)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치단체			
관련자료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73

식품외식정보분석사업

세부사업명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품외식정보분석			예산 (백만원)	1,681			
사업목적	○ 식품산업 통계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식품·외식기업 등에 정보제공							
사업 주요내용	○ 국내외 식품산업통계 생산기관의 기초통계(통계청, 식약처, 한국은행, Canadean 등) 수집·분석, 식품산업 통계 DB 구축(국제 원자재 선물가격, 가공식품 품목 가격동향 등), 국가승인통계 작성·배포, 가공식품 품목별 시장현황 분석 등 (키워드) 식품통계, 원료소비 실태,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 국가승인통계, FIS운영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 외식산업진흥법 제11조(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원자격 및 요건	○ 식품외식업계, 일반 소비자 /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 100%							
지원한도	○ 식품산업 정보분석 : 1,145백만원 ○ 외식산업 정보분석 : 536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955	1,955	1,681	1,681			
	국 고	1,955	1,955	1,681	1,68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외식산업진흥과		임정근 도경록		044-201-2123 044-201-2157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관련자료								

374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사업

세부사업명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가공원료매입·시설현대화·외식업체육성·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예산 (백만원)	115,280				
사업목적	○ 식품제조·가공·외식업체의 시설현대화와 국내산 농산물 매입지원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							
사업주요내용	○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가공원료 매입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및 판로확대 지원							
국고보조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지원한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업체당 최대 50억원 ○ 외식업체육성지원 : 업체당 최대 시설자금 1억원 ○ 운영자금 5억원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업체당 최대 30억원 ○ 농공상용합형기업지원 : 업체당 최대 40억원(운영자금만 지원 시 20억원)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7,440	144,336	138,336	157,440			
	용 자	131,200	120,280	115,280	131,200			
	자부담	26,240	24,056	23,056	26,2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하경희 사무관 광기형 과 장 이규민 사무관 안정은		044-201-2131 044-201-2138 044-201-2151 044-201-215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정책금융부		부 장 김용광		061-931-1140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		과 장 임선국 팀 장 조현중		061-931-1141 02-2080-8551			
신청시기	정기(당해연도 2월~4.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시행지침서 참조							

375

외식기업 수출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수출인프라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외식기업 수출지원				예산 (백만원)	1,100			
사업목적	○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산 식재료 수출 및 신규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효과 창출								
사업 주요내용	○ 국제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지원 및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100	3,100	1,100	1,100				
	국 고	3,100	3,100	1,100	1,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산업진흥과 구미수출부			도경록 유명근		044-201-2157 061-931-072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376

외식산업 경영 안정화사업

세부사업명	푸드서비스 선진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외식산업 경영 안정화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 외식경영자 대상 역량향상을 통한 외식경영 안정 및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 외식경영자 대상 기업체 경영개선, 재무관리, 인력관리, 마케팅 등 전문교육						
국고보조 근거법령	○ 외식산업진흥법 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외식산업진흥법 제13조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외식사업자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80~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0~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0	0	560	560		
	국 고	0	0	500	500		
	자부담	0	0	40	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외식산업진흥과 외식진흥부		정성문 유명근		044-201-2154 061-931-0721	
신청시기	정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푸드서비스 선진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예산 (백만원)	700		
사업목적	○ 외식 창업 지원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주요내용	○ 외식 창업에 앞서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영업장소 및 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외식산업진흥법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또는 예비 창업자						
지원한도	○ 총 집행금액의 70% 지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용자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0	200	1,000	1,000		
	국 고	0	100	700	700		
	자부담	0	100	300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외식산업진흥과 외식진흥부		정성문 유명근		044-201-2154 061-931-0721	
신청시기	정기(전년 11월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외식창업인큐베이팅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78

우수식재료 소비확대사업

세부사업명	푸드서비스 선진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예산 (백만원)	250			
사업목적	○ 외식산업을 통한 국산식재료 소비확대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레스마켓 설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외식산업진흥법 제16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외식업체, 국산 식재료 소비확대 실적(또는 계획) 평가							
지원한도	○ 총 집행금액의 50% 지원 - 레스마켓 설치지원 사업 : 250만원 한도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 500만원 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용자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0	400	400	400			
	국 고	0	200	200	200			
	자부담	0	200	200	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외식산업진흥과 외식진흥부		정성문 손근용		044-201-2154 061-931-0728		
신청시기	정기(2~3월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우수식재료 소비확대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79

주산지GAP안전성분석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주산지GAP안전성분석 지원		예산 (백만원)	5,308				
사업목적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주산지 중심 토양, 용수에 대한 안전성 분석 지원 * 추진 방식: 지자체별 분석기관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 ○ 수행기관: GAP 인증기관 ○ 지원자격 및 요건: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지원한도	○ 250천원/점(토양 117, 용수 133)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2,000		10,508		10,508		
	국 고	6,000		5,508		5,508		
	지방비	6,000		5,008		5,00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과 장 정혜련 사무관 이원형		044-201-2271 044-201-22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사무관 조용준		054-429-4172			
신청시기	정기(당해연도 2.28.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380

판매조직 육성사업

세부사업명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판매조직 육성			예산 (백만원)	3,790			
사업목적	○ 품목별 수출 전문 판매조직인 수출선도조직 육성 및 품목별 수출협의회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 수출선도조직 확대, 선도조직 대상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제9조4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0조1항5(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출농가, 농식품 수출업체 등							
지원한도	○ 민간경상보조 50~90%							
재원구성 (%)	국고	50~9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10~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3,390	3,790	3,790			
	국 고	-	3,390	3,790	3,79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진흥과 농산수수출부		조경규 박일상		044-201-2176 061-931-082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							

381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용자)사업

세부사업명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세목	기타 민간용자금		
내역사업명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예산 (백만원)	8,360		
사업목적	○ 직거래·계약재배 등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사업 주요내용	○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식재료로 공급하는 농축산물 구매자금 용자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지원한도	○ 용자 80%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800	8,360	8,360	8,360			
	국 고	8,800	8,360	8,360	8,3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생활소비정책과 사이버거래소		김희연 전이림		044-201-2275 02-6300-1794		
신청시기	'18.3~4월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382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사업

세부사업명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예산 (백만원)	12,106			
사업목적	○ 한식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 주요내용	○ 국내기반정립, 음식관광활성화, 전문인력양성, 한식해외확산 등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 제2항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2(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732	10,537	12,106	(12,106)			
	국 고	10,732	10,537	12,106	(12,10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외식산업진흥과 경영기획부		안정은 우승완		044-201-2155 02-6300-2080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식진흥원		
관련자료	-							

383

해외냉동냉장운송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수출인프라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해외냉동냉장운송지원			예산 (백만원)	3,700			
사업목적	○ 수출농식품 해외물류 지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및 신규시장 개척지원							
사업 주요내용	○ 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중국 콜드체인 구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식품산업 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50~9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9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10~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250	3,700	3,700	3,700			
	국 고	3,250	3,700	3,700	3,7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진흥과 수출정보부		신종갑 윤상영		044-201-2175 061-931-0862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384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세부사업명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예산 (백만원)	2,585		
사업목적	○ 산채를 기반으로 생산과 R&BD 및 휴식, 체험활동 등이 집적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채식품산업의 고도화 추진							
사업 주요내용	○ (한국산채개발원) 연구개발, 교육,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 수익사업 등 ○ (영양산채건강지구) 산채생산, 저장, 교육, 체험 등 ○ (양구산채생산힐링지구) 산채생산, 저장, 가공, 체험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35조, 제5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산채개발원) 경상북도 영양군, 국비 100% ○ (영양산채건강지구) 경상북도 영양군, 국고 50% : 지방비 50% ○ (양구산채생산힐링지구) 강원도 양구군, 국고 50% : 지방비 50%							
지원한도	-							
재원구성(%)	국고	50~100	지방비	0~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	5,735	3,114	45,737			
	국 고	500	2,678	2,585	30,192			
	지방비	-	3,057	529	15,54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영양군 강원도 양구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미래전략사업추진단 농업정책과		김태형 신준환 임남재		044-201-2187 054-680-6581 033-480-238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강원도 양구군		
관련자료	-							

385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경상)사업

세부사업명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경상)				예산 (백만원)	10,191		
사업목적	○ 식품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연관 산업군 및 기관이 집적된 R&D 및 네트워크 중심의 수출지향형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R&D 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 구축 및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투자유치 비용							
국고보조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업지원시설 건축, 투자유치 등: 국고 50%, 지방비 50% ○ 기업지원시설장비: 국고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806	19,740	20,382	계속			
	국 고	5,903	9,870	10,191	계속			
	지방비	5,903	9,870	10,191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농식품산업과 식품클러스터지원과		김양일 이용상 유은미		044-201-2184 063-280-3661 063-859-395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전북도, 익산시		
관련자료	-							

386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자본)사업

세부사업명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자본)				예산 (백만원)	1,850		
사업목적	○ 식품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연관 산업군 및 기관이 집적된 R&D 및 네트워크 중심의 수출지향형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R&D 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 구축 및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투자유치 비용							
국고보조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업지원시설 건축, 투자유치 등: 국고 50%, 지방비 50% ○ 기업지원시설장비: 국고 100%							
지원한도	해당없음							
재원구성(%)	국고	50~100	지방비	0~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2,484	1,850	1,850	계속			
	국 고	10,742	1,850	1,850	계속			
	지방비	1,742	-	-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농식품산업과 식품클러스터지원과		김양일 이용상 유은미		044-201-2184 063-280-3661 063-859-395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전북도, 익산시		
관련자료	-							

세부사업명	기능성식품산업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기능성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예산 (백만원)	530			
사업목적	○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원료등록 컨설팅,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등 체계적 산업육성							
사업 주요내용	○ 기능성 농식품 자원 및 산업실태조사 농식품자원 기능성 DB구축 기능성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보조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530		530		
	국 고	-		530		53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김성만 서희정		044-201-2132 044-201-2133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농림수산교육문화 정보원, aT		
관련자료								

388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활성화사업

세부사업명	중소식품기업 경쟁력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예산 (백만원)	2,035					
사업목적	○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융합(협력)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전용판매장 '농식품 찬들마루' 설치·운영, 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개최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등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한도	○ 민간경상보조 50~100%							
재원구성 (%)	국고	50~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0~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20	900	2,035	2,035			
	국 고	420	900	2,035	2,03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곽기형 사무관 이희연 주무관		044-201-2138 044-201-213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컨설팅부		유혜영 과장		02-6300-1643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389

농식품수출 생산기반 구축사업

세부사업명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식품수출 생산기반 구축			예산 (백만원)	3,823			
사업목적	○ 수출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수출전문단지 육성 등							
사업 주요내용	○ 농가 조직화교육, Global GAP 등 수입국이 요구하는 각종 인증교육, 안전성검사, 검역관 초청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제9조4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0조1항5(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출농가, 농식품 수출업체 등							
지원한도	○ 민간경상보조 50~100%							
재원구성 (%)	국고	50~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0~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3,703	3,823	3,823			
	국 고	-	3,703	3,823	3,82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진흥과 농산수출부		조경규 장정호		044-201-2176 061-931-0822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390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민간)사업

세부사업명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세목	민간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민간)			예산 (백만원)	250			
사업목적	○ 농업계와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주요내용	○ 농업과 기업 간 연계 활성화와 지자체 사업관리, 모니터링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계약재배 및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50	600	600	600			
	국 고	250	600	600	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정책과 식품기획부		홍석구 김승찬		044-201-2118 061-931-0712		
신청시기	상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							

391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지자체)사업

세부사업명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지자체)				예산 (백만원)	1,200		
사업목적	○ 농업계와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주요내용	○ 농역 농업계와 기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계약재배 활성화 및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의 조달체계 구축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시, 도 50%)							
지원한도	○ 광역지자체(10개 시·도)별 50백만원 ~ 200백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400	3,000	4,000	4,000			
	국 고	1,200	1,500	2,000	2,000			
	지방비	1,200	1,500	2,000	2,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지자체(10개 시·도)		식품산업정책과		홍석구		044-201-2118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							

392

소스산업화센터건립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소스산업화센터건립지원			예산 (백만원)	250			
사업목적	○ 국내 소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센터건립							
사업 주요내용	○ 소스산업화센터건립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건립							
지원한도	○ 자치단체경상보조 50%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	6,700	250	250			
	국 고	200	6,700	250	2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식품산업진흥과 농식품산업과		조주현 이용상		044-201-2134 063-280-3661		
신청시기	해당없음			사업시행기관		전라북도		
관련자료								

393

식품수출지원센터 지원

세부사업명	할랄식품산업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품수출지원센터 지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 수정 필요)		예산 (백만원)	1,634				
사업목적	○ 할랄·코셔 식품시장 등 해외 유망시장에 대한 수출기반 구축 및 수출지원을 통해 국내 할랄·코셔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할랄·코셔 식품산업 육성 및 신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지원한도	○ 총사업비 범위 내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00	1,634	1,634	1,634			
	국 고	1,500	1,634	1,634	1,63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수출진흥과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박혜란 오승용		044-201-2180 031-780-9238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관련자료								

394

전략품목육성(10개품목)사업

세부사업명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전략품목육성(10개품목)		예산 (백만원)	3,000				
사업목적	○ 對중국 수출을 리드하는 농가소득과 연계성이 높은 對중국수출확대 가능 농식품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여 스타품목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제2파프리카(인삼·화훼·버섯·유자차·유제품)' 및 대중국 검역해소품목, 우리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으로 품목 등을 확대하고 품목별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400	4,400	3,000	3,000			
	국 고	3,400	4,400	3,000	3,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진흥과 중국수출부		정수연 고정희	044-201-2169 061-931-098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395

전통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전통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발효미생물 산업화용 생산시설 건립을 통한 국산우수종균 보급 활성화 및 발효식품의 상품성 강화						
사업 주요내용	○ 전통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발효미생물 산업화를 위한 종균연구시설 등 연계시설을 보유한 지자체						
지원한도	○ 자치단체자본보조 50%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500	3,500		
	국 고	-	-	500	3,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조주현		044-201-2134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396

전통식품산업진흥사업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전통식품산업진흥	예산 (백만원)	1,110					
사업목적	○ 전통발효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수한 우리 전통 식문화 보존							
사업 주요내용	○ 전통가공식품 세분시장 조사, 김치품평회, 우수문화상품지정, 전통식품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홍보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김치산업진흥법 제1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식품업체, 관련 협회 등							
지원한도	○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320	2,300	1,110	1,110			
	국 고	2,320	2,300	1,110	1,1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산업진흥부		조주현 문재훈		044-201-2134 067-931-0732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련자료								

397

전통주산업진흥사업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지자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전통주 산업진흥	예산 (백만원)	3,82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 저변 확대 ○ 지역 우수 전통주 업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발효제 보급사업, 전통주 전문가 세미나, 전통주 유통 활성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대축제), 전통주 갤러리, 전통주 용기·표시·기술 연구, 우리술 사이트 운영 							
국고보조 근거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통주 제조 업체, 관련 협회, 컨설팅 업체, 지자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지원한도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세부사업별 예산에 따름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000	3,682	3,820	4,000			
	국 고	4,000	3,682	3,820	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진흥부		권준범 전민형		044-201-2137 061-931-073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전통주산업진흥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398

중소식품기업 진단 맞춤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중소식품기업 진단 맞춤지원			예산 (백만원)	2,000			
사업목적	○ 중소 식품업체의 품질수준을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HACCP, 경영·마케팅, 식품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국내 식품·외식기업의 경쟁력 향상							
사업 주요내용	○ 식품·외식,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마케팅, 인증, 상품화 등 기업 필요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컨설팅 후 맞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							
지원한도	○ 민간경상보조 50~60%							
재원구성 (%)	국고	50~6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40~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2,000	2,000			
	국 고	-	-	2,000	2,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기업컨설팅부		곽기형 사무관 이희연 주무관 신재훈 차장		044-201-2138 044-201-2139 02-6300-173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련자료								

399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제주)사업

세부사업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제주)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제주)				예산 (백만원)	6,797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농축산업 주체(농·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농식품경영체 육성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컨설팅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개발, R&D지원, 홍보 및 공동이용시설 구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 복수 사군, 도 단위의 농산학연관으로 구성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30억원(국고) 내외 ○ 재원별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20 (시설비)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628	12,948	13,594	계속			
	국 고	8,814	6,474	6,797	계속			
	지방비	8,814	6,474	6,797	계속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제주) 통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지역전략식품 담당과		김양일 지자체별 상이		044-201-2184 지자체별 상이		
신청시기	정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기한내)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사도, 사군구)		
관련자료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00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찾아가는 양조장			예산 (백만원)	96			
사업목적	○ 지역 우수 양조장을 발굴하여 인근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체험형 양조장으로 육성하며 지역의 융복합 농업자원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양조장의 농촌관광 연계 컨설팅 및 인테리어 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전통주 생산업체							
지원한도	○ 업체별 48백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한도 내 지원(4개 업체 선정)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96	96			
	국 고	-	-	96	96			
	지방비	-	-	96	96			
	자부담	-	-	48	4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진흥부		권준범 전민형		044-201-2137 061-931-0731		
신청시기	2분기(4~6월) 예정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01

향토산업육성사업(생활)사업

세부사업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향토산업육성사업(생활)				예산 (백만원)	14,440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연계한 지역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참여 농어가교육, 우수사례 벤치마케팅, 토론회 및 워크숍개최, 자문단운영, 사업단 운영,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경영, R&D,홍보마케팅중간 및 완료평가, 브랜드개발및 관리, 현장애로기술지원, 상품개발등 홍보프로그램운영, 유통전문조직구축 등 공동마케팅, 6차산업관련시설, 제도가공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협동조합 포함), 연구단체 등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이상)							
지원한도	○ 지구당 30억원(국고 50%, 지방비 등 50%)을 4년간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1,044	38,550	28,880	계속			
	국 고	20,522	19,275	14,440	계속			
	지방비· 자부담	20,522	19,275	14,44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시·도/시·군)		농촌산업과 지자체별 상이		신동원 지자체별 상이		044-201-1586 지자체별 상이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월 중),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02

향토산업육성사업(제주)사업

세부사업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제주)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향토산업육성사업(제주)			예산 (백만원)	2,240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연계한 지역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참여 농어가교육, 우수사례 벤치마케팅, 토론회 및 워크숍개최, 자문단운영, 사업단 운영,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경영, R&D,홍보마케팅중간 및 완료평가, 브랜드개발및 관리, 현장애로기술지원, 상품개발등 홍보프로그램운영, 유통전문조직구축 등 공동마케팅, 6차산업관련시설, 제도가공할수 있는 인프라구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협동조합 포함), 연구단체 등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이상)						
지원한도	○ 지구당 30억원(국고 50%, 지방비 등 50%)을 4년간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842	5,168	4,480	계속		
	국 고	1,921	2,584	2,240	계속		
	지방비· 자부담	1,921	2,584	2,24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산업과 식품원예특작과		신동원 이경민		044-201-1586 064-710-313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월 중),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03

GAP전문가양성교육 등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GAP전문가양성교육 등		예산 (백만원)	650				
사업목적	○ GAP 전문인력 양성 및 주산지 안전성분석 결과 관리 효율화로 농식품 안전 관리 강화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 유통·소비자 및 공무원(지자체, 중앙) 대상 GAP 교육 및 안전성분석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인, 유통업 종사자, 소비자, 자치단체 공무원 등 ○ 시행기관: 농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46	650	650	(계속)			
	국 고	446	650	65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과 장 정혜련 사무관 이원형		044-201-2271 044-201-22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사무관 조용준		054-429-4172		
신청시기	정기(당해연도 2.28.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404

김치 교육훈련기관 교육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김치 교육훈련기관 교육지원		예산 (백만원)	50				
사업목적	○ 다양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김치체험 교육 지원을 통해 김치 소비기반 확대 및 관심도 제고							
사업 주요내용	○ 김치 교육훈련기관의 김치효능, 역사·문화, 김치만들기 등 체험실습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교육운영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김치산업진흥법 제11조(교육훈련)							
지원자격 및 요건	○ 김치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관 선정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	50	50	계속			
	국 고	50	50	5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정황균		054-429-4123		
신청시기	정기(당해연도 2~3월 중)			사업시행기관		김치 교육훈련기관		
관련자료								

405

김치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김치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지원	예산 (백만원)	50			
사업목적	○ 김치 생산, 유통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산업인력의 전문성 및 품질관리 수준 제고					
사업 주요내용	○ 김치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김치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교육운영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김치산업진흥법 제12조(전문인력 양성)					
지원자격 및 요건	○ 김치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기관 선정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용자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	50	50	계속	
	국 고	50	50	5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정황균	054-429-4123	
신청시기	정기(당해연도 2~3월 중)			사업시행기관	김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관련자료						

406

대한민국식품대전사업

세부사업명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대한민국식품대전			예산 (백만원)	1,400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기회 제공 및 新식품트랜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 마련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 대한민국식품대전 개최를 위한 행사기획 및 진행, 행사장임차·설치, 홍보·운영관리비 등을 사업시행기관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및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보조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95	1,600	1,400	1,400			
	국 고	1,795	1,600	1,400	1,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최윤석 사무관 홍근훈 주무관		044-201-2112 044-201-21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컨설팅부		김의정 차장		02-6300-1642		
신청시기	사업공모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407

민관수출협의회운영사업

세부사업명	수출인프라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민관수출협의회운영		예산 (백만원)	750				
사업목적	○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의지 피력 및 농업계-식품업계 공강대 형성을 위해 정부-유관기관 및 수출업체 간 협의회 운영 등							
사업 주요내용	○ 민관합동 농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운영 및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 개최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식품산업 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20	750	750	750			
	국 고	620	750	750	7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진흥과 수출기획부		신종갑 심화섭		044-201-2175 061-931-081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협의회 등		
관련자료								

408

수출농식품홍보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수출인프라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수출농식품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36,296		
사업목적	○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신규 거래선 발굴, 제품, 브랜드, 회사 홍보를 통한 한국식품 해외 인지도 제고 및 소비저변 확대						
사업 주요내용	○ 홍보관 운영, 박람회 참가지원, K-FOOD페어 개최 등 수출농식품 홍보 마케팅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50~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0~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8,413	31,436	36,296	36,296		
	국 고	28,413	31,436	36,296	36,29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진흥과 구미수출부 아태수출부		신종갑 오성훈 이승훈		044-201-2175 061-931-0971 061-931-0962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						

409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수출인프라강화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예산 (백만원)	1,350		
사업목적	○ 수출유망품목에 대하여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여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수요 저변확대							
사업 주요내용	○ 각 지자체별 해외마케팅 수요를 조사하여 시도별 맞춤마케팅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치단체경상보조 5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00	1,500	1,350	1,350			
	국 고	1,000	1,500	1,350	1,3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자치단체(시·도)		수출진흥과 농업관련부서		신종갑 -		044-201-2175 -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410

식품명인 발굴 육성사업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품명인 발굴 육성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식품명인을 발굴, 육성하여 우리 전통 식문화 보존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식품명인 지정, 유통활성화 및 체험홍보, 교육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식품명인 및 (사)한국식품명인협회							
지원한도	○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0	300	300	300			
	국 고	300	300	300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산업진흥부		조주현 문재훈		044-201-2134 061-931-0732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련자료								

411

식품명인체험홍보관사업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품명인체험홍보관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식품명인체험홍보관 운영을 통한 전통 식문화의 홍보, 발전								
사업 주요내용	○ 식품명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식품명인제품 전시판매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식품명인 및 (사)한국식품명인협회								
지원한도	○ 세부운영계획에 따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00	500	500	500				
	국 고	1,000	500	500	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산업진흥부			조주현 문재훈		044-201-2134 061-931-0732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련자료									

412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교육 운영사업

세부사업명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교육 운영			예산 (백만원)	1,462			
사업목적	○ 식품·외식분야 직무역량 교육을 통해 맞춤형 전문인력 창출							
사업 주요내용	○ 식품·외식분야 대학생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창출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자격 및 요건	○ 청소년 및 청년층 /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 100%							
지원한도	○ 식품산업인력 역량강화 : 860백만원 ○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등 : 602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00	1,700	1,462	1,462			
	국 고	1,700	1,700	1,462	1,46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임정근		044-201-2123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관련자료								

413

우리술 교육훈련 교육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우리술 교육훈련 교육지원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일반인의 전통주에 대한 소양교육 및 제조방법 교육 지원을 통해 전통주에 대한 이해와 선호도 증대								
사업 주요내용	○ 전통주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이론 및 실습 교육 등 교육기관 운용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일반관리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훈련)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주 등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및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70~8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2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15	300	300	계속				
	국 고	315	300	30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정황균		054-429-4123		
신청시기	정기(당해연도 2~3월 중)				사업시행기관		전통주 등 교육훈련기관		
관련자료									

414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지원			예산 (백만원)	140			
사업목적	○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인력의 전문성 및 품질관리 수준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전통주 전문인력양성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이론 및 실습 교육 등 교육기관 운용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일반관리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전문인력 양성)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및 사업 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70~8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2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40	140	140	계속			
	국 고	140	140	14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정황균		054-429-4123		
신청시기	정기(당해연도 2~3월 중)			사업시행기관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관련자료								

415

유기가공인증컨설팅 및 유통활성화 등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유기가공인증컨설팅 및 유통활성화 등 지원			예산 (백만원)	380			
사업목적	○ 유기가공식품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 희망 업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유기가공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유기가공식품 인증 업체 및 인증 희망 업체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80	380	380	계속			
	국 고	380	380	38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이경아		054-429-4183		
신청시기	정기(당해연도 2~3월 중)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관련자료								

VI. 유통원예분야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416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예산 (백만원)	6,400			
사업목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한도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기준단가: 22천원/㎡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0,000	40,000	32,000	32,000			
	국 고	8,000	8,000	6,400	6,400			
	용 자	6,000	4,800	3,840	3,840			
	지방비	12,000	12,000	9,600	9,600			
	자부담	14,000	15,200	12,160	12,1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원예산업과 사·군·자치구 원예담당		사무관 김 상 업 -		044-201-2236 -		
신청시기	매년 1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자료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17

도매시장출하촉진(용자)

세부사업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용자)		세목	기타민간 기관용자금				
내역사업명	도매시장출하촉진(용자)		예산 (백만원)	45,000				
사업목적	○ 도매시장 유통관계자에 선도금, 결제자금 등 지원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및 농가소득 안정 유도							
사업 주요내용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 선도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73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							
지원한도	○ 선도금 : 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지급 금액을 배정비율로 산출 ○ 결제자금 : 전년도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을 배정 비율로 산출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7,000	50,000	45,000	45,000			
	용 자	67,000	50,000	45,000	4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시장지원부		사무관 김재경 부 장 김명수		044-201-2221 061-931-1040		
신청시기	정기(3월),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도매시장출하촉진(용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18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세부사업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용자)		세목	기타민간 기관용자금				
내역사업명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예산 (백만원)	20,0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공판장 등에 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 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73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의 산지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금 : 전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운용실적 해당금액 ○ 결제자금 : 전년도 거래실적의 1/12 이내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6,000	23,000	20,000	20,000			
	용 자	26,000	23,000	20,000	20,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유통정책과 농산물판매부(조합공판팀)		사무관 김재경 팀 장 명재완		044-201-2221 02-2080-8071		
신청시기	정기(3월말 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공판장(청과) 출하촉진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19

화훼유통개선지원(용자)

세부사업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용자)			세목	기타민간 기관용자금			
내역사업명	화훼유통개선지원(용자)			예산 (백만원)	15,000			
사업목적	○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선도금·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공판장의 출하 및 농가소득안정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사용용도 : 선도금, 결제자금 ○ 사업대상자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 화훼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등 ○ 지원조건 : 용자 100% * (선도금) aT공판장: 연리 2.5% 1년 상환, 농협공판장: 연리 3.0%, 1년 상환 (결제자금) aT공판장, 농협공판장: 연리 3% 1년 상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및 제73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선도금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농협공판장)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농협공판장)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 (소매유통업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유통업체 중 자체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지원한도	○ 선도금(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전년도 출하실적의 변경 90% 이내 - 신용대출은 50백만원 이내, 담보대출은 400백만원 이내 ○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전년도 경매실적의 50% 이내, 400백만원 이내 - (소매유통업체) 전년도 화훼류 매출액(과세표준, 자재포함)의 50% 이내, 400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3,000	20,500	15,000	75,000			
	용 자	23,000	20,500	15,000	7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이강권		044-201-226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관련자료	화훼유통개선지원(용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20

농산물수매지원(응자)

세부사업명	도매유통활성화	세목	기타민간 응자금					
내역사업명	농산물수매지원	예산 (백만원)	16,851					
사업목적	○ 국산 발 식량작물 수매 및 국산밀(밀가루) 구매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계약재배 활성화, 수요업체 경영안정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농협 및 농협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실수요업체, 계열화경영체·발작물공동경영체, 국산밀(밀가루) 가공업체에 원료 구매자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경제지주) 농업협동조합(경제지주 및 지역농협), 수요업체(가공업체, 주정생산업체 등 농협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실수요업체) * 단, 정부 수매자금을 지원받는 가공업체(실수요업체)와 계약한 지역농협은 수매자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계열화경영체 및 발작물공동경영체*, 국산밀 또는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가공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 계열화경영체 및 발작물공동경영체는 발작물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임							
지원한도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별 연간 10억원(단, 밀 가공업체는 30억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응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6,200	33,851	16,851	16,851			
	응 자	46,200	33,851	16,851	16,85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량산업과 양곡부 정책금융부		차은지 이미호 어영광		044-201-1835 02-2080-6293 061-931-1146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민간		
관련자료	농산물수매지원(응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21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세부사업명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세목	지자체 자본보조, 기타민간 기관용자금		
내역사업명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백만원)	24,527		
사업목적	○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개선하고 환경변화 따른 필요 시설 구축 등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화 제고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0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57조(기금의 용도), 제73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							
지원한도	○ 정부 승인한도 내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4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113	16,436	24,527	360,533			
	국 고	3,619	8,191	11,940	154,515			
	용 자	3,494	8,245	12,587	206,01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시장지원부			사무관 김재경 부 장 김명수		044-201-2221 061-931-1040	
신청시기	매년 1~3월				사업시행기관		도매시장개설자 (지자체)	
관련자료	공영도매시장현대화비용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market.okdab.com)							

422

과수ICT분야 시설보조사업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 보조			
내역사업명	과수ICT분야 시설보조			예산 (백만원)	800			
사업목적	○ ICT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사업 주요내용	○ 과수분야 ICT 시설(온습도 등 생육환경 모니터링 센서장비, 영상장비, 통합 제어장비, 센싱제어정보의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20%, 지방비30, 용자금30, 자담20							
지원한도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 사업비 상한액 기준: 2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640	3,640	3,640	10,920			
	국 고	800	800	800	2,400			
	지방비	1,200	1,200	1,200	3,600			
	용 자	840	840	840	2,520			
	자부담	800	800	800	2,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융합실		실 장 양종열 과 장 정명중		044-861-876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과수ICT분야 시설보조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2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예산 (백만원)	3,942		
사업목적	○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집하선별장, 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의시설, 가공시설 등 일괄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시군단위이상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이 가능한 운영 주체							
지원한도	○ 기본조사비 : 461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재원구성(%)	국고	50~40	지방비	40~30	용자	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920	8,600	7,884	35,600			
	국 고	6,148	3,740	3,942	17,800			
	지방비	5,388	3,180	3,942	17,800			
	자부담	6,384	1,680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유통조성처		부 장 김상백 차 장 안만물 계 장 김도형		061-931-102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24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예산 (백만원)	27,577	
사업목적	○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비절감 등 생산기반구축과 경쟁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고품질생산(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 생산비, 에너지절감시설, 재해예방시설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별 과수산업발전계획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농업경영체 *18년부터는 5년이내의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한도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						
재원구성 (%)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29,391	125,124	137,885	258,016		
	국 고	30,534	30,515	27,577	91,603		
	지방비	45,802	45,773	41,365	37,405		
	용 자	22,521	18,321	18,321	54,962		
	자부담	30,534	30,515	50,622	74,04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FTA기금관리팀		팀 장 안병희 차 장 윤용범		061-931-1120 061-931-1123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과 장 이미정		02-2080-758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25

과수생산유통지원(용자)사업

세부사업명	과수생산유통지원(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과수생산유통지원(용자)		예산 (백만원)	42,900				
사업목적	○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비절감 등 생산기반구축과 경쟁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과수관련 용자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m ²)당 18,0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과수농가 : 5ha, 농업법인 : 10ha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5,386	36,900	42,900	128,700			
	용 자							
	- 매매	30,900	30,000	36,000	108,000			
- 임대	5,388	6,900	6,900	20,7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부 장 이영훈 차 장 박근우 계 장 이정화		061-338-5885		
신청시기	수시(연중 가능)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과수생산유통지원(용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26

과수우량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우량묘목생산 기반조성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무병, 우량 과수묘목공급기반조성							
사업 주요내용	○ 과수 무병품종 선발 및 도입, 중앙모수포 증설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우량 보증묘목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무병원증 확보 및 보존·증식·공급을 담당하는 중앙과수묘목센터							
지원한도	○ 기반조성 : 500백만원 이내/개소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9,266	699	500	1,500			
	국 고	21,535	539	500	1,500			
	자부담	4,623	160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야묘목관리센터		상 무 김연순 과 장 김우섭		054-534-8003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과수농협 연합회		
관련자료	과수우량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27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예산 (백만원)	18,992				
사업목적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배수로,경작로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구축							
사업주요내용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원개발(관정,양수정 등), 경작로정비 등							
국고보조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FTA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지역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지원한도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재원구성(%)	국고	8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559	20,488	23,740	80,902			
	국 고	14,047	16,390	18,992	68,838			
	지방비	3,512	4,098	4,748	12,06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계획처		부 장 박진현 과 장 위재호 계 장 백민경		061-338-6191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비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428

기존 APC 선별, 포장시설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기존 APC 선별,포장시설 지원		예산 (백만원)	1,800				
사업목적	○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향상 및 부가가치제고							
사업 주요내용	○ 기존 APC 선별시설 등 증설보완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 운영중인 APC시설(증설 및 보완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설비,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2천톤이상의 과일전문 APC							
지원한도	○ 700백만원 이내/개소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000	15,000	6,000	21,000			
	국 고	2,700	4,500	1,800	6,300			
	지방비	2,700	4,500	1,800	6,300			
	자부담	3,600	6,000	2,400	8,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기존APC선별, 포장시설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29

꽃가루생산단지조성사업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꽃가루생산단지조성		예산 (백만원)	363				
사업목적	○ 과수인공꽃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사업 주요내용	○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장비 구입, 관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농협, 농업법인등							
지원한도	○ 725백만원(국비 362.5백만원 이내, 5ha/1개소 기준)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74	725	725	2,175			
	국 고	2,537	362.5	362.5	1,087.5			
	지방비	1,667	217.5	217.5	652.5			
	자부담	870	145	145	43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꽃가루생산단지조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3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예산 (백만원)	41,669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과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지원한도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1,000㎡이상 30,000㎡ 미만 ○ 그 외 시설 :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재원구성(%)	국고	20~60	지방비	20~30	용자	10~30	자부담	10~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8,757	116,550	103,190	309,570			
	국 고	35,984	33,952	30,304	90,912			
	지방비	32,001	31,927	28,053	84,159			
	용 자	28,490	28,439	24,789	74,367			
	자부담	22,281	22,232	20,044	60,1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044-201-2251		
				사무관 박혜민		044-201-2256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서정호		061-338-5651		
				부 장 심길웅		061-338-5701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31

산지유통시설지원(APC)(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산지유통시설지원(APC)(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19,165		
사업목적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보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된 사업자 ○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며, 통합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 인 사업신청자							
지원한도	○ 신규시설의 경우 최소 25~60억원 내외, 보완시설의 경우 최소 5~60억원 내외							
재원구성 (%)	국고	30~50	지방비	10~50	용자	-	자부담	0~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4,880	58,283	58,283	291,415			
	국 고	16,464	17,485	17,485	87,425			
	지방비	16,464	17,485	17,485	87,425			
	자부담	21,952	23,313	23,313	116,5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산지시설부		하성태 안만물		044-201-2224 061-931-1021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6.2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산지유통시설지원(APC)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32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

세부사업명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예산 (백만원)	3,500		
사업목적	○ 규모화 된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통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로 신선농산물 등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유도							
사업 주요내용	○ ICT 기술이 융복합된 생산유통 시설 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수, 전기, 부지정지,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농어촌정비법」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제108조(자금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공모 신청 지자체는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추진단을 구성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입주 경영체(스마트원예단지에 입주하여 온실을 경영하는 생산 주체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 등으로 구성							
지원한도	○ 10,000백만원 / 1개소(20ha 규모)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5,000	15,000	45,000			
	국 고	-	3,500	10,500	31,500			
	지방비	-	1,500	4,500	13,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사무관 박혜민		044-201-2256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서정호 부 장 한재욱		061-338-5721		
신청시기	정기(1월),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2018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공모계획('18년 1월 시행)							

433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시설원예 현대화	예산 (백만원)	32,379					
사업목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자재·설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류 등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또는 공동선별 참여 농업경영체							
지원한도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44,600	119,100	101,920	316,800			
	국 고	28,920	23,820	20,384	63,360			
	지방비	43,380	35,730	30,576	95,040			
	용 자	43,380	35,730	30,576	95,040			
자부담	28,920	23,820	20,384	63,3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사무관 박혜민		044-201-2251 044-201-2256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관련자료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34

식물백신산업화촉진센터건립

세부사업명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세목	자치단체지원보조	
내역사업명	식물백신산업화촉진센터건립				예산 (백만원)	250	
사업목적	○ 식물 단백질 개발부처 상용화까지 생산하는 시설 지원을 통해 국내 식물기반 식의약 소재시장 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식물재배시설 : GMP 수준의 식물공장 구축 ○ 소재추출시설 : 식물 재배를 통해 발현된 단백질, 백신소재 추출·분리·정제 가능 설비 구축 ○ 효능검증센터 : 모델 동물(실험쥐)을 활용한 효능검증 시설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고보조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기관 : 지자체(공모) ○ 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500	9,500		
	보 조	-	-	250	4,250		
	지방비	-	-	250	4,2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안정모 김윤아		044-201-2475 044-201-2476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지자체(공모)	
관련자료							

435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계속)			세목	자치단체자 본보조·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계속)			예산 (백만원)	1,145		
사업목적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 지원함으로써 조직화 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 주요내용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 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부문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이상 ○ 보완시설(신규) : 최근 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인 시설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지원한도	○ 신규시설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6억원/개소당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40~60	용자		자부담 1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100	2,100	3,150	9,885		
	보 조	630	630	1,145	3,380		
	지방비	860	860	1,290	3,805		
	자부담	610	610	915	2,7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손경문(인삼)		044-201-2239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사·도	사업대상자 : 3.31까지 사·군 담당자 신청 : 4.15까지 사·도 담당자 신청 : 10.31까지			사업시행지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36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3,33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농산물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 신규 설치 및 보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6년도 또는 '15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다만,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2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지원한도	○ 「사업시행지침」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참고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484	11,100	11,100	11,840			
	국 고	2,845	3,330	3,330	3,552			
	지방비	2,845	3,330	3,330	3,552			
	자부담	3,794	4,440	4,440	4,736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유통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등(직제에 따름)		사무관 이행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044-201-2219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37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312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사업주요내용	○ 원예농산물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 신규 설치 및 보수 지원							
국고보조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6년도 또는 '15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다만,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2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지원한도	○ 「사업시행지침」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참고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40	1,040	1,040	1,080			
	국 고	312	312	312	324			
	지방비	312	312	312	324			
	자부담	416	416	416	432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유통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등(직제에 따름)		사무관 이행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044-201-2219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38

저온유통체계구축(채소류 출하조절시설)(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저온유통체계구축(채소류 출하조절시설)(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3,600		
사업목적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 주요내용	○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무·배추, 마늘, 양파, 생강 등)을 대상으로 저온저장·예냉·가공시설 등 설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							
	구 분		무·배추	마늘	양파	기타		
	요 건		계약재배사업 참여			주산지 시군 소재		
	취급물량 (천톤)	전년도	5	1	3	관할 시군 출하량(생산량)의 5%		
3년내 확대		10	2	5	50% 이상 확대			
지원한도	○ 1개소 10,000백만원(1년차 40%, 2년차 60%) - 저온저장시설(3,300㎡) 4,000백만원, 예냉시설(330㎡) 400백만원 - 가공시설(3,300㎡) 4,000백만원, 위생설비 및 장비 등 1,6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2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000	14,000	12,000	-			
	국 고	2,700	4,200	3,600	-			
	지방비	2,700	4,200	3,600	-			
	용 자	2,800	2,800	2,400	-			
	자부담	2,800	2,800	2,4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원예산업과 시군구 원예담당		사무관 김상엽 -		044-201-2236 -		
신청시기	신규사업 종료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439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		예산 (백만원)	113				
사업목적	○ 절화류 고품질 생산으로 신선도 유지를 통해 소비자 신뢰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2010~2017년 기간 중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등 * 단, 개인출하농가는 공판장으로 습식출하를 하는 농가에 한함							
지원한도	○ 습식대차 900천원/대, 습식물통 30천원/통, 화훼포장망 13천원/망, 수명연장제 400천원/개 등 - 기준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 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집행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	200	226	678			
	국 고	100	100	113	339			
	자부담	100	100	113	33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이강권		044-201-226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관련자료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40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민간경상)사업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민간경상)				예산 (백만원)	2,500	
사업목적	○ 버섯배지원료의 원활한 공급 등을 통한 버섯산업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버섯배지관리센터(배지원료공급센터,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농협, 버섯배지 및 버섯생산 관련 법인 또는 조합) - (배지원료공급센터) 농업인 15인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농업인 5인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지원한도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 개소당 50억원 ○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 개소당 10~50억원(사업자 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액 결정) * 기성고(준공) 확인서 상의 실제 집행 금액에 대하여 국고 및 용자 지원						
재원구성 (%)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합 계	4,000	6,000	5,000	5,000	10,000	
	국 고	2,000	3,000	2,500	2,500	5,000	
	용 자	1,200	1,800	1,500	1,500	3,000	
	자부담	800	1,200	1,000	1,000	2,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서준한 사무관 이남윤 주무관 이유희		044-201-2231 044-201-2340 044-201-2241	
농협경제지주		인삼특작부		부 장 진종문 팀 장 정상희 과 장 강성철		02-2080-6370 02-2080-6373 02-2080-6384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41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자치단체자본)사업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자치단체자본)		예산 (백만원)	4,010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사업비 2,000 포함				
사업목적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보관시설 등 시설현대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재배 농가, 농업법인 등 ○ (자격 및 요건) 특용작물 재배와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 및 교체 등으로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영농법인							
지원한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885	8,262	8,262	9,922			
	국 고	1,620	2,016	2,016	2,420			
	지방비	1,215	1,206	1,206	1,452			
	용 자	2,430	3,024	3,024	3,630			
	자부담	1,620	2,016	2,016	2,420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사업비 제외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이남윤		044-201-2240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전년도 3월까지 시군담당자 제출 : 전년도 4월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42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기타민간융자금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1,510					
사업목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 관수 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국고보조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2018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파종기,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16년부터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 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지급)							
지원한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 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845	4,674	6,191	24,764			
	보 조	1,140	1,140	1,510	6,040			
	용 자	1,710	1,710	906	3,624			
	지방비	855	684	2,265	9,060			
자부담	1,140	1,140	1,510	6,0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손경문(인삼)		044-201-2239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시·도	사업대상자 : 1월까지 시군담당자 제출 : 2월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신청시기	특용작물(인삼)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43

공동선별비(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공동선별비(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8,088		
사업목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공동선별, 출하, 계산 물량에 대한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 대상 품목: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 공영도매시장 팻릿 출하 시 국고보조 20% 상향							
지원한도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 : 1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재원구성 (%)	국고	10~50	지방비	10~25	용자	-	자부담	50~8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2019년 이후			
	합 계	46,218	46,218	46,218	324,002			
	국 고	8,088	8,088	8,088	56,780			
	지방비	8,088	8,088	8,088	56,780			
	자부담	30,042	30,042	30,042	210,60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치단체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사무관 하성태 차 장 용상구 -		044-201-2223 061-931-1035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월 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공동선별비(자치단체)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44

농산물 신유통경로확산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 신유통경로확산 지원		예산 (백만원)	1,200				
사업목적	○ 농산물신유통확산지원							
사업 주요내용	○ 수요자중심 DB구축, 유기농온라인판매지원,농산물판로확대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국고100%							
지원한도	○ (농산물판로확대) 공영홈쇼핑, 특판·임시장터 등 보조100% ○ (온라인 직거래활성화) 농가정보, O2O플랫폼, 스마트스튜디오 등 보조 100% ○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보조 10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00	700	1,200	미정			
	국 고	700	700	1,2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이버거래소 사업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백태근 부 장 상병하		044-201-2285 061-931-1010 02-6300-180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B2C전자상거래(www.eatmart.co.kr), 농가정보서비스(farmdb.eat.co.kr) 농산물신유통경로확산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45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예산 (백만원)	2,450				
사업목적	○ 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장비,홍보 등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주체 필요) 국고 70%,자부담 30%							
지원한도	○ (대표장터) 1개소 최대 500백만원 (보조 70%) ○ (정례장터)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 (보조 70%)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500	3,500	3,500	미정			
	국 고	2,450	2,450	2,450	-			
	자부담	1,050	1,050	1,05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백태근		044-201-2285 061-931-1010		
신청시기	정기(매년 2월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46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 및 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2,265			
사업목적	○ 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직매장 설치시 인테리스,장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직거래장터, 직매장, 꾸러미 등 직거래 사업자 (단, 지자체, 공공기관은 위탁 운영하는 법인격 주체 필요) 국고 100%							
지원한도	○ (직거래교육) 교육·교류 지원 개소당 10백만원 내외 등 ○ (직거래홍보) 직거래 페스티벌 개소당 3백만원 내외 등 ○ (싱싱장터) 시스템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등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265	1,265	2,265	미정			
	국 고	1,265	1,265	2,265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백태근		044-201-2285 061-931-1010		
신청시기	정기(3월~)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 및 홍보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47

농산물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 직매장 운영지원				예산 (백만원)	5,250			
사업목적	○ 직매장설치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직매장 설치시 인테리스,장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협동조합기 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및 사회적기업 국고 30%, 자부담 70%								
지원한도	○ 개소당 300백만원 내외 (보조30%)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7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6,250	21,000	17,500	미정				
	국 고	7,875	6,300	5,250	-				
	자부담	18,375	14,700	12,25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백태근		041-201-2285 061-931-1010		
신청시기	정기(매년 2월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농산물직매장 운영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48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지원		예산 (백만원)	990				
사업목적	○ 도매시장평가, 업무검사, 컨설팅 등 운영 및 관리 지원을 통한 도매시장 운영 안정화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도매시장 평가, 시장 컨설팅, 업무검사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한도	○ 예산범위 내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80	650	990	1,000			
	국 고	780	650	990	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재경		044-201-222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449

농산물마케팅지원(산지조직평가)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산지조직평가)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자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을 개별유통에서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광역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산지조직 평가)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을 개별유통에서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광역화할 수 있도록 농가조직화·마케팅 지원을 위한 산지조직 평가 행정경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한도	○ 200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	200	200	1,000		
	국 고	200	200	200	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안양주 김주연		044-201-2224 061-931-1032	
신청시기	정기(당해연도 1.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450

농산물마케팅지원(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2,250		
사업목적	○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자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및 소비자 선호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농가조직화 및 공동선별·공동계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을 위해 조직화, 홍보·마케팅 항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8조」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79조(지원의 재제한) 제1항에 따른 부당사용 등 조직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지원한도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조직화 취급액 우수조직 - 조직화취급액 150억원 이상 : 국고보조 200백만원 이내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150억원 미만 : 국고보조 100백만원 이내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미만 : 국고보조 50백만원 이내 ○ 지자체 : 국고보조 10백만원 내외						
재원구성 (%)	국고	30 50	지방비	30% -	용자		자부담 40%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합 계	7,500	7,500	7,500	37,500		
	국 고	2,250	2,250	2,250	11,250		
	지방비	2,250	2,250	2,250	11,250		
자부담	3,000	3,000	3,000	1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유통정책과 지자체 담당부서		사무관 하성태 지자체 담당자		044-201-2223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월 말)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51

농산물소비촉진(인삼)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소비촉진(인삼)		예산 (백만원)	350			
사업목적	○ 인삼소비 촉진 :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인삼의 우수성 대내외 알려 인삼산업 발전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인삼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 그랜드 세일 프로모션 등 홍보사업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지원자격 및 요건	○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체, 공공기관 등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합 계	-	350	350	1,750		
	국 고	-	350	350	1,7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과		손경문		044-201-2238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인삼협회	
관련자료	한국인삼협회 홈페이지(www.korean-ginseng.org)						

452

농산물소비촉진지원(과수)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소비촉진지원(과수)		예산 (백만원)	2,064				
사업목적	○ 과수소비 촉진: 국내 과일산업을 대표하는 종합대전 행사를 통해 우리 과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소비확대를 유도하여 수입과일 증가에 대응 및 국내 과일산업 육성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국산과일의 우수성 홍보위해 과일산업대전 추진 등 홍보사업 추진 (마케팅 기획)소비활성화를 위해 소비촉진 캠페인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체 등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0	2,072	2,064	미정			
	국 고	80	2,072	2,064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허동웅	044-201-2252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관련자료	-							

453

농산물소비촉진지원(차류)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소비촉진지원(차류)		예산 (백만원)	30				
사업목적	○ 녹차소비촉진홍보: 한·중 FTA 등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 대안을 모색하고, 한국 차(茶) 문화의 역사성과 정통성 확산을 위해 홍보							
사업 주요내용	○ 녹차 등의 우수성 홍보위해 녹차 관련 전시회 등 홍보사업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차 관련단체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	30	30	30			
	국 고	30	30	30	3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이남윤	044-201-2240			
신청시기	11월			사업시행기관	차 생산자단체			
관련자료								

454

농산물소비촉진지원(화훼)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소비촉진지원(화훼)		예산 (백만원)	3,160				
사업목적	○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화훼 소비 생활화 문화조성 등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 화훼산업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국산 화훼의 우수성 및 소비촉진을 위한 공익광고 홍보, 화훼 관련 전시회, 어린이·청소년 꽃 생활화 체험교육, 화훼 소비 생활화 확산 등 교육·홍보사업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려는 기관·단체 등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60	1,660	3,160	6,480			
	국 고	160	1,660	3,160	6,48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이강권	044-201-226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aT, 농정원 등			
관련자료								

455

농산물소비촉진지원(잡곡)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소비촉진지원(잡곡)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잡곡 홍보 및 제품 개발을 통하여 쌀 식량작물의 소비기반을 확충하고 농가소득·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 ○ 수입 잡곡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국산 잡곡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관심 유도를 위한 소비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잡곡류의 안정적인 생산 확대 및 품질향상 도모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식품 개발·기획(100백만원) ○ 정책홍보·교육(100백만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가공·유통업체, 민간(개인), 민간기업 등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200	미정			
	국 고	-	-	200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차은지 이영은		044-201-1835 044-201-1836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예정)		
관련자료								

45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응자)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응자)		세목	응자금				
내역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응자)		예산 (백만원)	38,300				
사업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B2B결제자금 지원으로 농수산물의 B2B사이버 직거래 확산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농수산물 B2B 거래시 판매사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보장 구매사에 현금유동성 지원하여 B2B 거래시 매매보호기능 지원 ○ 생협, 직거래매장 등에 직거래구매지원자금을 지원하여 국내농산물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제73조(재정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담보제공액 범위 내 90~100% ○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사업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쌀"은 지원 가능)							
지원한도	○ 사이버거래결제자금(담보제공액 범위 내 90~100%)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업체당 지원한도 : 2,0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응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8,300	38,300	38,300	미정			
	국 고	38,300	38,300	38,300	-			
	응 자	38,300	38,300	38,3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 사이버거래소마케팅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김용광 부 장 기운도		044-201-2285 061-931-1140 02-6300-181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457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세목	비통화 금융기관용자				
내역사업명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e-나라도움 미사용)		예산 (백만원)	13,000				
사업목적	○ 생협, 직거래매장 등에 직거래구매지원자금을 지원하여 국내산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							
사업 주요내용	○ 지원형태 : (고정금리) 일반 3%, 생산자단체 2.5%,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농업 정책자금 변동금리 적용(6개월 단위 변동) ○ 사업의무액 : 지원액의 125% 이상 직거래 구매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제73조(재정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사업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쌀"은 지원 가능)							
지원한도	○ 13,000백만원 (업체당 지원한도 : 2,0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0	지방비	0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3,000	13,000	13,000	미정			
	국 고	13,000	13,000	13,000	-			
	용 자	13,000	13,000	13,000	-			
	자부담	20%	20%	2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김용광		044-201-2285 061-931-1140		
신청시기	정기(당해연도 1.31.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458

도매시장출하촉진(용자)

세부사업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용자)				세목	기타민간 기관용자금		
내역사업명	도매시장출하촉진(용자)				예산 (백만원)	45,000		
사업목적	도매시장 유통관계자에 선도금, 결제자금 등 지원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및 농가소득 안정 유도							
사업 주요내용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 선도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73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							
지원한도	○ 선도금 : 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지급 금액을 배정비율로 산출 ○ 결제자금 : 전년도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을 배정 비율로 산출							
재원구성(%)	국고	0	지방비	0	용자	100	자부담	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7,000	50,000	45,000	45,000			
	용 자	67,000	50,000	45,000	4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시장지원부		사무관 김재경 부 장 김명수		044-201-2221 061-931-1040		
신청시기	정기(3월),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관련자료	도매시장출하촉진(용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59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14,580				
사업목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물류기기,임차비)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팻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제 1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 대상품목: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지원한도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배정예산의 30% 해당액은 도매시장 출하시 지원분으로 우선 할당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조직별 배정한도: 상한 150백만원(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 공영도매시장 팻릿 출하 시 국고보조 20% 상향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6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6,450	36,450	36,450	41,450			
	국 고	14,580	14,580	14,580	16,580			
	자부담	21,870	21,870	21,870	24,87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사무관 이행은 차 장 용상구		044-201-2219 061-931-1035		
신청시기	정기(1월)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60

사이버거래소 운영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사이버거래소지원			예산 (백만원)	3,440			
사업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사이버거래소 직거래시스템(학교급식, B2B, B2C) 유지보수 및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 사이버거래소 포스몰(POS-Mall) 시스템 운영 및 거래 활성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70조의2(농수산물전자거래의 촉진 등)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2015.6.2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원한도	○ 사이버거래소 직거래시스템 예산한도내 100% ○ 사이버거래소 포스몰 시스템운영 및 거래활성화 예산한도내 100%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87	3,087	3,440	미정			
	국 고	3,087	3,087	3,44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유통정책과 사업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상병하		044-201-2285 02-6300-180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수산물사이버 거래소		
관련자료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www.eat.co.kr), 포스몰(www.pos-mall.co.kr)							

461

사이버거래소 운영 지원사업(응자)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비통화 금융기관응자					
내역사업명	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지원	예산 (백만원)	25,3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B2B결제자금 지원으로 농수산물의 B2B사이버 직거래 확산 유도 ○ 판·구매사 안정적인 대금결제 지원으로 채권부실 예방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농수산물 B2B 거래시 판매사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보장, 구매사에 현금유동성 지원하여 B2B 거래시 매매보호기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사 대금지급 : 사이버거래소 B2B 거래 익일 판매대금 선 지급 - 구매사 여신제공 : 거래일로부터 최대 50일 간 제공 (50일 중 30일 무이자, 31~50일까지 연 3%)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8조, 제7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식품 제조·가공·유통·수출업체로서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회원가입승인 득한 자							
지원한도	○ 담보제공액 범위 내 90~100%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응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5,300	25,300	25,300	미정			
	응 자	25,300	25,300	25,3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유통정책과 마케팅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기운도		044-201-2285 02-6300-181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수산물사이버 거래소		
관련자료	사이버거래소 정산소 운영지침							

462

산지유통시설 행정경비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산지유통시설 행정경비지원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보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산지유통시설지원, 공정거래 등사업 신청, 평가, 관리 등 행정 경비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한도	○ 5억원 내외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	500	500	2,500			
	국 고	500	500	500	2,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산지시설부		하성태 김나영		044-201-2224 061-931-1027		
신청시기	정기(연초)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463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 과채류 수급안정사업

세부사업명	산지유통종합자금			세목	통화금융기 관용자금			
내역사업명	과채류 수급안정사업			예산 (백만원)	40,000			
사업목적	○ 과채류수급안정(약정출하)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가격안정 추진 ○ 농가(공선출하회) ↔ 산지농협 ↔ 농협경제지주 ↔ 농림축산식품부를 연계한 과채류 수급 안정체계 구축							
사업 주요내용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약정출하 선급금, 제비용 및 인센티브 자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 APC 등 유통시설을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직접 운용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생산자 조직(공선출하회, 영농법인)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농협 등 - 품목별 협의회(자조금 단체)에 가입된 농협 등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법인 - 사업자금의 자부담 및 담보제공 능력, 자금관리 능력과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 기타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의 생산규모 대비 신청 물량의 적정성, 과거 사업 수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별 사업 물량 확정 및 지원 한도 설정 (약정물량 기준 양정출하 위약률이 10% 이상 : 위약금 부과 및 사업비 감액, 2년 연속 사업평가 결과가 하위 5% 이내 : 1년간 사업참여 제한, 계약실적 부진 및 중단 대상자 : 미계약 대금 및 적립잔액 등 회수)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1,300	87,100	50,000	50,000			
	용 자	41,000	69,700	40,000	40,000			
	자부담	10,300	17,400	10,000	10,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원예경영과 원예부		한태성 서울수		044-201-2258 02-2080-6361		
신청시기	정기(1차 : 익년도 1.15~2.14일, 2차 : 6.1~6.30일)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64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사업 - 과실류 수급안정사업

세부사업명	산지유통종합자금			세목	통화금융기 관용자금			
내역사업명	과실류 수급안정사업			예산 (백만원)	40,0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조직화, 규모화를 이루어 과실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농가 ↔ 산지농협 ↔ 농협경제지주 ↔ 농림축산식품부를 연계한 과실수급 안정체계 구축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상으로 약정출하 사업자금(품목, 제비용) 및 운용자금 일부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과장,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을 농협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생산자조직(작목반, 공선출하회, 영농법인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농협 * 선과장, 저온저장고는 필수시설(수탁형은 저장출하하지 않을 경우 저온저장고 없이도 가능)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법인 - 사업자금의 자부담 및 담보제공 능력, 자금관리 능력과 사업목적에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 기타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한도	○ 사업 대상자의 생산규모 대비 신청 물량의 적정성, 과거 사업 수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 대상자별 사업 물량 확정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2,250	62,500	50,000	50,000			
	용 자	49,800	50,000	40,000	40,000			
	자부담	12,450	12,500	10,000	10,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원예경영과 원예부		허동웅 신진균		044-201-2252 02-2080-6327		
신청시기	정기(4.30까지)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65

수급정보조사 등

세부사업명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수급정보조사 등				예산 (백만원)	2,342		
사업목적	○ 농산물 수급, 도소매 가격정보 및 유통실태조사 등 시장 동향 파악과 정보 제공을 통해 농산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수급정보, 도소매 가격, 유통실태, 수입정보 등 농산물 유통소비정보 조사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동법 제57조(기금의 용도), 동법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동법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동법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민간보조(국비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926	2,146	2,342	2,342			
	국 고	1,926	2,146	2,342	2,34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원예산업과 수급기획부			이건호 박제형		044-201-2235 061-931-1061	
신청시기	해당없음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해당없음							

466

유통협약명령사업

세부사업명	비축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유통협약명령	예산 (백만원)	1,050						
사업목적	○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수급불안에 대응하여 생산자단체 등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의 가격이 상당기간 낮게 형성되거나 생산비 이하로 낮은 가격이 예측될 경우 산지폐기, 품질규제 등을 통해 과잉공급 해소 및 가격안정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단체								
지원한도	○ 유통협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00	1,050	1,050	1,050				
	국 고	1,500	1,050	1,050	1,0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허동웅 이민지		044-201-2252 044-201-2253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관련자료	유통협약사업시행지침서								

인삼·특용작물계열화(용자)사업

세부사업명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계속)		세목	통화금융 기관용자금				
내역사업명	인삼계열화, 특용작물계열화		예산 (백만원)	19,418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특용작물 일관시스템(재배·수매·가공·유통)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특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보전 ○ 이력이 관리된 안전한 인삼·특용작물의 유통비중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약정 후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 용자 지원 ○ 수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특용작물)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한 재배 물량 수매자금 용자 지원 - (인삼 종자) 농가와 계약한 인삼종자 수매 자금 용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5년 거치 일시상환), 인삼종자수매 금리 0%(1년 거치 일시상환) - 특용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1년 거치 일시상환), 수매자금 금리 2.5~3%(1년~3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 : 10a당 3,300천원 - 특용작물 : 계약재배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 수매단가 :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2,976	23,716	24,272	69,870			
	용 자	18,381	18,973	19,418	55,896			
	자부담	4,595	4,743	4,854	13,97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과		사무관 손경문(인삼) 사무관 이남윤(특용)		044-201-2239 044-201-2241			
농협경제지주	인삼특작부		차장 최광진(인삼) 과장 강성철(특용)		02-2080-6374 02-2080-6384			
신청시기	수시사업대상자 : 3.15까지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인삼특용작물계열화(용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68

자조금지원(단체)사업

세부사업명	자조금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자조금지원(단체)	예산 (백만원)	7,610		
사업목적	○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 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 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 제2조(정의)제 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 임의자조금 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가 3회 이하인 단체 ○ 주산지협의체 설립추진 단체 ○ 통합자조금* 및 지역자조금** 단체 * 동일품목에 대해 전국단위 자조금(농협)과 지역 자조금이 통합 한 경우(참외 등)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조금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한도	○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예산 및 평가결과 등이 반영된 사업총괄부서의 검토·조정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재원구성 (%)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4,000	15,220	15,220	76,100
	국 고	7,000	7,610	7,610	38,050
	자부담	7,000	7,610	7,610	38,0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하성태	044-201-2224	
신청시기	정기(당년도 1월5일)		사업시행기관	자조금단체	
관련자료	자조금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69

자조금지원(행정경비)사업

세부사업명	자조금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자조금지원(행정경비)	예산 (백만원)	20						
사업목적	○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 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사업 주요내용	○ 자조금 평가점검 행정경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조금 평가점검 행정경비								
지원한도	○ 20백만원 내외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	20	20	100				
	국 고	20	20	20	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하성태		044-201-2224		
신청시기	정기(당년도 2월)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470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예산 (백만원)	12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사업 주요내용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사업 사후관리 등 행정경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사후관리 등 지원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2	12	12	12			
	국 고	12	12	12	1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이행은	044-201-2219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471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 전통시장 상인과 산지간 직거래확대							
사업 주요내용	○ 산지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직거래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청년 창업희망자 등 국고100%							
지원한도	○ 개소당 30백만원 이내(보조10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100	100	미정			
	국 고	-	100	1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백태근		044-201-2285 061-931-1010		
신청시기	정기(4월~)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전통시장지역농산물 소비촉진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72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채소가격안정지원			예산 (백만원)	16,819			
사업목적	○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의 주산지 중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가격 80%이내)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조절 등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하여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지원 * 품목별 약정금액 보전, 면적조절, 출하조절 등에 따른 비용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6조(계약생산), 제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의 보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인,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당해 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회에 참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지원한도	○ 신청 물량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 차등지원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666	33,333	56,063	83,333			
	국 고	2,000	10,000	16,819	25,000			
	지방비	2,000	10,000	16,819	25,000			
	농 협	1,333	6,666	11,212	16,666			
	자부담	1,333	6,666	11,212	16,66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원예산업과 품목연합부		서정호 김동균		044-201-2232 02-2080-6351		
신청시기	'17년 1월 ~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채소류생산안정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73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조사사업

세부사업명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조사		예산 (백만원)	343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정책고객(농업인, 유통기업, 연구자 등) 의사결정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유통·소비정보 기반(산업인프라)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유통경로, 판매장 현황, 원물조달 실태, 소매가격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실태 조사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1조(농업 자원 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평가)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민간보조(국비 100%)							
지원한도	○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조사비 343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343	343			
	국 고	-	-	343	34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친환경농업과		김승동		044-201-2439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							

474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용자)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용자)		예산 (백만원)	25,000				
사업목적	○ 친환경농축산물의 직거래자금 지원을 통한 인증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업인 소비자 편익 증대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인, 산지조직 등으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직구매 자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 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등 ○ 용자조건 : 연리 2.5~3%(농업인 2.5%, 조합 등 3%)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							
지원한도	○ 업체당 5,000백만원 이내(지원규모 : 25,0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1,440	29,440	25,000	25,000			
	용 자	41,440	29,440	25,000	2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농업과 회원경제지원부		김승동 최대웅		044-201-2439 02-2080-6334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							

475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세부사업명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세목	지자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예산 (백만원)	2,400		
사업목적	○ 화훼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화훼전용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통개선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주요 거점 산지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도매) 등 기능을 가진 화 훼 전용 유통센터 건립 지원 * 설계비, 토목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비 등(토지구입비는 제외)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도매) 등 기능을 가진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하는 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지원한도	○ 총사업비 100억원/1개소 - 1년차 국고 30%, 2년차 국고 70% 지원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40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6,000	14,000			
	국 고	-	-	2,400	5,600			
	지방비	-	-	2,400	5,600			
자부담	-	-	1,200	2,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이강권		044-201-2261		
신청시기	상반기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476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과수분야 전국공동브랜드육성 지원				예산 (백만원)	1,325		
사업목적	○ 다국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대표브랜드육성							
사업 주요내용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운영지원, 홍보지원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으로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지역공동브랜드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경영체							
지원한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00~3,0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10억원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450	3,450	3,145	11,250			
	국 고	1,415	1,415	1,325	4,425			
	지방비	750	750	660	2,430			
	자부담	1,285	1,285	1,160	4,39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044-201-2251			
				사무관 허동웅	044-201-2252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생산유통부		상 무 박연순	054-534-8003			
				과 장 김영문	054-534-800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자치단체)사업

세부사업명	발작물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10,000			
사업목적	○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소득증대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육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주관기관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수립·승인된 지자체(기준에 승인된 산지 유통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효력 인정) - 채소류 및 식량작물 주산지 시군(과수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 100ha 이상인 시군) - 특화수준 및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사업대상자 요건 - 발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상세요건은 사업시행지침 참고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군별 20억원 이내(1년차 30%, 2년차 70%)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용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500	16,500	20,000	25,000			
	국 고	2,250	8,250	10,000	12,500			
	지방비	1,800	6,600	8,000	10,000			
	자부담	450	1,650	2,000	2,500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유통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등(지체에 따름)		사무관 이행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044-201-2219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월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78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행정경비)사업

세부사업명	발작물산업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행정경비)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소득증대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육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공동경영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응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	200	200	200			
	국 고	200	200	200	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이행은	044-201-2219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79

ICT융복합확산(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ICT융복합확산(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예산 (백만원)	396				
사업목적	○ 수출 확대에 주력하는 시설원에 농가 대상 생산성 향상 및 품질제고를 위한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							
사업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기술(빅데이터, ICT 등) 융복합 시설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최소단지구모 명시적용 품목의 경우 최소 1ha 이상 또는 수출 공동작업 조직 참여계획 수립 - 기타작물의 경우 온실면적 0.5ha 이상 또는 수출 공동작업 조직 참여계획 수립 ※ 의무수출비율 : 파프리카 50%, 토마토 40%, 딸기 60%, 기타품목 30% 이상							
지원한도	○ 사업집행 시 실 단가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 * 참고 단가 : 철골유리(경질판)온실 3,000백만원/ha, 철골비닐온실 1,500백만원/ha, 파이프 비닐온실 750백만원/ha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00	40,000	1,980	118,800			
	국 고	4,000	8,000	396	23,760			
	지방비	6,000	12,000	584	35,640			
	용 자	6,000	12,000	584	35,640			
	자부담	4,000	8,000	396	23,7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사무관 박혜민		044-201-2256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서정호 부 장 한재욱		061-338-572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융합실		실 장 양종열 과 장 정명중		044-861-8763		
신청시기	2018년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 공모계획('18년 1월 시행 예정)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원예분야ICT융복합 스마트팜 시설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80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 시설보급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 시설보급			예산 (백만원)	4,200			
사업목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시설원에 분야 ICT 융복합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한도	○ 사업비 상한액: 2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00	21,000	21,000	63,000			
	국 고	4,000	4,200	4,200	12,600			
	지방비	6,000	6,300	6,300	18,900			
	용 자	6,000	6,300	6,300	18,920			
	자부담	4,000	4,200	4,200	12,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사무관 박혜민		044-201-225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융합실		실 장 양종열 과 장 정명중		044-861-876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원예분야ICT융복합 스마트팜 시설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81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지원				예산 (백만원)	750		
사업목적	○ 국제적 규모의 감귤박람회 개최를 통해 FTA 환경속에서 감귤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							
사업 주요내용	○ 2018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시설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국비 30%보조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40	용자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2,500	-			
	국 고	-	-	750	-			
	지방비	-	-	1,000	-			
자부담			75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원예경영과 감귤진흥과		허동웅 김태우		044-201-2252 064-710-3192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제주특별자치시		
관련자료	-							

VII. 산림분야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482

조림사업

세부사업명	조림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조림(지자체)			예산 (백만원)	90,359			
사업목적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 주요내용	○ 수확 및 수종갱신 벌채지 등에 나무심기(경제림 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 조림 등)를 통하여 산림자원을 조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 50-60% ○ 수혜대상 : 산주, 일반국민							
지원한도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적용							
재원구성 (%)	국고	50~60	지방비	50~30	응자	-	자부담	0~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37,493	144,479	159,479	159,479			
	국 고	75,582	79,859	90,359	90,359			
	지방비	55,466	57,438	61,938	61,938			
자부담	6,445	7,182	7,182	7,18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자치단체		산림자원과 시군구 산림부서		이상필 사무관		042-481-418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조림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83

정책숲가꾸기사업

세부사업명	숲가꾸기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정책숲가꾸기			예산 (백만원)	130,120			
사업목적	○ 산림의 연령에 따라 어린나무, 숙아베기 등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와 편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풀베기, 어린나무, 숙아베기등 산림의 연령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4조, 제6조 ○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소유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적용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76,954	402,125	321,944	321,944			
	국 고	229,364	239,851	191,824	191,824			
	지방비	147,590	162,274	130,120	130,1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자치단체		산림자원과 시군구 산림부서		정연국 사무관		042-481-4218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정책숲가꾸기 시행지침서 참조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세부사업명	숲가꾸기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공공산림가꾸기	예산 (백만원)	13,623					
사업목적	○ 도시·농산촌의 저소득계층 및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주요내용	○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안전장구구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4조, 제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저소득계층 및 실업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4,182	26,766	30,448	30,448			
	국 고	19,251	15,200	17,205	17,205			
	지방비	14,931	11,566	13,243	13,24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자치단체		산림자원과 시군구 산림부서		정연국 사무관		042-481-4218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공공산림가꾸기 시행지침서 참조							

485

양묘시설현대화사업

세부사업명	묘목생산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양묘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백만원)	600					
사업목적	○ 노동력에 의존하는 묘목생산 구조를 시설자동화를 통해 비용 절감 및 농촌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응							
사업 주요내용	○ 온실·야외 생육시설, 파종 및 포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생육환경조절시스템, 자주식 관수기 등을 통해 생육환경 개선 ○ 묘목품질유지 및 적기수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기존시설의 개·보수, 장비 구입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묘목대행생산자 소유 민유양묘장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1억 이하 또는 2억 이상 10억 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2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0	2,000	2,000	2,000			
	국 고	600	600	600	600			
	지방비	600	600	600	600			
	용 자	400	400	400	400			
자부담	400	400	400	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		강영관 사무관		042-481-4189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9월 선정)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양묘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486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예산 (백만원)	19,420					
사업목적	○ 임산물 생산기반의 규모화 현대화 추진							
사업 주요내용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위한 작업로, 울타리 등 지원을 통해 한중FTA대응 경쟁력 강화,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복합경영)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지를 활용하여 숲을 가꾸면서 산림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청정임산물의 수요증가에 대처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지원한도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공모)노지 1~5억원 이내, 시설재배 2~10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공모) 1억원이상~5억원 이내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소액) 8천만원 이내 ○ (밤대체작목조성) ha당 7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	국고	20~40	지방비	20~40	용자	0~20	자부담	20~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8,550	48,550	48,550	44,000			
	국 고	19,420	19,420	19,420	17,600			
	지방비	9,710	9,710	9,710	8,800			
	자부담	19,420	19,420	19,420	17,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안진선		042-481-4209		
신청시기	정기(공모 계획에 따라 전년도 8월까지) 또는 정기(전년도 4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예산 (백만원)	4,800					
사업목적	○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 억제로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							
사업 주요내용	○ 토양개량제 지원 및 토양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등 지원, 산성화된 토양은 생산성이 감소하고 병해충에 약함에 따라 토양개량을 위한 친환경 재배관리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지원한도	○ 품종별 차등지원 - 수실류 : ha당 총사업비 756천원(* 밤: ha당 504천원)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기타임산물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재원구성(%)	국고	70 또는 정액	지방비	20 또는 정액	용자	0	자부담	0~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856	6,856	6,856	6,856			
	국 고	4,800	4,800	4,800	4,800			
	지방비	1,371	1,371	1,371	1,371			
	자부담	685	685	685	68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은경		042-481-4196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88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예산 (백만원)	5,100			
사업목적	○ 국산목재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산주 소득을 늘려 국고 세입을 증대하고, 목재제품 제조시설 현대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한-중 FTA 대응하고자 함							
사업 주요내용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 시설의 교체 및 보강							
국고보조 근거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해야함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2억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20	응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2015~2016	2017	2018	2019	2020	
	계(A+B)	57,000	16,200	10,200	10,200	10,200	10,200	10,200
	국비(A)	28,500	8,100	5,100	5,100	5,100	5,100	5,100
	지방비+자부담(B)	28,500	8,100	5,100	5,100	5,100	5,100	5,100
	사업내용	285개소	81개소	51개소	51개소	51개소	51개소	51개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일숙		042-481-4291		
신청시기	전년도 6월 이전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목재산업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89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산업단지 조성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목재산업 주체인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체의 생산기반을 집약화·규모화하고, 산업단지 내 전문화된 목재가공 공장을 신축하여 경영 효율성 높임 - 구조용 집성재, 방부목재, CLT 등 생산설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 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으로, 자부담금 확보가능하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50억원(1년차 10억원, 2년차 20억원, 3년차 20억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20	응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합 계	1,000	3,000	5,000	5,000	5,000	5,000	4,000	2,000	30,000
	소 계	500	1,500	2,500	2,500	2,500	2,500	2,000	1,000	15,000
	국 고	500	1,500	2,500	2,500	2,500	2,500	2,000	1,000	15,000
	지방비	200	600	1,000	1,000	1,000	1,000	800	400	6,000
	자부담	300	900	1,500	1,500	1,500	1,500	1,200	600	9,000
	사업량	1	1	1	1	1	1			6개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일숙		042-481-4291			
신청시기	전년도 11~12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목재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90

수출기반구축사업

세부사업명	임산물수출촉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수출기반구축		예산 (백만원)	2,000				
사업목적	○ 임산물 수출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가소득 증대							
사업 주요내용	○ 임산물 수출 공동시설 및 장비 조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사업을 신청한 임산물 생산자 단체 중 평가를 거쳐 선정·지원							
지원한도	○ 1개소 당 1,0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000	4,000	4,000	4,000			
	국 고	2,000	2,000	2,000	2,000			
	지방비	800	800	800	800			
	자부담	1,200	1,200	1,200	1,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임업통상팀		손성애		042-481-408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7~8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수출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91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사업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예산 (백만원)	12,832					
사업목적	○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 임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으로 임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 상품화 지원, 임산물생산유통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지원한도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생산자 총사업비 80백만원, 단체 100백만원 이내)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4,960	64,660	64,660	64,660			
	국 고	10,992	12,832	12,832	12,832			
	지방비	10,992	12,832	12,832	12,832			
	용 자	10,992	12,832	12,832	12,832			
	자부담	21,844	25,662	25,662	25,66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안진선 박준호		042-481-4209 042-481-420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92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사업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예산 (백만원)	215			
사업목적	○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참여·추진							
사업 주요내용	○ 임산물의 소비심리위축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산물 직거래 장터, 우수임산물 전시회, 홍보사업 등 소비활성화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단체, 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15	215	215	215			
	국 고	215	215	215	21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박준호		042-481-420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민간단체		
관련자료	청정임산물소비촉진 및 홍보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93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예산 (백만원)	3,800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지원한도	○ 1대당 400만원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재원구성(%)	국고	30 (50)	지방비	40 (50)	용자	- (-)	자부담	3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A+B)	62,0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국비(A)	19,0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지방비+자부담(B)	43,000	8,600	8,600	8,600	8,600	8,600	8,600
	사업내용	15,500	3,100대	3,100대	3,100대	3,100대	3,100대	3,100대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선아		042-481-8879		
신청시기	당해연도 1월~2월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세부사업명	산림경영계획작성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예산 (백만원)	370		
사업목적	○ 숲을 통한 환경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조림, 임목생산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유림경영 계획 작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산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작성대가145천원의 16% 국고지원)							
지원한도	○ 인가 면적에 따라 ha당 정액지원(국고 7,600원/ha)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46	1,146	740	740			
	국 고	573	573	370	370			
	지방비	573	573	370	37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중기		042-481-419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28.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사유림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95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상품화 지원	예산 (백만원)	2,842					
사업목적	○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 비용							
사업 주요내용	○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등 임산물 명품화 및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지원한도	○ 총사업비 35백만원/건(국비 7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4,210	14,210	14,210	14,210			
	국 고	2,842	2,842	2,842	2,842			
	지 방 비	2,842	2,842	2,842	2,842			
	용 자	2,842	2,842	2,842	2,842			
	자 부 담	5,684	5,684	5,684	5,68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박준호		042-481-420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96

산림조합 특화사업

세부사업명	산림경영지도사업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산림조합특화사업		예산 (백만원)	1,0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화사업 육성과 지원 ○ 지역여건 및 산림조합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을 통해 산주·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품목의 생산·판매·이용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산주·임업인의 소득 향상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업 ○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조합법」제46조에 의한 산림조합의 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및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및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 「산림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지원한도	○ 1개소당 5억원 한도 이내 ※ '18년도 사업량 및 개소당 지원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00	2,000	2,000	계속			
	국 고	1,500	1,000	1,000	계속			
	지방비	600	400	400	계속			
	자부담	900	600	60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지자체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철호		042-481-4155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조합특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497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산림복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4,154					
사업목적	○ 지역주민을 보호·관리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 마련							
사업 주요내용	○ 백두대간 내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증대 기반 조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지원한도	○ [공동사업] 참여 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 [개인사업(1가구 참여 사업)] 7.5백만원 이하로 지원 ○ [공모사업] 100백만원 이상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934	5,934	5,934	29,670			
	국 고	4,154	4,154	4,154	20,770			
	지방비	1,780	1,187	1,187	5,935			
	자부담	-	593	593	2,9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과장 최은형 사무관 박기완		042-481-8811 042-481-8814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